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5. 9. 11.

국 토 교 통 부

【제·개정 이력】

| 일 자 (승인) | 주요 개정 내용 | 재개정사유 | 담당자 | 협의기관 |
|-------------|---|---|---------|-----------------|
| '12.7.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대형사고 위기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일부 변경 ○ 위기관리관련기관 추가(철도운행관제팀, 철도시스템안전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 국가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승인에 따라 실무매뉴얼보완 | | |
| '13.2.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체계도 및 위기관리기구표를 표준종합체계도로 수정 ○ 표준홍보문안 예시 추가 ○ 경보단계 사전협의기관을 소방방재청으로 변경 및 경보단계 발령 단서조항 신설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을 서울시 추가 ○ 위기경보 판단기준(징후)조정 ○ 현행기관명칭 사용 |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따라 실무매뉴얼 보완 | | |
| '13.4.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명 명칭수정(부서, 비상연락체계등)현행화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표준매뉴얼 정비(안)승인에 따라 실무매뉴얼 보완 | | |
| '13.6.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준비사항 ○ 장관님 하실일 구체적 작성 ○ 기관별 비상연락망 번호기재 | 지하철, 고속철도분야매뉴얼 정비결과 제출요청에 따라 실무매뉴얼 보완 | | |
| '13.8.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사항 추가반영 | 철도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안 승인에 따라 실무매뉴얼 보완 | | |
| '14.7.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 변경 · 관심·주의·경계단계의 모호한 위기관단 기준을 탈선,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등 명확히 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에 현장대응지휘반 신설 등 · 표준매뉴얼 작성기준(안행부) 등에 따라 편집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개정 협의·조정 확정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개정 | 철도운행관제팀 | 안전행정부 등 |
| '15.9.11 | '15.9.2.국가위기관리지침의 개정(5.7) 내용, 보고·전파서식, 관심단계 대응 등과 실무·행동매뉴얼 작성기관 추가 등 |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보완, 안전한국 훈련 결과 반영 등 | 철도운행안전과 | 국민안전처 및 유관부처·기관 |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시 국토교통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제반 조치사항 및 유관 부처·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최대한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적절히 경보수준을 조절한다.

- 목 차 -

제1장 개 요

| | |
|-----------------------------------|----|
| 제1절 목 적 | 3 |
| 제2절 법적 근거 | 3 |
| 제3절 적용 범위 | 3 |
| 제4절 용어 정의 | 4 |
| 제5절 위기 형태 | 7 |
| 제6절 위기경보 | 9 |
| 1.6.1 위기경보 수준 | 9 |
| 1.6.2 위기경보 발령 절차 | 9 |
| 1.6.3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 11 |
|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12 |
| 1.7.1 대응개념 | 12 |
| 1.7.2 대응지침 | 12 |
| 1.7.3 판단/고려 요소 | 14 |
|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 15 |
| 1.8.1 종합체계도 | 15 |
| 1.8.2 위기관리기구의 임무 및 역할 | 16 |
| 1.8.3 국토교통부 대응체계 | 17 |
| 1.8.4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보고체계 및 방법 | 21 |
| 1.8.5 도시철도기관 사고수습 지휘체계도(예시) | 22 |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 |
|----------------------------|----|
| 제1절 관심경보(사망자가 없는 경우) | 27 |
| 2.1.1 상황 | 27 |
| 2.1.2 조치사항 및 절차 | 28 |
|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39 |
| 2.1.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40 |

| | |
|--------------------------------|-----|
| 제2절 관심경보(사망자가 3명 미만인 경우) | 42 |
| 2.2.1 상황 | 42 |
| 2.2.2 조치사항 및 절차 | 43 |
|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58 |
| 2.2.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60 |
| 제3절 주의경보 | 62 |
| 2.3.1 상황 | 62 |
| 2.3.2 조치사항 및 절차 | 63 |
|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78 |
| 2.3.4 유관기관 등의 임무 및 역할 | 80 |
| 제4절 경계경보 | 82 |
| 2.4.1 상황 | 82 |
| 2.4.2 조치사항 및 절차 | 83 |
|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99 |
| 2.4.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100 |
| 제5절 심각경보 | 103 |
| 2.5.1 상황 | 103 |
| 2.5.2 조치사항 및 절차 | 104 |
| 2.5.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21 |
| 2.5.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122 |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 |
|--------------------------------|-----|
| 제1절 발생 상황(탈선) | 129 |
| 3.1.1 상황 | 129 |
| 3.1.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 130 |
| 3.1.3 조치목록 | 132 |
| 3.1.4 조치내용 | 134 |
| 3.1.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48 |
| 3.1.6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150 |

| | |
|--|-----|
| 제2절 발생 상황(충돌) | 154 |
| 3.2.1 상황 | 154 |
| 3.2.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 155 |
| 3.2.3 조치목록 | 157 |
| 3.2.4 조치내용 | 159 |
| 제3절 발생 상황(화재) | 164 |
| 3.3.1 상황 | 164 |
| 3.3.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 165 |
| 3.3.3 조치목록 | 167 |
| 3.3.3 조치내용 | 169 |
| 3.3.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84 |
| 3.3.6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185 |
| 제4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 |
| 제1절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사전준비 10가지 | 193 |
| 제2절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194 |
| 제3절 위기평가 위원회 | 194 |
| 제4절 본부장 역할 | 197 |
| 제5절 본부장의 산하기관장 전화지시(예문) | 198 |
| 제6절 유관기관 당부사항 | 199 |
| 제5장 재난대응수칙(지하철 대형사고 재난 대응절차) | |
| 제1절 재난관리체계도 및 절차도 | 203 |
| 제2절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응 프로세스 | 204 |
| 제3절 국토교통부 부서별 협업기능 | 205 |
| 제4절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 | 207 |
| 제6장 참고자료 | |
| 제1절 지하철 대형사고 초동조치 매뉴얼(도시철도기관, 국토부) ... | 211 |
| 제2절 서식 등 | 221 |
| 제3절 지하철 대형사고 사례 | 236 |

| | |
|----------------------------------|-----|
| 제4절 국가 재난관리체계 | 237 |
| 제5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249 |
| 제6절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체계 | 259 |
| 제7절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 263 |
| 제8절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 시스템 | 265 |
| 제9절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267 |
| 제10절 국민행동요령(지하철사고 관련) | 268 |
| 제11절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 277 |
| 제12절 도시철도 운영 현황 | 279 |
| 제13절 유관기관 연락처 | 283 |
| 제14절 철도운영자 연락처 | 285 |
| 제15절 실무매뉴얼 작성 기관 | 286 |
| 제16절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 | 287 |

제1장 개요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세부 대응절차, 조치사항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2절 법적 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민방위기본법
3. 소방기본법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시설 공사업법
6. 위험물안전관리법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철도안전법
9. 철도사업법
10. 도시철도법
11. 도시철도건설규칙
12.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4.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15.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5. 9월)

제3절 적용범위

가. 대 상

이 매뉴얼은 지하철 대형사고의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적용

나. 상 황

지하철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상황인 경우에 적용

- 1) 탈선·충돌·화재·폭발·침수 등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4시간 이상 열차운행이 중단된 경우
- 2) 기타 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것

※ 지상구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매뉴얼에서 정한 피해규모이상인 경우 매뉴얼을 준용하여 대응

제4절 용어 정의

| 구 분 | 내 용 |
|---------|---|
| 국가위기 |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
| 국가위기 관리 |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활동 |
| 주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
| 유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실무기관 |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

| 구 분 | 내 용 |
|----------------|--|
| 표준매뉴얼 |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부처·기관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의 기준 |
|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위기 발생 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절차를 수록한 문서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 발생 시 위기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
| 위기관리 활 동 | <p>○ 위기의 사전예방·대비 및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해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 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p> <p>①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p> <p>② 대비 :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p> <p>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p> <p>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p> |
| 위기경보 개념과 종류 | <p>○ 위기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4단계로 구분</p> <p>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p>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준비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 유지 |
|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 대형사고</p> | <p>전동열차 운행 중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 상황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것 <p>※ 지상구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매뉴얼에서 정한 피해규모이상인 경우 매뉴얼을 준용하여 대응</p> |

제5절 위기 형태

1. 위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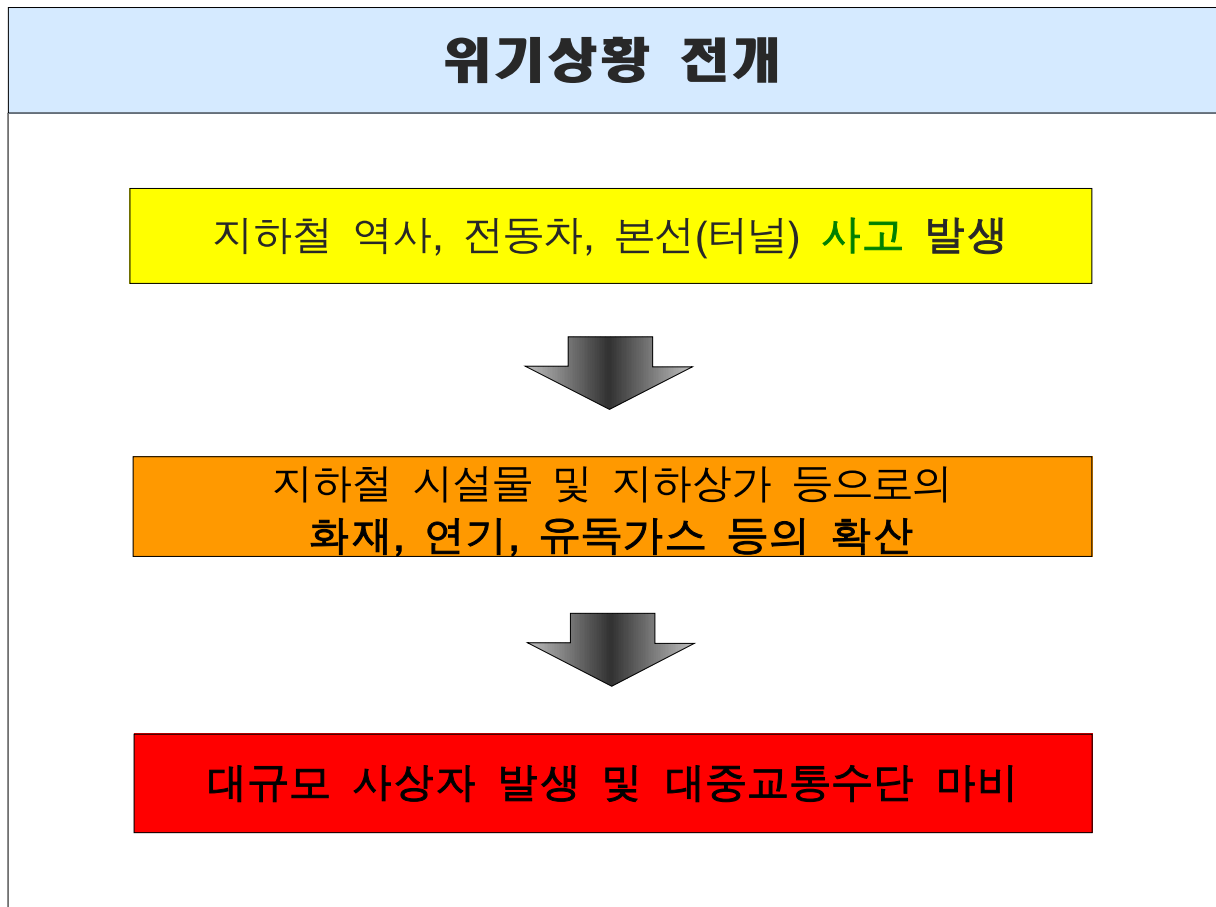
가. 요인별 유형

- (1) 지하철, 전동열차 자체 결함
- (2) 지하철 운행구간의 불안전 요인

나. 위기유형

- (1) 선로, 역 구내에서 전동열차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침수된 경우

2. 전개 양상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 구 분 | 판 단 기 준 | 비 고 |
|-----------------|--|--------------------------|
| 관심 (Blue) |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 | 사고수습 관리 |
| 주의 (Yellow) |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되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수습활동 강화 협조체계 가동 |
| 경 계 (Orange) |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되어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수습협조·지원 동원인원·장비 확보 지원 |
| 심각 (Red) | 전동열차 운행 중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상황인 경우 ○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것 | 총력 대응 |

※ 지상구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매뉴얼에서 정한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 매뉴얼을 준용하여 대응

※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철도운영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피해규모 등 상황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수준에 맞게 대응한다.

1.6.2 위기경보 발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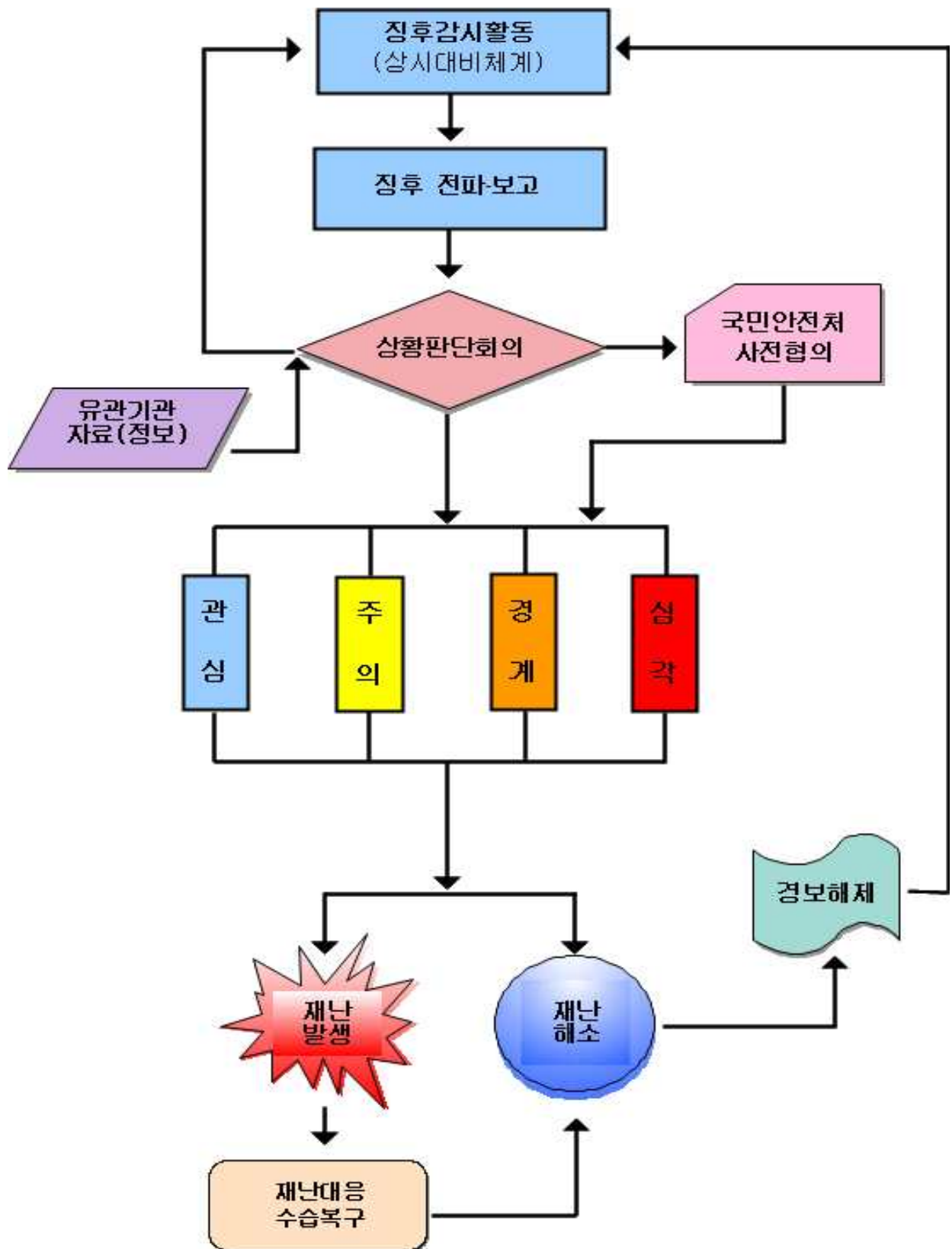
- 1)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및 지하철 운행과 관련하여 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철도 대형사고 위기평가위원회」(이하 ‘위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위기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2) 위기평가지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경보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하며, 위급한 상황일 경우 선조치하고 최단시간 내 협의에 착수한다.
 - 관심단계로 인명피해(사망)가 없는 경우 철도안전정책관이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상황을 관리한다.
 - 화재·충돌·침수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 없이 운행열차 및 철도시설의 피해가 경미하여 열차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심 경보를 발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는 위기수준 평가 결과와 상황분석·평가, 대응방향·목표, 대응조치·수단, 유관기관의 역할 및 협조사항, 대국민 홍보, 시행시기 등을 포함하여 대응책 강구
- 5) 위기평가위원회는 국정운영기조,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책을 최종 확정
- 6) 국토교통부는 경보발령 사항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에 전파

* 경보발령에 따른 각종 상황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전파

1.6.3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제7절 위기대응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7.1 대응 개념

1.7.1.1 목표

신속한 사태수습/조치, 피해확산 방지

1.7.1.2 대응방향

- 1) 유관기관간 사고 발생 및 피해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 2)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 투입으로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 최소화
- 3)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과 협조체계 가동
- 4) 2차 사고에 대비한 대응활동 전개

1.7.2 대응 지침

1.7.2.1 현장 위주의 신속한 초동조치

- 1)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장치 동작,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 정차·통과 등 안전조치
- 2) 사고상황 및 초기진압 협조 안내방송, 승객 등 대피·긴급 구조 활동, 사상자 발생시 즉시 후송 조치
- 3) 사고형태, 인명 피해규모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전파 및 대응
- 4) 초기대응반 사고현장 파견, 초동조치 및 상황판단 정보 제공,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지원

1.7.2.2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규모 및 피해여부 파악

- 1) 철도사고조사반 및 초기대응반 현장 투입으로 사고원인, 피해 규모 등 예측

1.7.2.3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유지 및 기관별 위기대응 활동 개시

- 1) 초기대응, 사고복구 및 수습에 관한 유기적 협력체제로 체계적 사고수습 지휘·조정·통제
- 2) 가용 장비·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 사고피해 최소화
- 3) 가스, 전기 등 복합적 재난대응체제 가동

1.7.2.4 화재발생의 경우 조기진압 후 신속한 복구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 1)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 원활한 교통소통 조치
- 2) 화재진화 및 복구작업 종료 후 열차운행 재개

1.7.2.5 적극적인 언론 홍보·소통 활동으로 대국민 불안감 해소

- 1) 언론보도 자료 배포, 언론브리핑 시기 및 방법 판단

가) 최초 단계 : 위기 발생 직후(사고개요 위주)

나) 위기수습 단계 : 최초 브리핑 실시 후(취재 지원)

다) 최종 단계 : 위기 종료 후(조사결과 및 향후대책)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고, 참고 '언론 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및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체계' 등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

1.7.3 판단/고려 요소

1.7.3.1 현장 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 방안

- 1) 위기유형의 특성(화재의 경우 확산 속도), 지역·지형적 여건, 우천·강설·태풍 등 기상조건 등
- 2)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 3) 가스 폭발 및 전기 등 복합재난 및 전기로 인한 감전 여부
- 4) 화재확산(2차 피해) 가능성 예측

1.7.3.2 유관기관 동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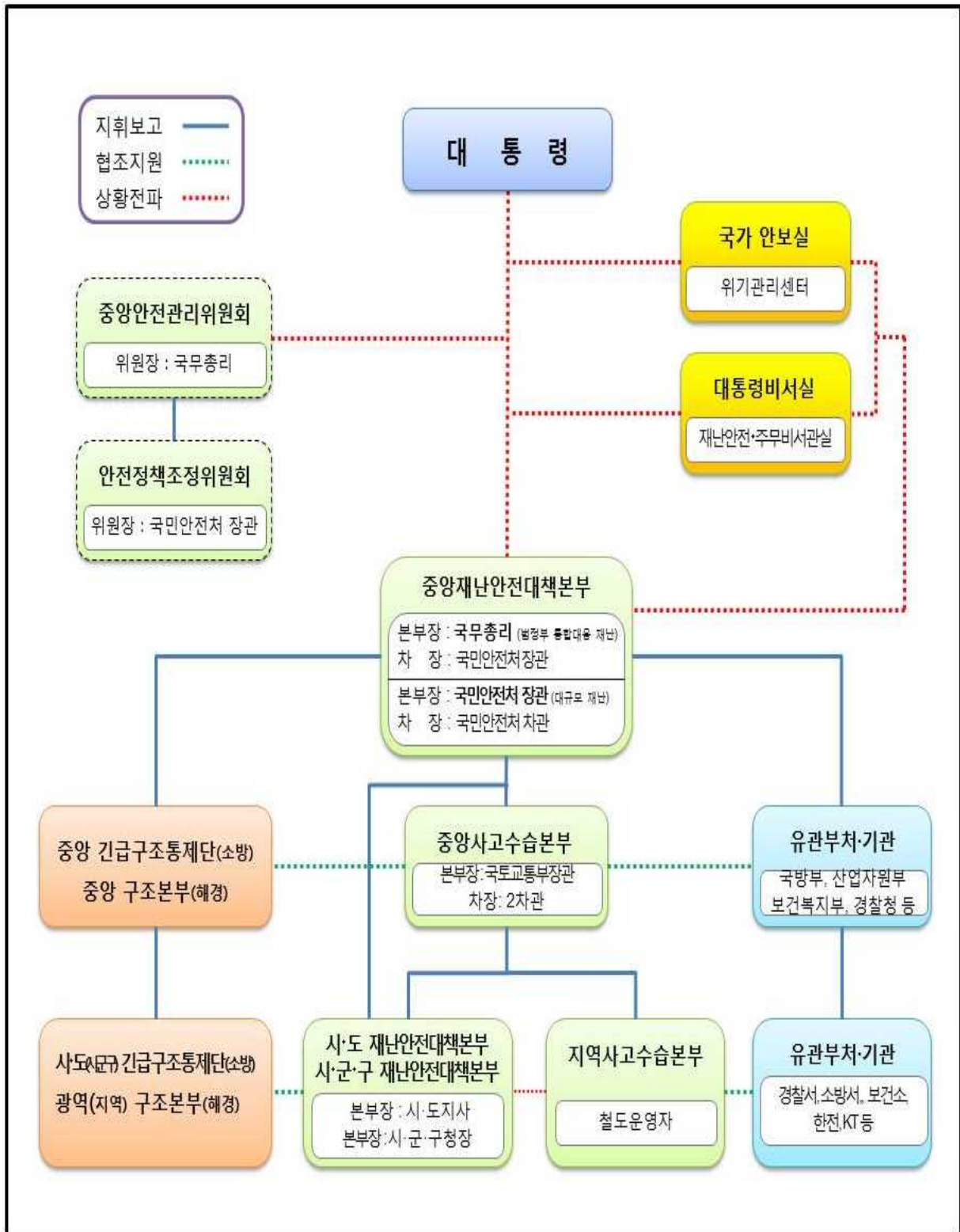
- 1) 사고발생 장소별 동원거리·수단·도착시간 검토

1.7.3.3 피해 가능성 판단 및 피해 최소화 방안

- 1) 피해 인원·재산 확대 가능성
- 2) 주민의 대피 여부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8.1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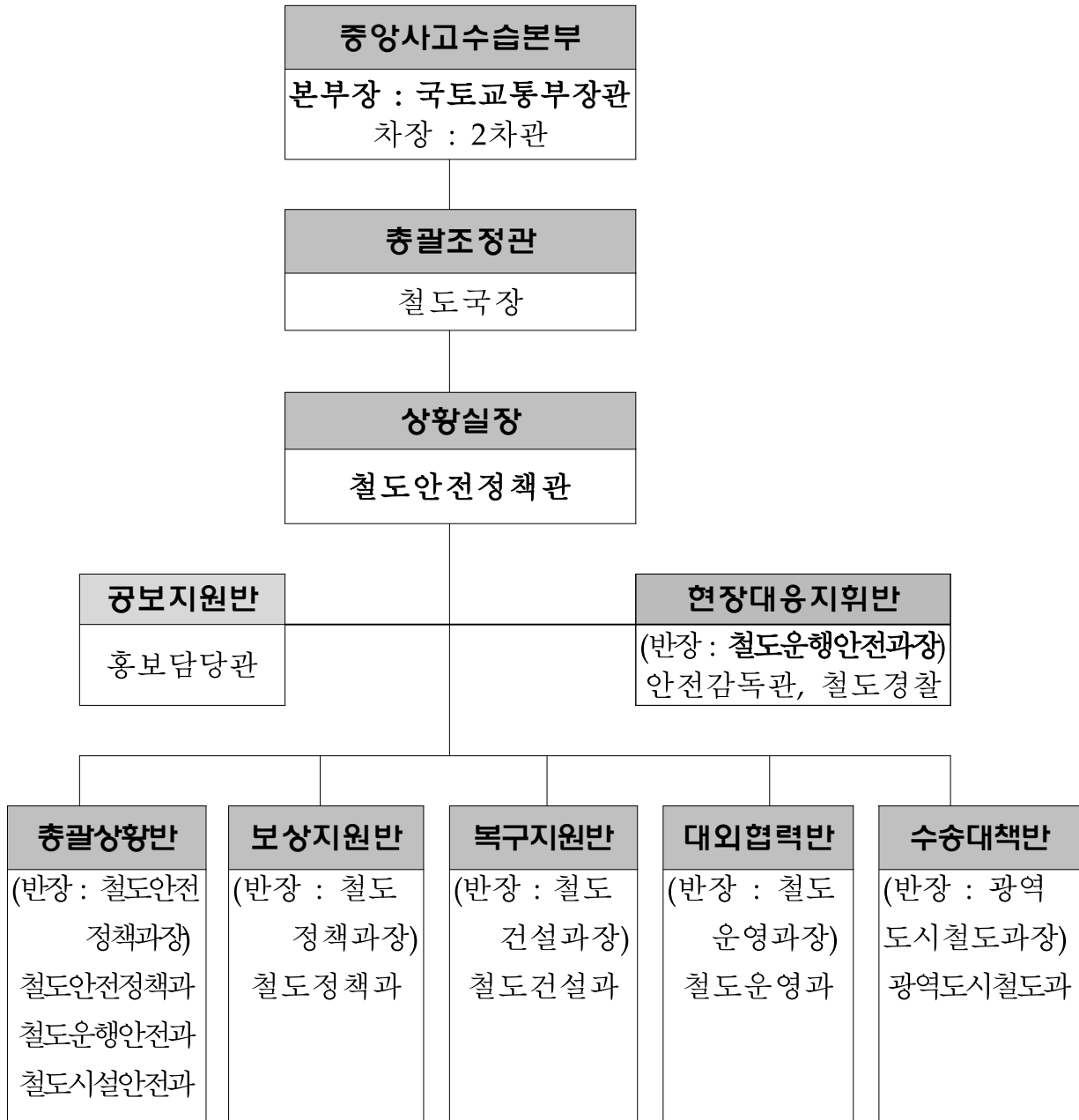


1.8.2 위기관리기구의 임무 · 역할

| 구 분 | 임무 및 역할 |
|-------------------------|--|
| 국가안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요 정책 조정·심의 ○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의 총괄 ○ 관련상황 대처 및 비상대책 시행 주관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유관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중앙수습지원단 운용 |
| 지역사고수습본부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대책 시행 ○ 긴급구조·구조 지원, 유관기관간 협조 ○ 열차운행 조정 관리 및 비상수송대책 시행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도, 사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소방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소방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압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지휘·통제 |

1.8.3 국토교통부 대응체계

1.8.3.1 중앙사고수습본부 지휘체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044-201-4679, FAX 044-201-5533)에 설치하며 현장 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할 수 있다.

※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파견

1.8.3.2 반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별 | | 임무 및 역할 |
|------------------|------------------------|--|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 총괄 ○ 관련상황 대처 및 비상대책 시행주관 |
|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보좌 및 유고시 본부장 대행 |
| 총괄조정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장 보좌 및 수습본부 상황관리 총괄 ○ 언론브리핑 및 주요 회의 참석 및 대외협력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 |
| 상황실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반의 사고수습 및 복구활동 총괄 및 조정 |
| 공보지원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실시 지원 ○ 대국민 홍보,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 지원 ○ 재난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 총괄 상황 반 | 상황보고팀 (철도운행 안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본 운영(명판, 매뉴얼, 근무조 편성 등) ○ 현장상황(현장위치, 사고수습·재난대책본부 등 연 락처, 피해규모, 수습·대응상황 등) 확인 * 중수본 설치전 사고수습·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협조요청 ○ 상황보고서 및 사고수습일지 등 작성 ○ 유관기관 상황 보고·전파 ○ 위기평가회의 개최 및 위기경보 발령 ○ 재난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작성 ○ 현장대응지휘반과의 연락 및 지원 |
| | 상황관리팀 (철도안전 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판단 및 분석 ○ 유관기관 파견근무 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 재난수습상황 보도·브리핑 자료 작성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보고주관 및 보고서 작성 |
| | 상황지원팀 (철도시설 안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요청 및 시설복구 상황 모니터링 ○ 중대본 근무자 파견 관리 ○ 자원봉사자 지원 현황 관리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 사상자 구호 및 구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 보상지원반 (철도정책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피해자 보상협의 지원 |
| 복구지원반 (철도건설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 부서별 | 임무 및 역할 |
|--------------------|--|
| 대외협력반 (철도운영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 수송대책반 (광역도시철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 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부재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임무 및 역할 수행

< 현장대응지휘반의 조직 구성 및 임무·역할 >

◆ 조직 구성

- 반장 및 반원 : 철도운영안전과장(반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사법경찰

◆ 임무·역할

(철도운영안전과장)

- 현장대응지휘반 업무 총괄 및 현장 사고복구지휘조직(지역사고수습본부) 활동 협조·지원 및 필요시 지휘
- VIP, 국무총리, 장·차관 현장방문시 수행, 사고수습상황 현황 설명 및 지시·격려사항 등 조치·시달
- 사고수습 상황, 비상수송대책,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협조(지원)

* 상황 정보의 정확한 제공 등을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지휘조직의 언론대응은 현장대응지휘반장과 협의토록 하고 언론브리핑은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

(철도안전감독관)

- 승객 안전대피 및 사상자 구조 지원
- 사고피해 확대 방지 등 초동 대응·조치상황 확인·지도 및 점검
- 사상자 인적사항 파악 및 유가족 요구·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지자체 협조 받아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확보 및 편의 제공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사고복구 인력·장비 투입 및 작업 독려
- 복구 및 열차운행 재개 관련 안전 위해요인 점검
- 사고수습 상황 보고(중앙사고수습본부에 2시간 또는 상황변동시 마다)
- 사고수습 상황, 비상수송대책,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 지원
- 위기평가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경보 발령 여부 등에 필요한 사고상황 확산 정도의 정보 보고
-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및 유관·의료기관, 동원업체간 연락 및 사고수습 정보 제공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방안 검토
- 기타 사고수습·복구 및 열차 안전운행 관련 필요사항

(철도사법경찰)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장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반, 지역사

고수습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사상자 구조 지원 활동 및 승객 안전대피 유도
- 사상자 후송 병원 현황 파악 및 유가족 수용시설 등 경비 지원
- 화재진압 및 복구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 사고관계인 신병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1.8.4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보고체계 및 방법

1.8.4.1 보고(협조)체계



1.8.4.2 근무방법

- 반별 2인 1조(사무관 1, 주무관 1)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 * 위기평가회의 등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반별 반장도 교대 근무
- 반별 편성된 근무조는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 또는 중수본 설치장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해체 될 때까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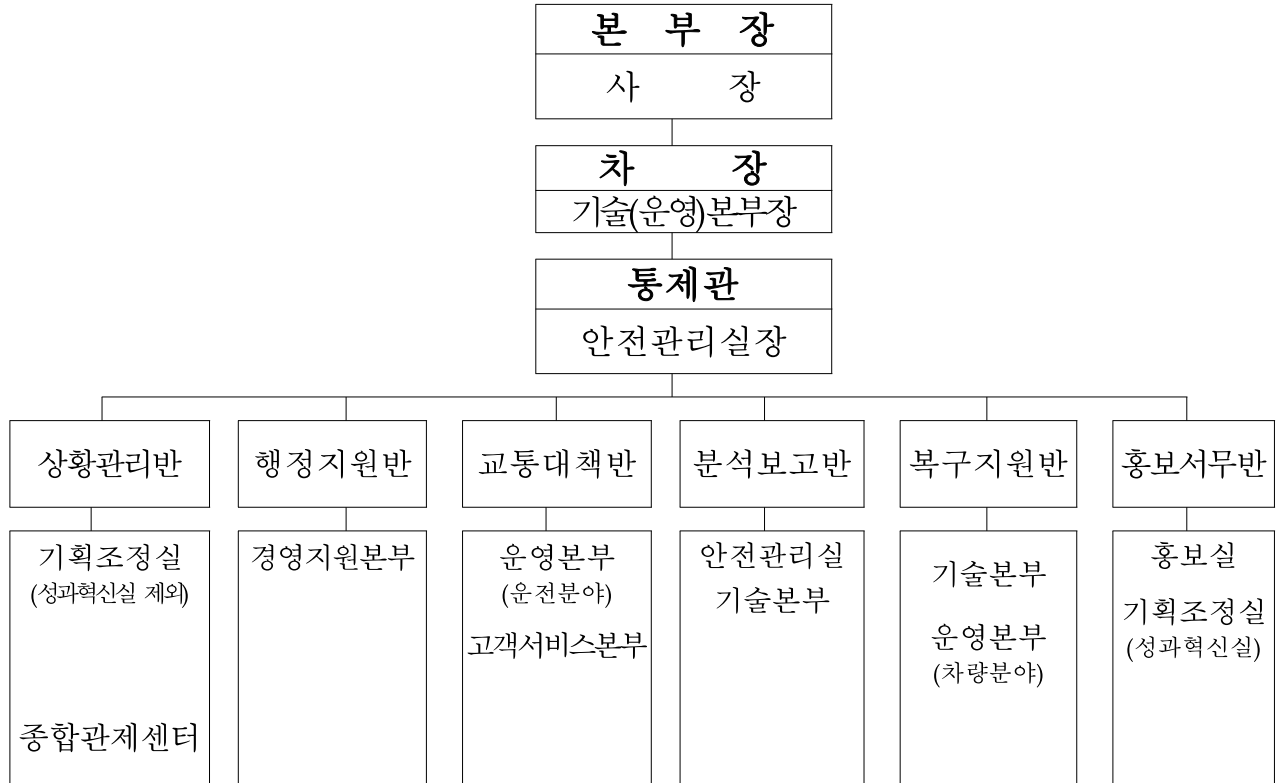
1.8.4.3 보고방법

- 각 반은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상황, 주요 조치사항과 특기사항을 매일 08:00시와 16:00에 총괄반으로 제출
- 총괄상황반은 매일 09:00 및 17:00에 보고체계에 따라 최종 보고자에게 보고(필요시 간부 자택 FAX 이용)토록 하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하는 상황보고 자료를 별도 첨부
- 총괄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보고지시가 있는 경우, 총괄상황반에서 보고하되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 보고

1.8.5 도시철도기관 사고수습 지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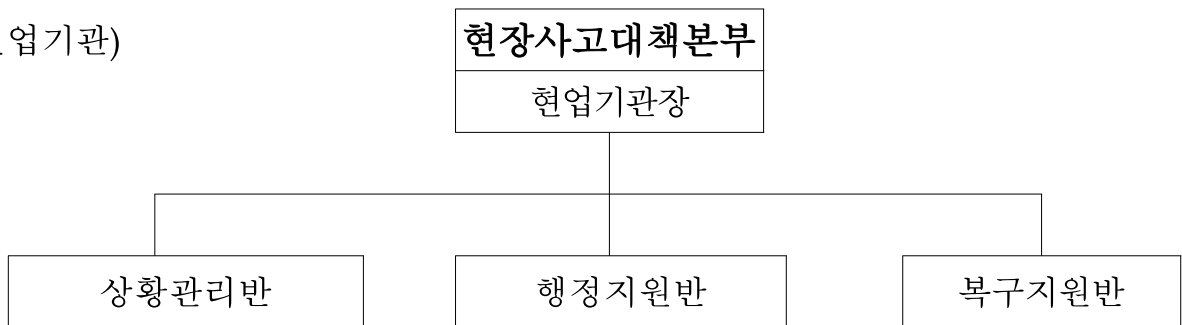
1.8.5.1 서울도시철도공사 지역사고수습본부(예시)

(본사)



※ 반별 반장 : 관련부서 처·실장, 반원: 관련부서 1명

(현업기관)



- 상황관리반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 상황처리 및 체제유지
- 복구지원반 : 사고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긴급복구활동
- 행정지원반 : 사고현장에 비상복구자재, 장비확보, 재해복구 물품지원

1.8.5.2 업무분장

| 구분 | 분장사무 | 구분 | 분장사무 |
|-----------|--|-----------|---|
| 본부장 | 사고수습본부 업무 총괄 주관 | 분석 보고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 접수·보고·전파 · 재난관련 회의운영 · 재난사고 조사 |
| 차장 | 사고수습본부장 보좌 및 상황 업무 총괄 | | |
| 통제관 | 사고수습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 복구관리 등 실무총괄 | 복구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시설 재난원인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 보고 · 복구용장비, 자재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 · 응급복구 요원의 확보 · 차량 및 소관시설 복구 계획 관한 사항 · 재난복구자재, 장비, 인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상황 관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책 일일상황일지, 정리보고 ·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재난 정보 수집분석 | | |
| 행정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요원 근무지정 협조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협조 ·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 응급방역 및 의료활동 · 복구자재 및 장비수급, 지원 수송에 관한 사항 · 응급복구비의 배정 · 복구 소요예산 영달 ·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 기타 지원사항 | 공보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대변인 지정·운영 · 보도자료작성 및 홍보 · 브리핑자료 작성 및 브리핑 · 담화문 작성 · 재난상황 취재안내 지원 및 통제 |
| | 교통 대책반 | | |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경보(사망자가 없는 경우)

2.1.1 상 황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분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700여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 * 인명피해로 사망자가 없는 경우
 - 물적피해 : 객차 2량 탈선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 기상상태 :
- 기술적 내용 : 0000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목록(철도운행안전과에서 수습·대응)

| 조치사항 | 세부내용 | 비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2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국장 ○ 철도운행안전과 *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 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사고대응정보 제공 |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 철도경찰(경찰) ○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다-1)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2) 언론보도문 작성·배포(필요시)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홍보담당관 |
| (라) 대응조치 | (라-1)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필요성 검토 (라-5) 언론보도문 작성·배포(필요시) | ○ 철도안전정책관(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홍보담당관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2) 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3) 언론보도·브리핑 실시(필요시)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언론브리핑은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실시 |

2.1.2.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행 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의 지사 또는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00.00(요일).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부상자 발생(0명 추정), 0호선 00행 열차 운행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부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된 상황을 보고(예: 부상 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 운행 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 운행 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부상자 발생(0명 추정), 0호선 00행 열차 운행중단
- 사망자가 없는 관심단계 수준의 사고로서 매뉴얼에 따라 철도공사가 자체수습토록 하고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부상자 구호 지원(부상자 발생시) 및 현장통제 중이며,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부상자 발생(0명 추정), 0호선 00행 열차 운행중단
- 사망자가 없는 관심단계 수준의 사고로서 매뉴얼에 따라 00도시철도공사가 자체수습토록 하고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서 부상자 병원 호송 중이며,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심각단계(사망 10명 이상)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수습하고 국토부는 수습·복구상황 지도·관리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최초)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부상자 발생(0명 추정), 0호선 00행 열차 운행중단

-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부상자 구호 지원(부상자 발생시) 및 현장통제 중이며, 철도안전감독관 0명을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부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현장 역)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 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승객·주민(피해 우려시) 안전대피 유도
- * 현장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필요시 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긴급복구 차량 진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사고관계인 신병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나-3)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행안전과장의 지시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현장 출동,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필요시 철도운행안전과장도 출동하며, 철도운행안전과장의 현장출동 지시 받은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 배치 역의 경우로,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의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과 중수본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철도운영자, 지자체를 통하여 연락처 등 입수
- 부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필요시)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부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나-4) 사고대응정보 제공(상황종료 시까지 파악된 대로)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 부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가족 수용시설 등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우리 부, 철도운영자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관심경보 발령문 작성·시행(전파)
 - 관심단계 조치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 우리 부 대변인실,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및 BH, 국민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문서로 전파

(다-2)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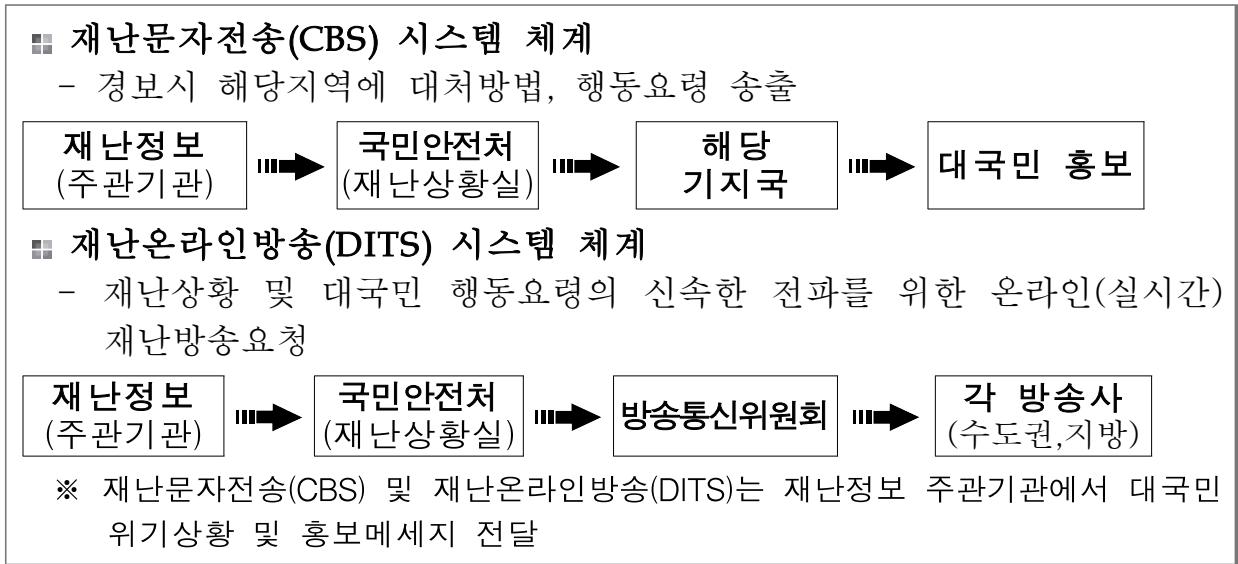
-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필요시)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비상근무 실시

- 수습·복구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철도운행안전과 직원으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비상근무 장소 : 철도재난안전상황실(또는 철도운행안전과)
 - *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철도운영자 현장 사고대책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수습·복구상황을 BH,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필요시 유연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필요시)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점검 지시(필요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 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 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긴급구조통제단의 승객 구조 및 부상자 호송 완료 공표 후 복구 개시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현장 사고대책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추진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필요성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현장 사고대책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유관부처·기관의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검토,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단 구성·운영 검토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사고조사반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 사고 관련 시설 및 전동열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마-2)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관심)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운영, 안전 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관심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해제문)” 참조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마-3)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현장대응 지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및 점검 ○ 긴급구조통제단, 사고대책본부 등 현장 연락처 및 상황 보고 ○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필요시 철도운영 안전과장 현장 파견 |
| 철도운영 안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접수·보고·전파 ○ 승객 대피, 안내방송, 열차통제 등 초동 조치 확인 ○ 경보 발령 및 해제 ○ 보고서 작성 및 조치상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과 연락 및 지원 ○ 사고대응정보 제공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비상근무체계 편성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지원 및 협조요청 ○ 언론 보도문·브리핑 자료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정책관→장·2차관 - 과장→국장 - 재난계→BH, 안전처 등 ○ 기술정책 ○ 재난계 ○ 기술정책 ○ 철도경찰계 ○ 차량·정비계 ○ 차량·정비계 ○ 재난계 ○ 철도안전감독관, 기술정책 ○ 재난계 ○ 기술정책 , 홍보담당관실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사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 부상자 치료 지원 및 호송병원 관리(필요시) ○ 보상협의처리·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책 ○ 차량·정비계 ○ 재난계 ○ 차량·정비계, 필요시 타과 지원요청 ○ 차량·정비계 |
| 공보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문·브리핑 자료 작성·배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담당관실 |

2.1.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부상자 치료 지원 및 보상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가동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보상 지원 ○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 국가안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검토 ○ 일일상황 점검체계 및 '상황평가회의' 가동 등 |
|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상황실 연락체계 및 위험징후 점검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력체계 점검 ○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확인점검 |
| 국방부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
| 경찰청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제2절 관심경보(사망자가 3명 미만인 경우)

2.2.1 상 황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분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700여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10명
 - 물적피해 : 객차 2량 탈선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 기상상태 :
- 기술적 내용 : 0000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고(임무·역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철도운행안전과장→국장 ○ 철도운행안전과(철도경찰) *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 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 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 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 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 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 치 건의(필요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영 |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고(임무·역할) |
|----------|---|---|
| |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황 위중 시 담화문 발표 |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철도운영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피해규모 등 상황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수준에 맞게 대응한다.

- 심각단계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으로 자체 수습·대응

2.2.2.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행 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의 지사 또는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된 상황을 보고(예: 사망 2명, 부상 1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 운행 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 운행 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구호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부상자 구호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심각단계(사망 10명 이상)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수습하고 국토부는 수습·복구상황 지도·관리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최초)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예: 사망 2명, 부상 10명 추정)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환승역의 경우)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지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승객·주민(피해 우려시) 안전대피 유도
- * 현장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필요시 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화재의 경우) 화재 초기진압 및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대피 유도(터널 내 열차 정차시)
- * 공기호흡기 장착, 엄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 (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사고관계인 신병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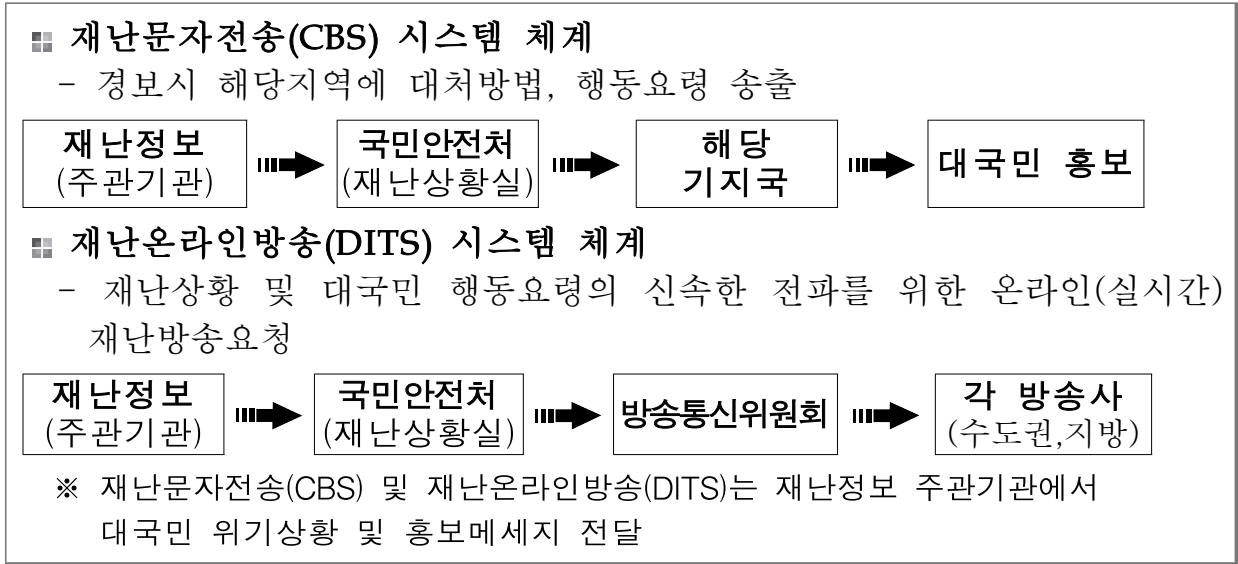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영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영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영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영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 배치 역의 경우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피해상황에 따른 유언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상황종료 시까지 파악된 대로)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터널·지하구간 등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 부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가족 수용시설 등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및 관심경보 발령에 대하여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

- * 심각단계 미만의 경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 수습·대응
-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계속 가동 또는 ‘철도재난안전상황실(철도운행안전과)’로 전환하여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방침)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관심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관심단계’의 위기수준이나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 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 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 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관심)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관심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고 |
|---------|---|-------------------------------------|
| 공보지원반 |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지휘반 |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총괄상황반 |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정책과 |
| 복구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과 |
| 대외 협력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철도과 |

2.2.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본사 지역 사고수습본부 가동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협조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 국가안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구 분 | 내 용 |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검토 ○ 일일상황 점검체계 및 '상황평가회의' 가동 등 |
|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상황실 연락체계 및 위험징후 점검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력체계 점검 ○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확인점검 |
| 국방부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
| 경찰청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제3절 주의경보

2.3.1 상 황(충돌)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되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개 요

'00년 00월 00일(0요일) 00:00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객차 일부 탈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앞 전동열차 700여명, 후발 전동열차 1200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0요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인명피해 사망 4명, 부상 30명, 물적 피해 : 앞 열차 객차 2량 탈선

※ 후발열차 기관사 사망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담화문 발표 |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철도운
 영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피해규모 등 상황에 따
 라 발령되는 경보수준에 맞게 대응한다.

- 심각단계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으로 자체 수습·대응

2.3.2.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운행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참고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열차운행 전면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된 상황을 보고(예: 사망 4명, 부상 3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행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열차운행 전면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열차운행 전면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심각단계(사망 10명 이상)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수습하고 국토부는 수습·복구상황 지도·관리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 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열차운행 전면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환승역의 경우)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지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승객·주민(피해 우려시) 안전대피 유도
 - * 현장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필요시 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화재의 경우) 화재 초기진압 및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대피 유도(터널 내 열차 정차시)
 - * 공기호흡기 장착, 옴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 (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사고관계인 신병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영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영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영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영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상황반)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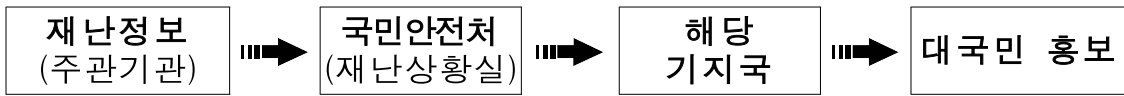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피해상황에 따른 유언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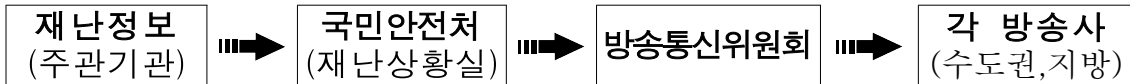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요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세지 전달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및 주의경보 발령에 대하여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
 - * 심각단계 미만의 경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 수습·대응

-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계속 가동 또는 ‘철도재난안전상황실(철도운행안전과)’로 전환하여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방침)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주의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주의단계’의 위기수준이나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 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 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 상황위중시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주의)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주의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5)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고 |
|---------|---|-------------------------------------|
| 공보지원반 |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지휘반 |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총괄상황반 |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정책과 |
| 복구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과 |
| 대외 협력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 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철도과 |

2.3.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본사 지역 사고수습본부 가동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주민대피 명령(필요시)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협조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 국가안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검토 ○ 일일상황 점검체계 및 '상황평가회의' 가동 등 |
|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상황실 연락체계 및 위험징후 점검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력체계 점검 ○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확인점검 |
| 국방부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 사상자 신원파악,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 협조 |

제4절 경계경보

2.4.1 상 황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되어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분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환승역)에서 탈선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전동열차 1,300여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사망 7명, 부상 30명, 앞 열차 객차 3량 탈선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담화문 발표 |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철도운
 영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피해규모 등 상황에 따
 라 발령되는 경보수준에 맞게 대응한다.

- 심각단계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으로 자체 수습·대응

2.4.2.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행 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참고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00행 열차운행 전면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된 상황을 보고(예: 사망 7명, 부상 3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 운행 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 운행 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 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00행 열차운행 전면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00행 열차운행 전면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심각단계(사망 10명 이상)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수습하고 국토부는 수습·복구상황 지도·관리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다수 발생, 00행 열차운행 전면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예: 사망 7명, 부상 30명 추정)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 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승객·주민(피해 우려시) 안전대피 유도
 - * 현장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필요시 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차단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 안내
 - * 환승역의 경우 관련 철도운영자의 승객 대피 및 안내방송, 사고상황 안내 게시문 게시 등 지원·협조·지시
- (화재의 경우) 화재 초기진압 및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대피 유도(터널 내 열차 정차시)
 - * 공기호흡기 장착, 엄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사고관계인 신병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행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행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상황반)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피해상황에 따른 유언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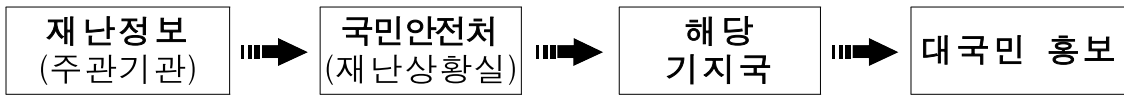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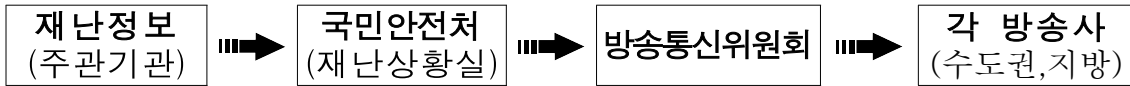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요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세지 전달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환승역의 지하철 이용 상황 및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및 경계경보 발령에 대하여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
 - * 심각단계 미만의 경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에 따라 자체 수습·대응

-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계속 가동 또는 ‘철도재난안전상황실(철도운행안전과)’로 전환하여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방침)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경계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경계단계’의 위기수준이나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 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 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등에 의한 재난대응· 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위기 대응· 복구에 대한 보고, 활동 기록 및 결과 종합관리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 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 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 상황위중시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수립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경계)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경계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공보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 지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총괄 상황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정책과 |
| 복구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과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대외 협력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 광역도시철도과 |

2.4.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본사 지역 사고수습본부 가동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구 분 | 내 용 |
|---------------------------------|--|
| <p>지자체 (시·도, 시·군·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주민대피 명령(필요시) ○ 주민생활 필수기능(전기, 수도, 가스 등) 응급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필요시)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임시영안소·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마련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협조 ○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운행중단구간에 전세버스 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필요시 자원봉사자 배치(참여안내·접수, 집결지·대기소 마련, 의식주 지원, 안전교육 등 시행) |
| <p>국가안보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p>대통령비서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p>중앙안전 관리위원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수준별 추가 조치사항 점검 ○ 재난사태 선포 검토 ○ 관계부처 대책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개최 검토 ○ 국무총리 특별지시, 현장방문 검토 |
| <p>국민안전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필요시)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 및 지원 * 재난합동조사단파견 및 피해상황 점검 ○ 상황실 연락체계 및 위험징후 점검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력체계 점검 ○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확인점검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계, 수습 및 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요청시) ○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군 헬기지원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등 응급복구 및 사고 원인 조사 지원(협조요청시)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수습·복구 등 정부활동 상황 대국민 홍보 ○ 민심안정, 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협조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신원파악 ○ 비상출동로 구간별 교통통제·관리(통행금지·제한) ○ 현장 교통통제·질서유지, 방법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

제5절 심각경보

2.5.1 상 황

전동열차 운행 중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상황인 경우

-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된 경우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철도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것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00역간 상행선에서 열차 0번째 객실에서 휘발성 물질에 의한 화재 발생, 00역에 열차정차

※ 승객 : 전동열차 900여명 추정

* 터널 내 열차화재 발생시는 최근 역으로 열차 이동 및 승객 대피 유도

□ 세부내용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 소 : 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상행선
- 원 인 : 방화 추정
- 피해내용
 - 인적피해 : 70명(사망 15명, 부상 55명), 물적피해 : 차량 0번째 전소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초기진화,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2.5.2 조치사항 및 절차

2.5.2.1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미설치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담화문 발표 |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철도운
 영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피해규모 등 상황에 따
 라 발령되는 경보수준에 맞게 대응한다.

- 심각단계 미만의 사고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수립·운영
 중인 비상대응계획(매뉴얼)으로 자체 수습·대응

2.5.2.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영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 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예: 사망 15명, 부상 55명 추정)
 - * 지하구간(터널) 내 열차화재 발생시는 최근 역으로 열차를 이동하고 승객 대피 유도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행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 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영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 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영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열차 객실 내 비치된 소화기 사용 자체 진화상황 및 화재 확산 가능 여부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 환승역의 경우 타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지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지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전동차 출입문·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방 및 터널 출입게이트 비상모드 전환, 비상게이트 개방 등 확인

- 승객·주민(피해 우려시) 안전대피 유도

- * 화재 확대 예측 및 추가 위험지역 판단, 필요시 사고현장 주변 주민 대피(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차단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 안내

- * 환승역의 경우 관련 철도운영자의 승객 대피 및 안내방송, 사고상황 안내게시문 게시 등 지원·협조·지시

- 화재 초기진압 및 사상자 구조 지원,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 대피 유도(터널 내 열차 정차시)
- * 공기호흡기 장착, 엄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 (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방화 용의자 검거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 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2차 피해 차단 경계활동 등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 * 국방부, 경찰청 등의 경비, 구조 등의 인력지원을 받은 경우 임무·역할을 분장하여 수행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행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행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상황반)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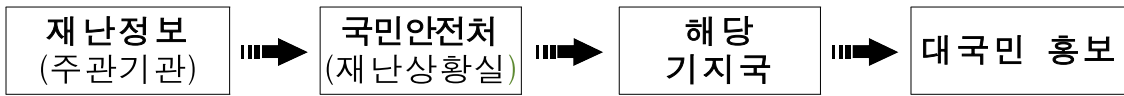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 화재 위험지역내 인명수색·구조상황 확인
- * 화재 잔여 진화작업 철저 점검
-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전동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등 안내방송 실시
- * 타 철도운영자에 사고 및 전동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등 안내방송 실시 협조요청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피해상황에 따른 유언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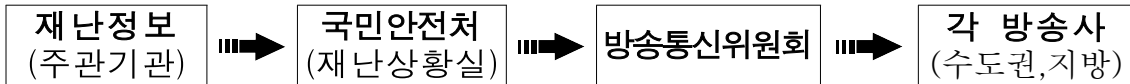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요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세지 전달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환승역의 지하철 이용 상황 및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심각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
 - 협의 결과를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또는 차장(2차관)의 지시사항 등 수령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심각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심각경보 발령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중대본 미설치 시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등에 의한 재난대응·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위기 대응·복구에 대한 보고, 활동 기록 및 결과 종합관리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 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 상황위중시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

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수립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심각)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피해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을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마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사고수습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2.5.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공보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지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총괄상황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정책과 |
| 복구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과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대외 협력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 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 광역도시철도과 |

2.5.4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본사 지역 사고수습본부 가동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잔존 구조물 안전성 검사 |

| 구 분 | 내 용 |
|---------------------------------|--|
| <p>지자체 (시·도, 시·군·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지역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치료·장례, 이재민 구호,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인력·장비 동원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 응원 요청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주민대피 명령(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지역민 대피 명령 - 위험지역내 주민 강제 대피·퇴거 조치 ○ 주민생활 필수기능(전기, 수도, 가스 등) 응급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필요시)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임시영안소·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마련 지원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 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필요시 자원봉사자 배치(참여안내·접수, 집결지·대기소 마련, 의식주 지원, 안전교육 등 시행) |
| <p>국가안보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p>대통령비서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p>중앙안전 관리위원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가동 24시간 상황유지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 개최 ○ 비상대책기구 가동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등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체계, 부처별·기관별 조치사항 점검 및 종합검토 ○ 국무총리 주재 회의 개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시, 현장방문 검토, 특별담화문 발표 검토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 복구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복구비용 지원방안 검토·조정 ○ 위기관리체계 조사·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발생 원인, 단계별 대응활동 분석·평가,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활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단체로 구성)</p> |
|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합동조사단파견 및 피해상황 점검 ○ 경보발령 사전협의 및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피해지역 지자체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 지원검토 ○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및 공무원 복무관리(필요시) ○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검토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사고 상황관련 언론 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조사·평가 (필요시)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구조구급 총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구조·구급활동/화재 진압활동 총괄 - 유관기관 동원 및 총괄현장지휘소 운영 - 위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 ○ 화재진압,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복구 종합보고 ○ 피해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 피해지역 환자 치료 및 방역활동 지원 |
| 기획재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수습 예산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검토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현장 비상급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시행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계,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지원(협조요청시) ○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군 헬기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분야 응급복구 협조 및 화재 원인 조사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수습·복구 등 정부활동 상황 대국민 홍보 ○ 민심안정, 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협조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신원 파악 ○ 비상출동로 구간별 교통통제·관리(통행금지·제한) ○ 현장 교통통제·질서유지, 방법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 인명구조 및 주민긴급대피 지원 |

| 구 분 | 내 용 |
|--------|--|
| 한국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사고지역 전력 공급 차단 및 비상조명 설치 ○ 전기시설 복구 |
| 한국가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화재지역 가스공급 차단 ○ 가스시설 복구 |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발생 상황(탈선)

3.1.1 상황

□ 개요

'00년 00월 00일 00:00분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700여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인적피해 : 사상자 92명(사망 12명, 부상 80명)
 - 물적피해 : 객차 3량 탈선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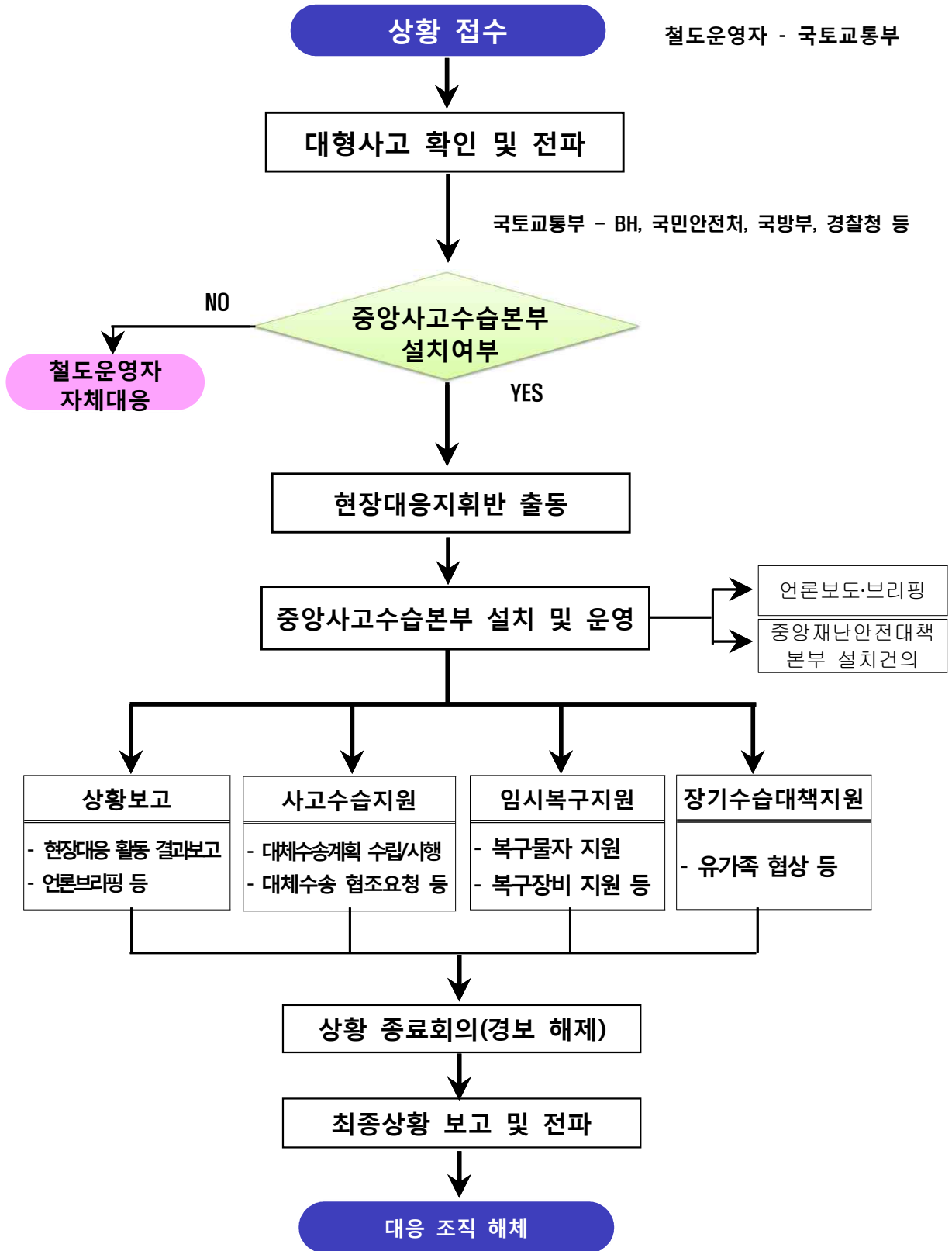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사상자 구조,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사상자 구조,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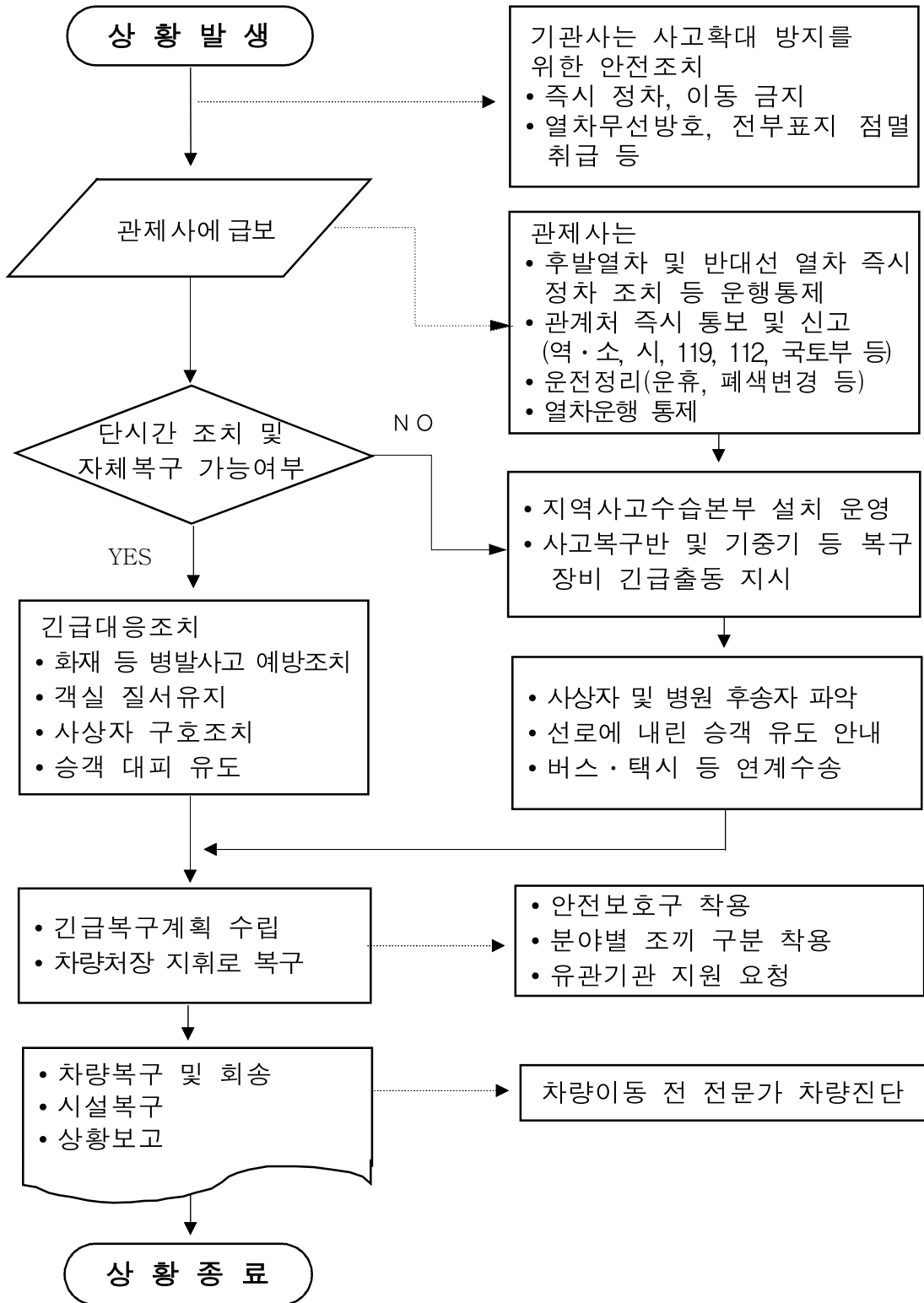
- 기상상태 :
- 기술적 내용 : 0000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3.1.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3.1.2.1 국토교통부 대형사고(탈선) 대응 흐름도



3.1.2.2 철도운영자 지하철 대형사고(탈선) 대응 흐름도



3.1.3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미설치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라) 대응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송대책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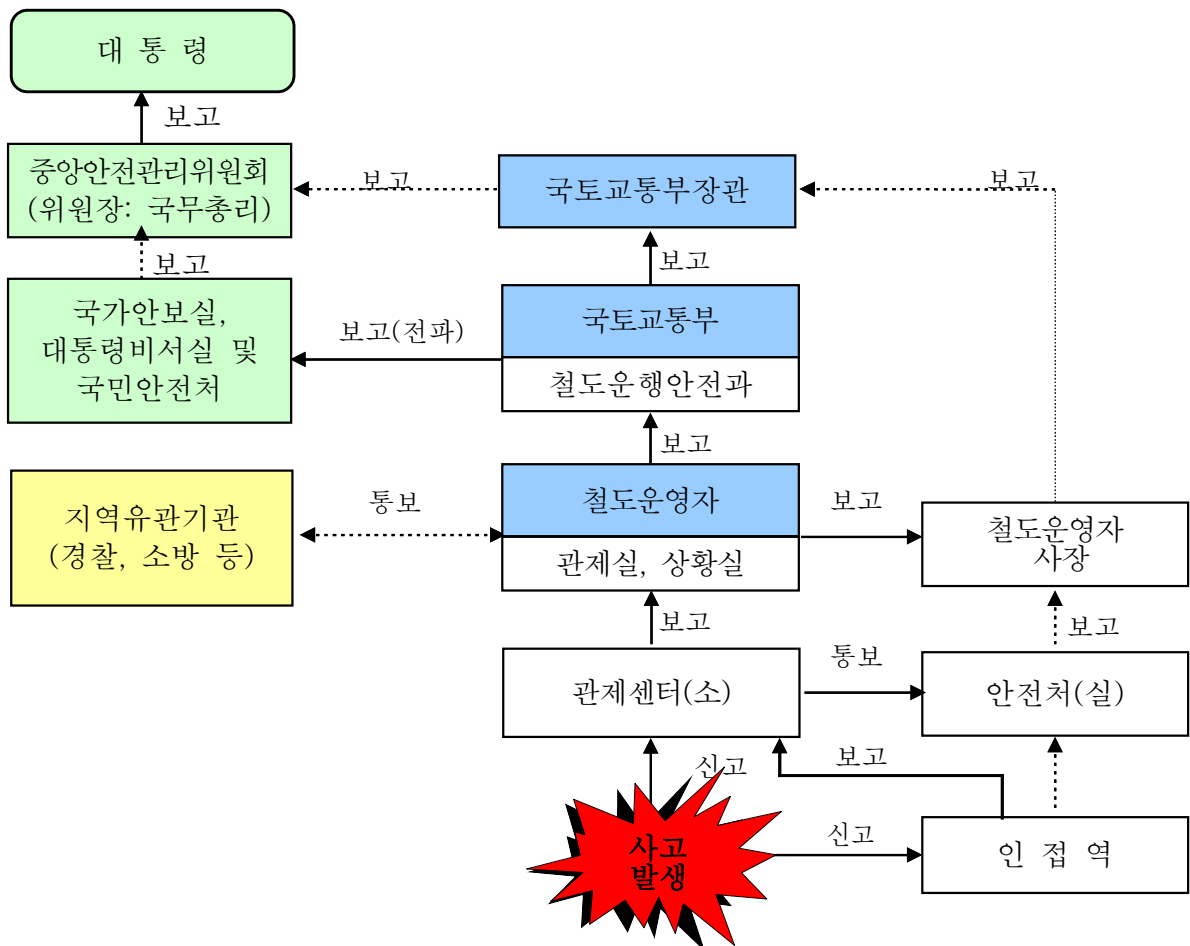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필요시 정부합 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3.1.4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상황 접수 · 보고 · 전파체계도 >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 운행 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참고 : 문자메시지 (예시)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00행 열차 전면운행 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예: 사망 12명, 부상 8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행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00. 00. 00.().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00행 열차 전면운행 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00행 열차 전면운행 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영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영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사상자 발생, 00행 열차 전면운행 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 (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환승역의 경우)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전동차 출입문·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방 및 터널 출입게이트 비상모드 전환, 비상게이트 개방 등 확인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차단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 안내
 - * 환승역의 경우 관련 철도운영자의 승객 대피 및 안내방송, 사고상황 안내게시문 게시 등 지원·협조·지시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 (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방화 용의자 검거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 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2차 피해 차단 경계활동 등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 * 국방부, 경찰청 등의 경비, 구조 등의 인력지원을 받은 경우 임무·역할을 분장하여 수행

< 화재발생, 터널 내 정차시 등 >

- 화재 초기진압 및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대피 유도
 - * 공기호흡기 장착, 엄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화재 확대 예측 및 추가 위험지역 판단, 필요시 사고현장 주변 주민 대피(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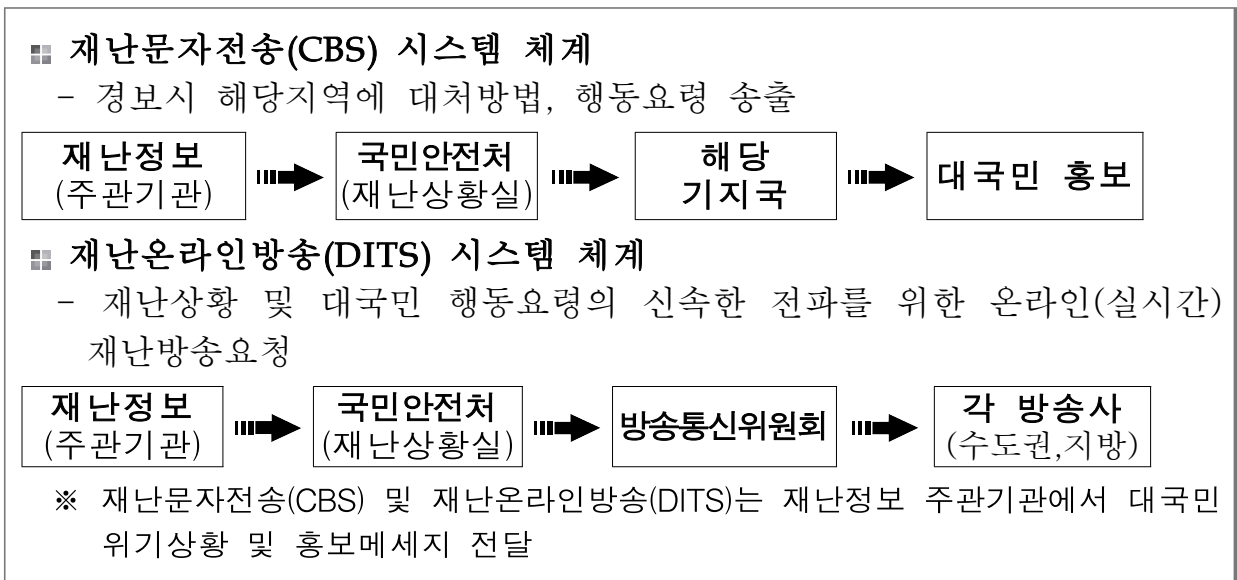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행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행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 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상황반)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피해상황에 따른 유언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환승역의 지하철 이용 상황 및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심각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

- 협의 결과를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또는 차장(2차관)의 지시사항 등 수령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심각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심각경보 발령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중대본 미설치 시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등에 의한 재난대응·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위기 대응·복구에 대한 보고, 활동 기록 및 결과 종합관리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 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 상황위중시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수립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심각)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운영, 안전 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피해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을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마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사고수습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3.1.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공보지원반 |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지휘반 |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 총괄 상황반 |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운영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 지원반 |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 철도정책과 |
| 복구 지원반 |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 철도건설과 |
| 대외 협력반 |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 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 광역도시철도과 |

3.1.6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본사 지역 사고수습본부 가동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잔존 구조물 안전성 검사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지역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치료·장례, 이재민 구호,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인력·장비 동원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 응원 요청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주민대피 명령(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지역민 대피 명령 - 위험지역내 주민 강제 대피·퇴거 조치 ○ 주민생활 필수기능(전기, 수도, 가스 등) 응급조치계획 |

| 구 분 | 내 용 |
|-----------|--|
| | <p>수립 및 시행(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임시영안소·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마련 지원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 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필요시 자원봉사자 배치(참여안내·접수, 집결지·대기소 마련, 의식주 지원, 안전교육 등 시행) |
| 국가안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가동 24시간 상황유지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 개최 ○ 비상대책기구 가동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등 ○ 대응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체계, 부처별·기관별 조치사항 점검 및 종합검토 ○ 국무총리 주재 회의 개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시, 현장방문 검토, 특별담화문 발표 검토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 복구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복구비용 지원방안 검토·조정 ○ 위기관리체계 조사·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발생 원인, 단계별 대응활동 분석·평가, 안전기준 |

| 구 분 | 내 용 |
|-------|---|
| | <p>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p> <p>※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활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단체로 구성)</p> |
|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 및 지원 * 재난합동조사단파견 및 피해상황 점검 ○ 경보발령 사전협의 및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피해지역 지자체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 지원검토 ○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및 공무원 복무관리(필요시) ○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검토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개최) ○ 사고 상황관련 언론 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조사·평가(필요시)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구조구급 총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구조·구급활동/화재 진압활동 총괄 - 유관기관 동원 및 총괄현장지휘소 운영 - 위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 ○ 화재진압,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복구 종합보고 ○ 피해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 구 분 | 내 용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 피해지역 환자 치료 및 방역활동 지원 |
| 기획재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수습 예산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검토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현장 비상급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시행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계,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지원(협조요청서) ○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군 헬기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분야 응급복구 협조 및 화재 원인 조사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수습·복구 등 정부활동 상황 대국민 홍보 ○ 민심안정, 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협조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신원 파악 ○ 비상출동로 구간별 교통통제·관리(통행금지·제한) ○ 현장 교통통제·질서유지,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 인명구조 및 주민긴급대피 지원 |
| 한국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사고지역 전력 공급 차단 및 비상조명 설치 ○ 전기시설 복구 |
| 한국가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화재지역 가스공급 차단 ○ 가스시설 복구 |

제2절 발생 상황(충돌)

3.2.1 상 황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분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에서 정차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객차 일부 탈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상·하행 전동차 운행 전면 불가

※ 승객 : 앞 전동열차 700여명, 후발 전동열차 1200명 추정

□ 세부내용

○ 일시 : 00년 00월 00일 00:00

○ 위치 : 00도시철도 지하철 0호선 00역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14명, 부상 130명, 물적 피해 : 앞 열차 객차 3량 탈선

※ 후발열차 기관사 사망

□ 조치사항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사상자 구조,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사상자 구조·구호 지원,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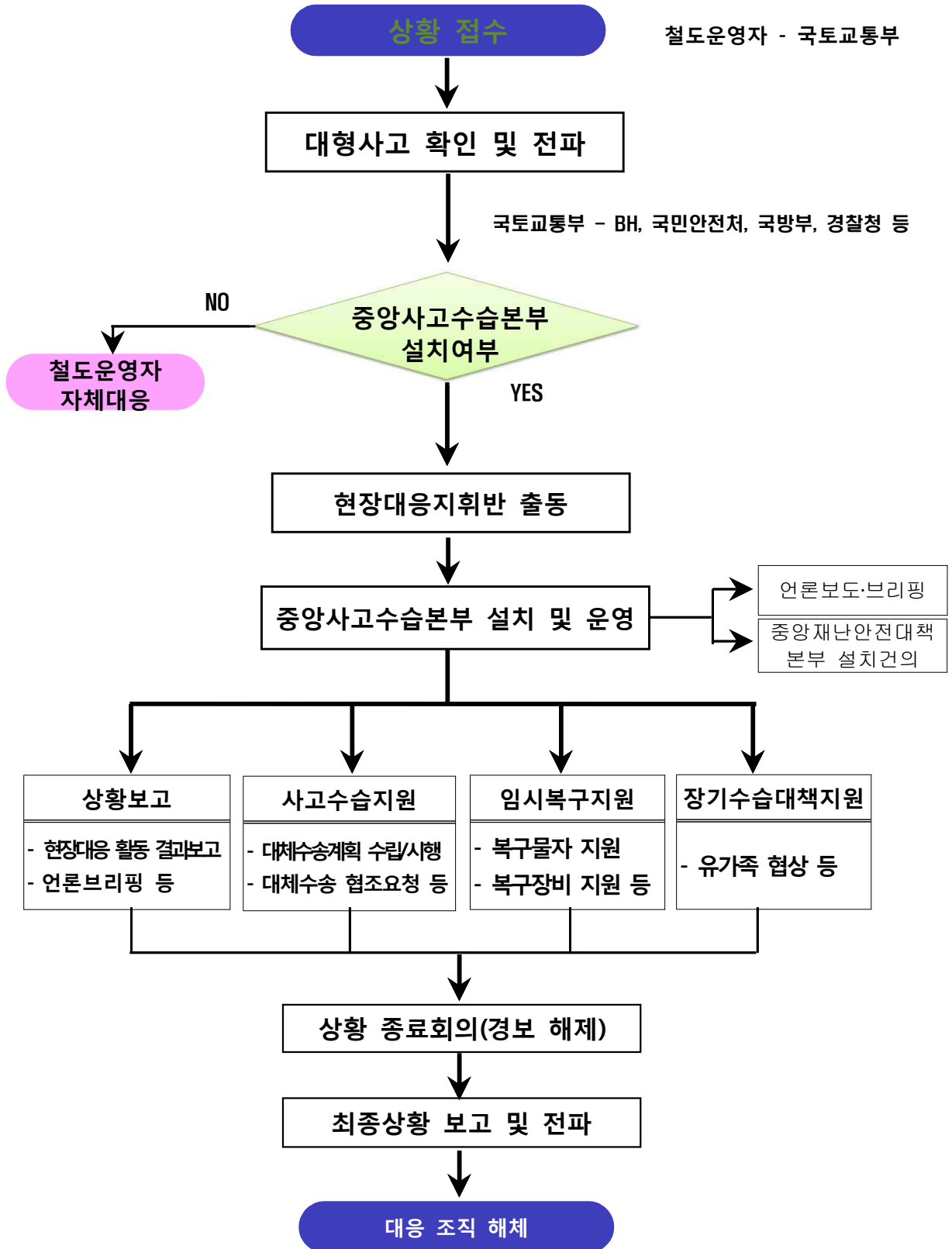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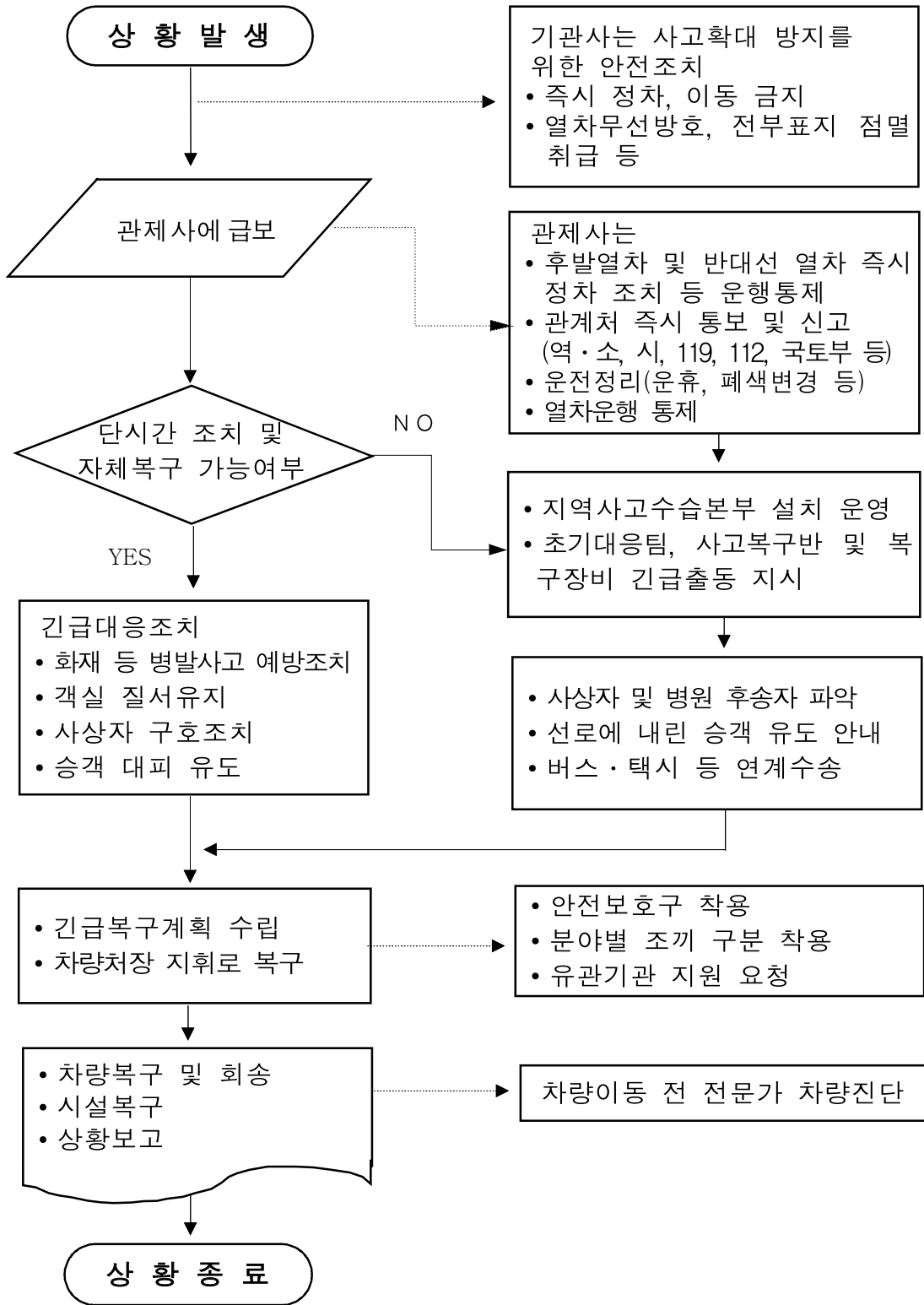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3.2.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3.2.2.1 국토교통부 대형사고(충돌) 대응 흐름도



3.2.2.2 철도운영자 지하철 대형사고(충돌) 대응 흐름도



3.2.3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 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 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 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 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 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 치 건의(미설치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 중앙사고수습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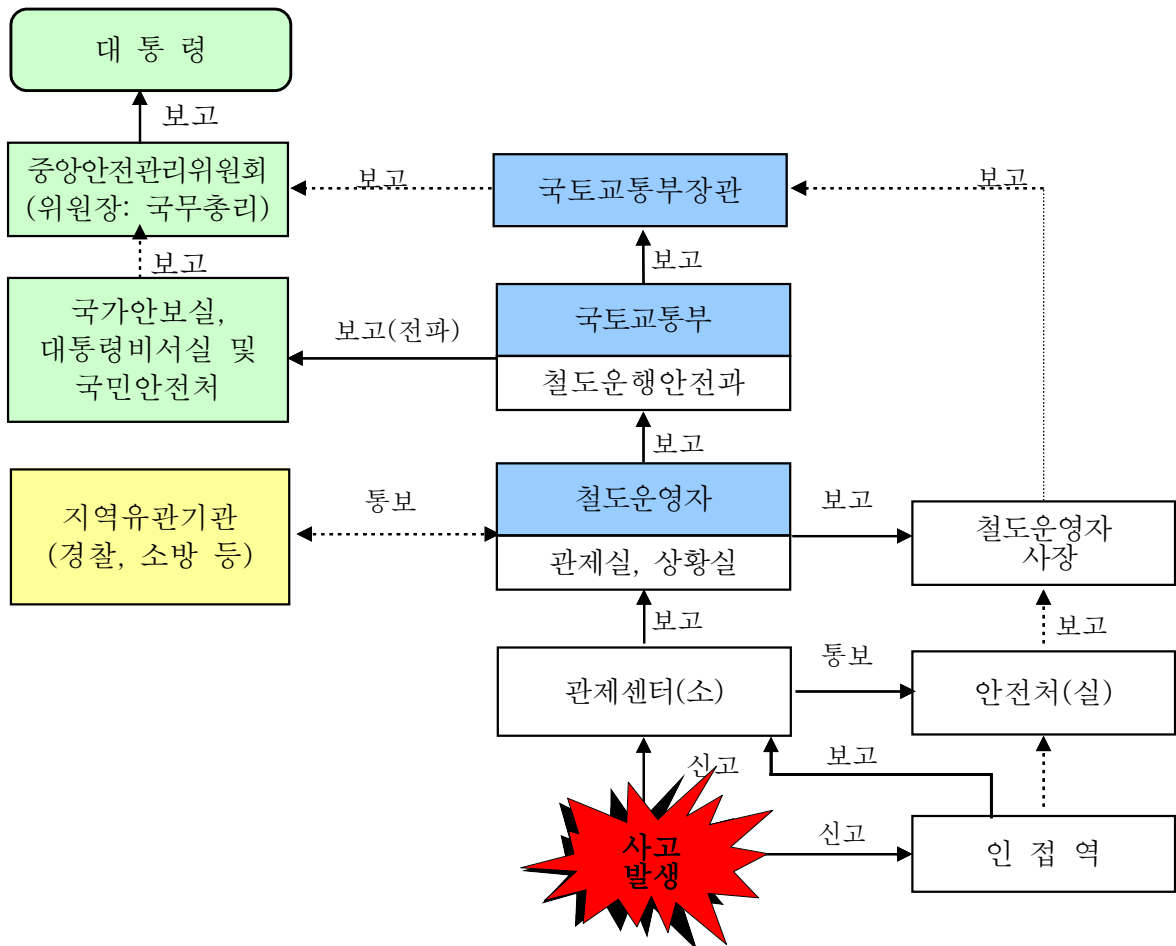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필요시 정부합 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3.2.4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상황 접수 · 보고 · 전파체계도 >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영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참고 : 문자메시지 (예시)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예: 사망 14명, 부상 130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행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00. 00. 00.().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 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후발 열차가 추돌·탈선, 사상자 발생, 전후방 열차 운행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 (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경찰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 승객 피해규모 및 구조, 비상사다리 설치 및 터널 외부로 대피 안내 상황 및 대피 거리,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추돌 후발열차(기관사 사망)의 열차 출입문, 승강장 스크린 도어 개방 및 승객 대피·안내방송 대신 실시 상황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 ※ 이하 조치목록의 내용은 3.1.2 탈선사고 조치목록 내용과 같음

제3절 발생 상황(화재)

3.3.1 상 황

□ 개 요

'00년 00월 00일 00:00경 00도시철도공사 0호선 00역~00역간 상행선에서 열차 0번째 객실에서 휘발성 물질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운행불가

※ 승객 : 전동열차 900여명 추정

□ 세부내용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 소 : 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상행선
- 원 인 : 방화 추정
- 피해내용
 - 인적피해 : 70명(사망 15명, 부상 55명)
 - 물적피해 : 차량 0번째 전소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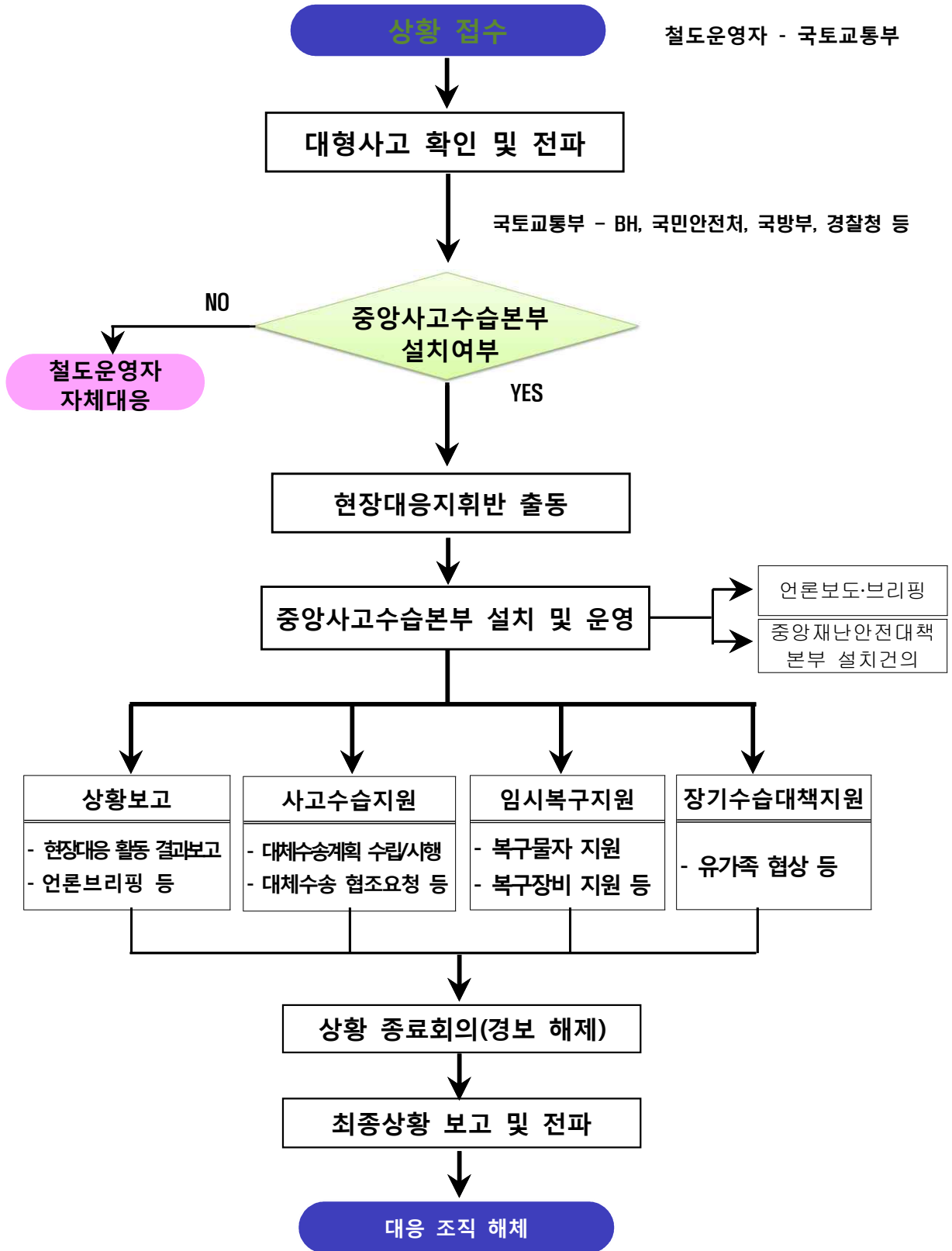
- (기관사) 열차 방호 및 병발사고 예방 조치, 관제 상황 보고
 - 열차무선방호(전·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팬터그래프 하강 등
- (승무원) 초기진화, 승객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유도
- (관제사) 119 및 112 긴급지원요청, 사고상황 급보 및 인력지원 요청
- (00역장) 열차운행상황 안내방송
- (사업소)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비상연락망 가동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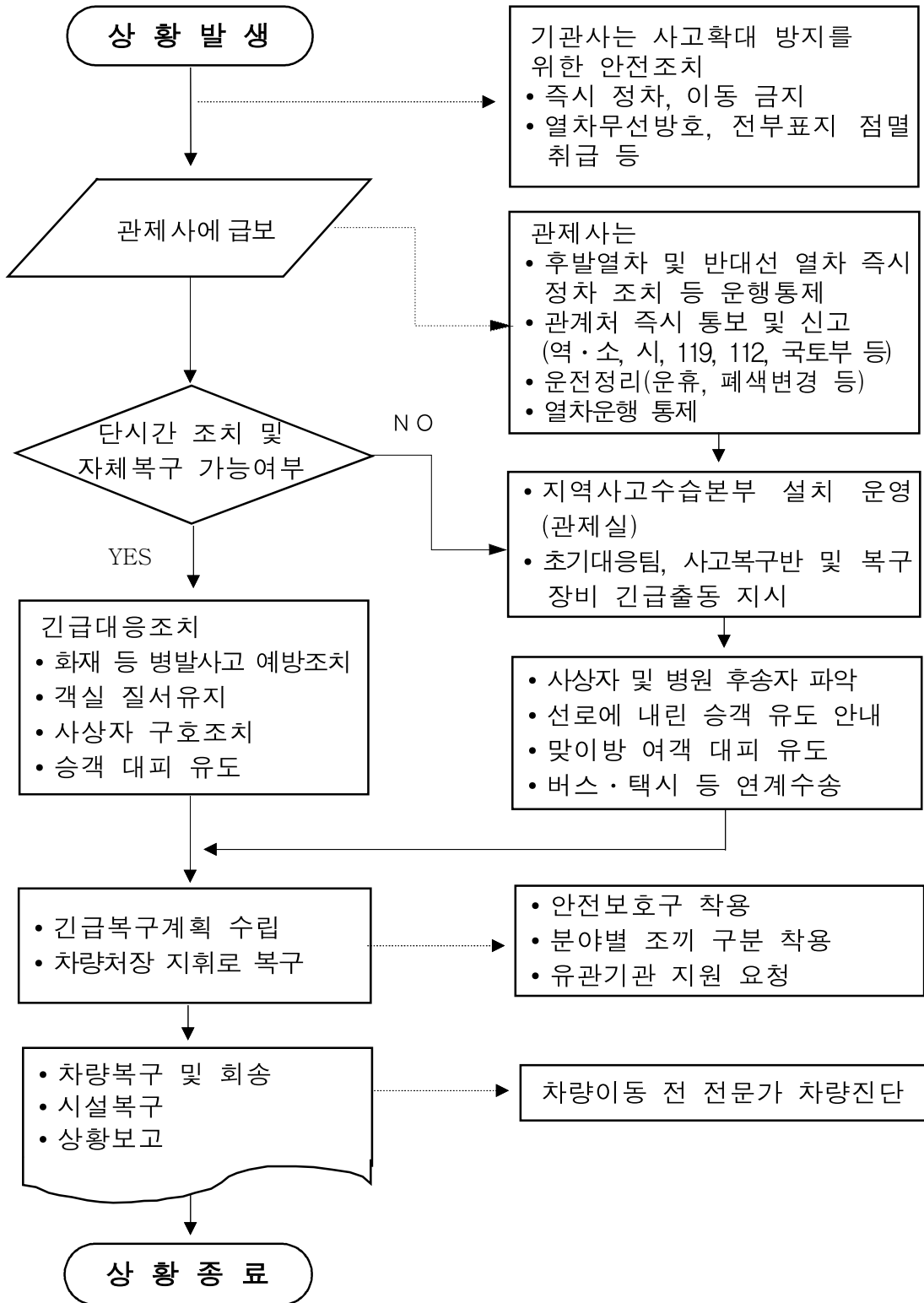
- KBS 등 언론기관 방송취재 및 보도

3.3.2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대응 흐름도

3.3.2.1 국토교통부 대형사고(화재) 대응 흐름도



3.3.2.2 철도운영자 지하철 대형사고(화재) 대응 흐름도



3.3.3 조치목록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 (가-3)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철도국장 ○ 철도운행안전과→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
| (나)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설정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철도운영자, 철도경찰 ○ 철도경찰(경찰) ○ 철도운행안전과장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 철도운행안전과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다-2) 위기수준 평가 (다-3) 평가결과 보고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미설치시) (다-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철도안전정책관) ○ 상황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장·차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관리팀), 공보지원반 |
| (라) 대응조치 |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 중앙사고수습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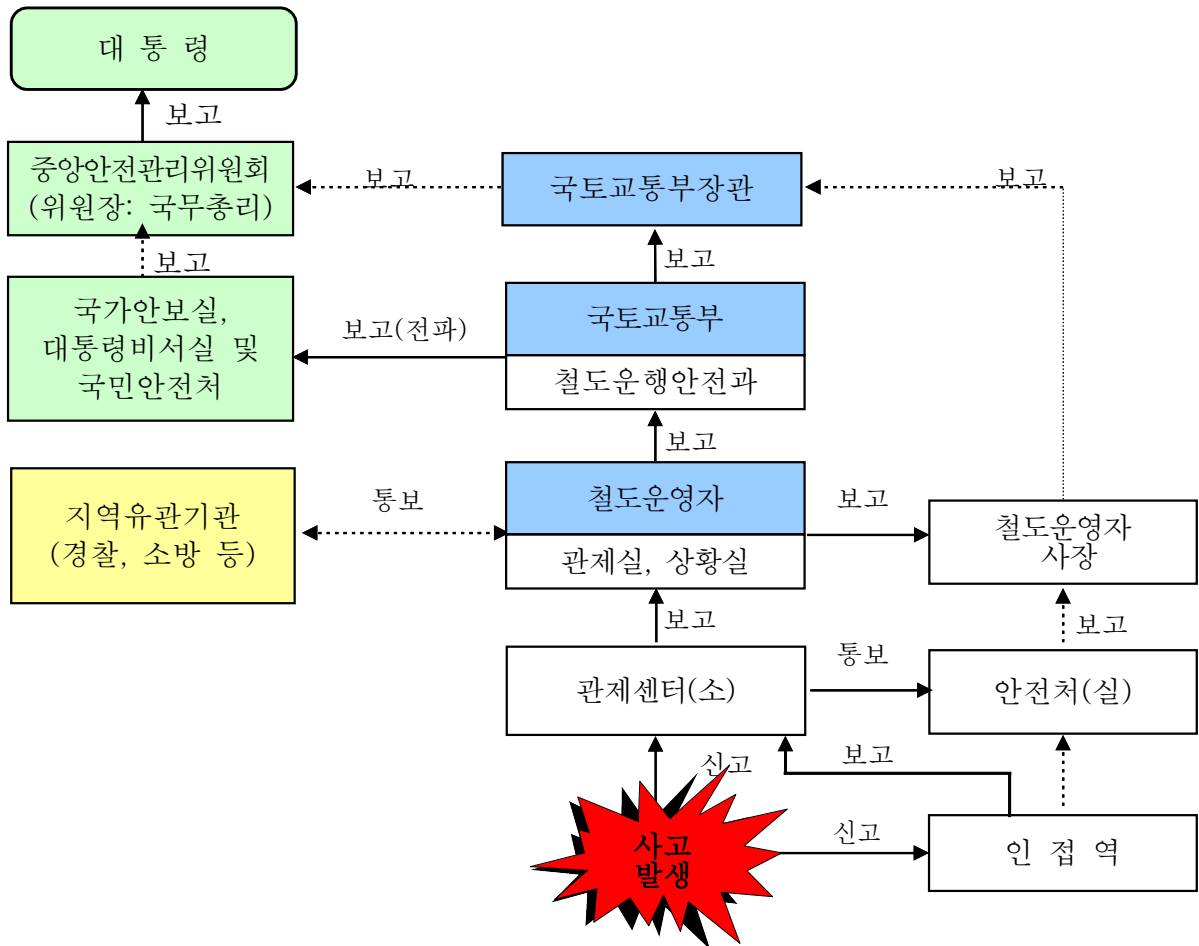
| 조치사항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 행 시간 예측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라-5) 언론브리핑 시행 * 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상 황위중 시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 수송대책반 ○ 총괄상황반(상황지원팀), 복구지원반 ○ 대외협력반→유관기관 ○ 공보지원반 |
| (마) 후속조치 | (마-1) 사고원인 조사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 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 기수습대책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은 사전 국민안 전처 협의, 필요시 정부합 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현장대응지휘반(철도안 전감독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보상지원반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상황보고팀) ○ 총괄상황반, 공보지원반 |

3.3.4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상황 접수 · 보고 · 전파체계도 >



○ 철도운영자로부터 SMS(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상황 수신

- * 이미 설정된 휴대전화 SMS와 병행하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영안전과장 및 관제(재난)담당자에 전화 통보하며 현장에서는 열차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등이 '국토교통 안전알리미'를 통하여 상황 전파

- 위기 발생 현장의 철도운영자 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은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상황 접수

- * 근무시간 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044-201-4672, FAX : 044-201-5700)에서도 상황을 접수
- SMS 내용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 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참고 : 문자메시지 (예시)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사상자 다수 발생, 0호선 열차운행 중단,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예: 사망 15명, 부상 55명 추정)
- 지하철 대형사고 접수대장 기록 유지

(가-2) 보고

- 보고체계 : 철도안전정책관은 장·2차관에,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국장에 상황 보고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행안전과장이 철도국장, 장·2차관에 보고
- 보고방법 : 전화(SMS 포함)
 - * 필요시 서면(FAX 포함) 또는 이메일 보고
- 보고내용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철도공사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00. 00. 00().00:00경 코레일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사상자 다수 발생, 0호선 열차운행 중단

- 현장에는 00역 주재 철도경찰 0명이 인명 구호·대피 지원 및 현장통제 중이며,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이 00:00경 현장 출동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 등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기관 운영 구간(역) >

< 보고내용 (예시) >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 발생, 사상자 다수 발생, 0호선 열차운행 중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보고 후 장·차관 지시 수명사항에 대하여 전달(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자 등) 및 기록

(가-3) 전 파

- 전파대상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 전파방법 : 전파내용을 참조하여 전화(또는 SMS) 후 서면(FAX), 이메일 등으로 전담보고자가 전파

* 전담보고자

| 구분 | | 전화번호 | FAX |
|-----------|-----|--------------|--------------|
| 철도운행안전과장 | | 044)201-4611 | 044)201-5672 |
| 전담 보고자 | 사무관 | 044)201-4612 | |
| | 주무관 | 044)201-4614 | |

- 전파내용(SMS) : 보고받은 내용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 '00. 00. 00.().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진입 중 탈선,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130명 추정) 발생, 전후방 열차 인근역 정차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철도경찰 0명(소방서, 경찰서 등)이 사상자 구호 (지원) 및 현장통제 중임
 -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전파서식 : 부록의 '재난상황 보고서'(최초)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한 부분만을 작성

(나) 초동조치

(나-1) 승객구조·대피, 열차 방호 및 운행 통제 등 초동조치 확인

- 철도운영자로부터 사고발생 내용 및 경위, 승객 피해 여부 및 대피 상황
 - *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구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장출동한 철도경찰로부터도 상황 파악
- 승객 구조·대피 유도 및 안전지역 대피 안내방송 여부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주변 운행열차 정지·통제 등 초동 안전조치 확인
 - 열차방호장치 작동, 열차표지 방호, 열차무선방호 등 작동 여부

- 팬터그래프 하강 조치, 전차선 단전 등 현장 위험 및 병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열차 객실 내 비치된 소화기 사용 자체 진화상황 및 화재 확산 가능 여부
- (환승역의 경우)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철도운영자 환승역 통보, 사고상황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여부
- 상·하행선 열차운행 상황, 기상정보, 언론동향 등

(나-2) 승객·주민 보호조치 및 현장통제구역 선정

- * 아래 내용은 코레일 광역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철도경찰 배치 역에서 사고발생한 경우로 철도경찰이 수행하며, 철도경찰 비배치역에서는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현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철도경찰 현장 출동 초기대응 지원업무 수행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안전점검 등 현장대응지휘반장을 대신한 초동대응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도착 전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반장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확인
- * 사고현장 역 또는 사업소 등에서 초기대응팀이 출동하며, 철도운영자의 사고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자가 현장도착전까지 관계 인근역장이 임시지휘자(책임자)이며 초기대응팀을 지휘 감독
- 사고상황, 피해규모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119, 보건소 등 구조기관, 복구장비 진·출입로 확보(장애물 제거 및 통제) 및 현장안내

- 전동차 출입문 ·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방 및 터널 출입게이트 비상모드 전환, 비상게이트 개방 등 확인
- 사고 역 지하철이용객 유입 차단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 안내
 - * 환승역의 경우 관련 철도운영자의 승객 대피 및 안내방송, 사고상황 안내게시문 게시 등 지원 · 협조 · 지시
- 화재 초기진압 및 승객을 터널 외부로 안전대피 유도(터널 내 열차 정차시)
 - * 공기호흡기 장착, 엄호준수, 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진화 참여인력의 위치 추적 및 현장기록 추진 등 현장긴급구조통제단과 협의하여 진입
- 화재 확대 예측 및 추가 위험지역 판단, 필요시 사고현장 주변 주민 대피(인근 경찰 지원·협조요청)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구조 · 구호 활동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 · 신원 파악, 소요 병실 확보 및 경력 배치 (임시 영안소 설치시 경력 배치)
- 사고현장 출입통제(Police Line 설치 등) 및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
- 방화 용의자 검거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검·경과 수사협조 체제 유지
- 현장경력 투입 강화, 2차 피해 차단 경계활동 등 기타 사고현장 경찰 관련 필요사항
 - * 국방부, 경찰청 등의 경비, 구조 등의 인력지원을 받은 경우 임무 · 역할을 분장하여 수행

(나-3)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에 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
 -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중수본 운영조직 각반 반장(과장)에 상황과 중수본이 가동됨을 전화(SMS)로 알려주고 중수본에 과장(반장),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근무토록 조치
 - *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도 같음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 철도운행안전과장(반장)은 현장으로 출동할 철도안전감독관을 선정, 함께 사고수습 지원·협조 및 필요시 지휘 등 업무 수행
 - * 철도운행안전과장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관이 대신할 자를 지정, 현장으로 출동하며 철도안전감독관은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철도경찰대장에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른 상황 전개사항을 예측, 현장 안전 등 활동 지시
 - * 철도경찰대장은 지시받은 사항 등을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센터장에 전파, 철도경찰 역할 수행 지시
 - 철도운영자 초기대응팀 및 현장 연락처를 입수하여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상황반)에 보고
 - 철도경찰 비배치 역의 경우 먼저 도착한 철도안전감독관이 역할 수행

(나-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설치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6동 660호실, ☎ 044-201-4679, FAX 044-201-5533)
- *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

○ 사고수습본부 조직 반별 임무·역할 수행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 화재 위험지역내 인명수색·구조상황 확인
- * 화재 잔여 진화작업 철저 점검
-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전동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등 안내방송 실시
- * 타 철도운영자에 사고 및 전동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등 안내방송 실시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연락처 확인 및 대응활동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 유관기관의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파견 조치

- * 철도운영자, 철도경찰, 지자체와 합동, 직원 배치(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 * 다수의 사상자로 추가 지원인력 필요시 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소속 직원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파견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시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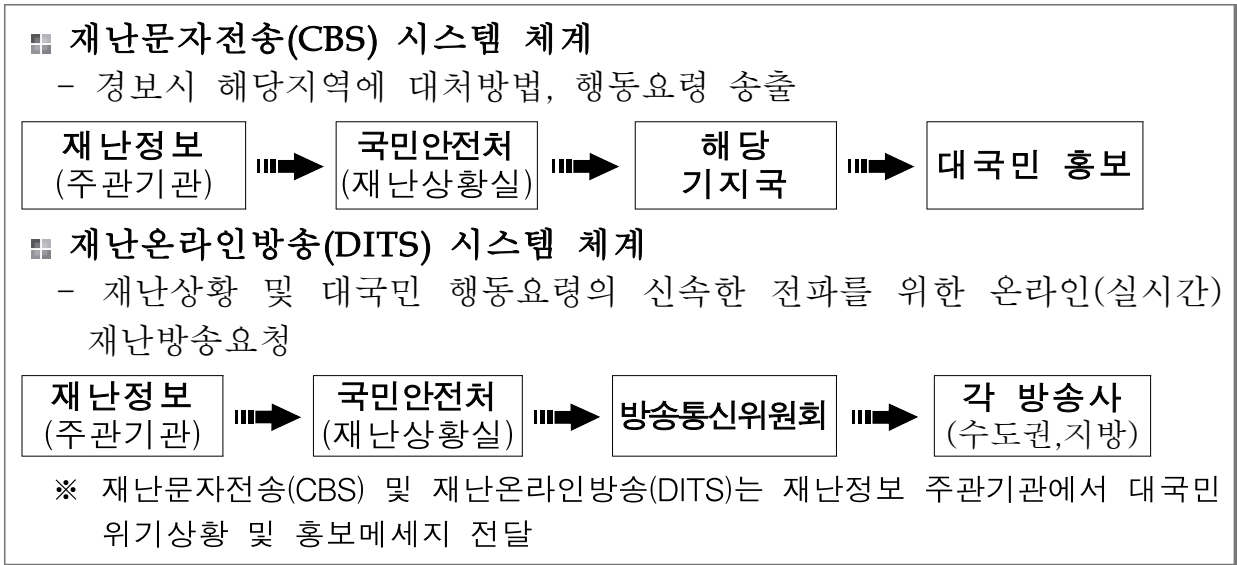
- 사고수습상황(초기, 중간, 최종) 및 경보발령 등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등 유관기관 보고·통보

- * 상황변동시 및 매일 정기보고 : 참고 재난상황보고서 양식 사용

- 사고규모 · 피해상황에 따른 유연비어 통제팀 가동, 대국민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 타 철도운영자에 유사사례 사고방지 자체 안전점검 지시

(나-5)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사고관련 정보 제공
 - 지역 · 지형적 여건, 기상조건 등
 -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현장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 연락처
 - 사고현장 진입로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활동사항
 - 지하철 이용 상황 및 운행중지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 사상자 현황 및 호송병원, 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등
 - 사고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나-6)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경위), 피해규모 및 정부의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다)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다-1)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철도안전정책관(상황실장)
 -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대행
- 참석대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각 반장(위기평가위원)
- 회의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위기 발생 시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으로 우선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므로 회의장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함

(다-2) 위기수준 평가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우선조치 할 사항 등을 검토
 -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리 부 및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사항
 - 대국민 협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다-3) 평가결과 보고

- 위기수준 평가 결과 심각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
 - 협의 결과를 장·2차관에 보고(철도안전정책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또는 차장(2차관)의 지시사항 등 수령

(다-4)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심각경보를 우리 부 대변인실, 관련 과(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조직) 및 BH, 안전처, 철도운영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참조

(다-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심각경보 발령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중대본 미설치 시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에 설치 건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연락관 파견(철도시설안전과장 등)

(다-6) 사고대응정보 제공,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위기경보 발령 및 정부의 사고수습 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 * 언론 대응 및 보도내용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 추진

(라) 대응조치

(라-1) 관계자 비상근무 실시

- 위기상황 대응·수습의 장기 소요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에 대한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복구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확인

(라-2)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사고구간 버스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계획 시행 지원
 - 지하철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전동차 운행구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원
 - 지자체 등에 대중교통(마을· 시내버스, 지하철 등) 연장·증차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검토, 지원 요청(필요시)

(라-3) 피해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등에 의한 재난대응·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위기 대응·복구에 대한 보고, 활동 기록 및 결과 종합관리
- 복구 장비·인원 투입 상황, 복구작업 활동 확인·지도
 - 가용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 독려
- 복구 진척(공정)상황 확인 및 열차 정상운행 시간 예측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작업 추진 상황, 안전점검 및 열차 시운전계획 등을 매시간 단위로 보고받아 장·2차관 보고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활용

(라-4) 유관기관 지원 검토

- 도로·전기·가스 등 복합적 피해발생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우선적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협조 요청
- * 철도운영자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현장대응지휘반으로부터 복구 관련 유관기관 지원·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아 지원·협조 요청
- 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 현장주변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라-5) 언론보도문 및 언론브리핑 시행

- 공보지원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언론보도문 작성·배포 및 언론브리핑 시행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 상황위중시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마) 후속조치

(마-1) 사고원인 조사

- 현장대응지휘반인 철도안전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실시

- 위기유형,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단 추가 구성·운영 검토

(마-2)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반 및 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병행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마-3)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지원, 실종자 창구 일원화
-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지원
- 사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사고 후유증 조사·관리 지원, 정부 지원계획 수립 검토

(마-4)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 사고 관련 구조물 등 시설 및 전동열차의 안전성 검사 조치
- 피해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구복구 지원계획 수립

(마-5) 위기경보 해제 및 상황 종료

- 임시복구 완료 후 시운전열차 또는 구간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철도운영자(또는 지자체) 주관 최종합동회의(지역재난대책본부, 소방·경찰청 등 사고현장 대응기관으로 구성) 개최, 참관·지도
- 철도운영자 현장사고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열차 정상운행 및 최종상황 보고서, 지자체로부터 최종 재난상황 보고서 접수
- 사고개요, 수습·복구 및 열차 정상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장·2차관에 보고
- 위기경보(심각) 해제, 사후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운영, 안전 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해제문 작성 및 발송
 - 우리 부, 철도운영자, 지자체, 유관기관에 상황 종료 통보
 - * 참고 양식 “00사고 위기경보 해제문” 참조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해체 및 현장대응지휘반 철수

(마-6) 언론보도·브리핑 실시

-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사고원인·수습, 항구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극 추진
 - 언론보도문 배포, 언론브리핑 및 정보제공은 공보지원반이 담당
 - * 언론브리핑을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2시간 단위 또는 피해규모 및 수습상황 변동 시에 실시
-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피해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을 공보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마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진(필요시 사고수습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화문 발표)

3.3.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공보지원반 |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 ○ 홍보담당관실 |
| 현장대응 지휘반 | ○ 인명구조·구호 지원, 현장 경찰통제선 설치 및 질서유지 ○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와 2차사고 방지 조치 점검 ○ 사고대응 및 복구 협조·지원·독려 등 ○ 사고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사상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
| 총괄 상황반 | ○ 위기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현장대응지휘반 및 현장 사고대책본부 등 연락 및 지원 ○ 대내외 수시보고 및 일상보고 ○ 재난방송 요청, 사상자 호송병원 직원 배치 ○ 정부의 사태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 작성 |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운행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안전정책과 |
| 보상 지원반 | ○ 피해자 유가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보상협의처리·지원 ○ 총괄상황반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 처리 | ○ 철도정책과 |

| 부서(반) | 임무 및 역할 | 비 고 |
|-----------|--|-----------|
| 복구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활동 ○ 유관기관 등의 현장지원 상황 파악 및 지원 요구 ○ 복구장비 회사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지원유도 | ○ 철도건설과 |
| 대외 협력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민심동향 등 여론정보 수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 ○ 철도운영과 |
| 수송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시행 지원 ○ 사고지역 지하철, 마을· 시내버스 연장·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협조 요청 | ○ 광역도시철도과 |

3.3.6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구 분 | 내 용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 ○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현장 초기대응반 출동 및 현장 사고수습본부 가동, 본사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 경보발령 상황 및 국토부 대응 수준에 따라 조정 ○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타 철도운영자에 전동차 운행 상황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 |

| 구 분 | 내 용 |
|---------------------------------|--|
| | <p>안내방송 실시 협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사망자 장례 및 보상 등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잔존 구조물 안전성 검사 ○ 피해시설 복구대책 마련 |
| <p>지자체 (시·도, 시·군·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지역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치료·장례, 이재민 구호, 사고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 인력·장비 동원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 응원 요청 ○ 인명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주민대피 명령(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지역민 대피 명령 - 위험지역내 주민 강제 대피·퇴거 조치 ○ 주민생활 필수기능(전기, 수도, 가스 등) 응급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필요시) ○ 사상자 호송병원별 직원 배치, 부상자 치료 지원 ○ 임시영안소·피해자 유가족 수용시설 마련 지원 ○ 운행중단구간에 버스 연계 등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교통대책 수립 ○ 필요시 자원봉사자 배치(참여안내·접수, 집결지·대기소 마련, 의식주 지원, 안전교육 등 시행) |
| <p>국가안보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 <p>대통령비서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종합평가 ○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구 분 | 내 용 |
|-----------------------|--|
| <p>중앙안전 관리위원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가동 24시간 상황유지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 개최 ○ 비상대책기구 가동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등 ○ 대응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체계, 부처별·기관별 조치사항 점검 및 종합검토 ○ 국무총리 주재 회의 개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시, 현장방문 검토, 특별담화문 발표 검토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 복구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복구비용지원방안 검토·조정 ○ 위기관리체계 조사·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발생 원인, 단계별 대응활동 분석·평가,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p>※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활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단체로 구성)</p> |
| <p>국민안전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합동조사단파견 및 피해상황 점검 ○ 경보발령 사전협의 및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우리 처 관련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피해지역 지자체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 지원검토 ○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및 공무원 복무관리(필요시)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검토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개최) ○ 사고 상황관련 언론 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주관 부처와 공동대응)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조사·평가 (필요시)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구조구급 총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구조·구급활동/화재 진압활동 총괄 - 유관기관 동원 및 총괄현장지휘소 운영 - 위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 ○ 화재진압,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복구 종합보고 ○ 피해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간 긴밀한 협조체 제 유지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 피해지역 환자 치료 및 방역활동 지원 |
| 기획재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수습 예산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검토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현장 비상급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시행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계,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지원(협조요청시) ○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군 헬기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분야 응급복구 협조 및 화재 원인 조사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수습·복구 등 정부활동 상황 대국민 홍보 ○ 민심안정, 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협조 |

| 구 분 | 내 용 |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신원 파악 ○ 비상출동로 구간별 교통통제·관리(통행금지·제한) ○ 현장 교통통제·질서유지,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 인명구조 및 주민긴급대피 지원 |
| 한국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사고지역 전력 공급 차단 및 비상조명 설치 ○ 전기시설 복구 |
| 한국가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화재지역 가스공급 차단 ○ 가스시설 복구 |

제4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제4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제1절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사전준비 10가지

| 순번 | 조치목록 | 세부내용 |
|----|-------------------------|--|
| 1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 구성원 비상근무 발령 - 철도기관 관련 직원 상황실로 파견요청 - 초동대응(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및 사고수습 |
| 2 | 상황실 가동 | - 비상근무자 편성,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전파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인 |
| 3 |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전파 | -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중앙소방본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
| 4 |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개최 |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정보 발령시 국민안전처 사전협의 |
| 5 | 응급조치 계획 | - 주민대피·구호 계획 - 주민생활 필수 기능(전기·수도·가스 등) 응급조치 계획 |
| 6 | 현장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 - 철도경찰 현장 통제 및 사상자 구조 지원, 진입로 확보 - 철도운영자를 통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가동 -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담당자 파견요청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구급 지휘(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조) - 현장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지자체·관련기관 보고·전파 - 현장대응지휘반 초동대응 협조, 지원·지휘 |
| 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습 협조요청(우리부 직원 중대본 파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전검토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
| 8 | 재난상황 언론홍보·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사전 국민안전처 협의)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 9 | 피해상황조사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 - 자체 피해조사반 구성 - 피해조사 및 재난복구계획 대책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복구계획 심의자료 제출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및 조사 공무원 파견 |
| 10 | 복구사업 시행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사업 추진(총괄) - 재난발생원인·과정 등 조사·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제2절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고속철도 또는 지하철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철도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로 우선 심각단계의 위기수준으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적절히 경보수준을 조절한다.

※ 매뉴얼에서 정한 피해규모 이상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매뉴얼을 준용하여 대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044-201-4679, FAX 044-201-5533)에 설치하며 현장사고수습 지휘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위기평가 위원회

가. 위기평가위원회 설치

- 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정책관실에 「철도 대형사고 위기평가위원회」(이하 '위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나. 위기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사항

- 「위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실무반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철도안전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기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심의)한다.

- 철도 대형사고 위험수준 평가, 위기경보 발령 여부
- 위기경보 단계 변경·해제 등 관련 사항
- 위기경보 대상지역 및 기간 등 발령 범위
- 위기경보 발령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평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회의개최

- 고속철도 또는 지하철 대형사고 또는 기타 철도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 위기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하 위기경보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경우에도 같다.
- 위기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다.
- 위기평가회의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 위기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반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기경보수준 평가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제안한 위기경보 수준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기경보 평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경보발령 및 절차

- 위원장은 「위기평가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평가 수준에 해당되는 위기경보 발령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 피해규모의 정도가 명백한 관심·주의·경계수준의 경보는 위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 발령할 수 있다.
 - 관심단계로 인명피해(사망)가 없는 경우 철도안전정책관이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철도운영자등의 사고수습 상황을 관리한다.
 - 화재·충돌·침수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 없이 운행열차 및 철도시설의 피해가 경미하여 열차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심 경보를 발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경보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하며, 위급한 상황일 경우 선조치하고 최단시간 내 협의에 착수한다.
- 위 항목과 같이 위기 수준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크게 예상되어 당해 위기수준을 초과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 유관기관 등의 장은 위기경보 발령시 단계별 대응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산하 관련기관 및 시설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한다.

제4절 본부장(장관님) 역할

가. 예방·대비단계

- 재난(위기)징후 및 대응방안 청취(종합상황실)
- 잦은 지하철 사고·장애 발생, 다른 위기유형의 대형사고 발생 시 소속·산하기관 특별지시(전화 등)
- 필요시 취약지역 및 철도차량기지 현지시찰

나. 재난발생(접수·전파) 단계

- 피해상황 보고 청취(종합상황실)
- 신속한 응급복구/수습 및 대책 강구 지시
 - 소속·산하기관에 신속한 복구/수습대책
- 긴급 구급·구난체계 구축지시
 - 직원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지시
- 대형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시
- 대형피해 현장 방문 및 언론홍보 지시

다. 초동조치 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주재
- 신속한 구급·구난 및 현장통제, 교통대책 등 지시
 - 소속·산하기관에 초동대응 철저 지시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
- 사고현장 언론브리핑 지시

* 언론브리핑은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에 한다.

라. 복구(상황종결)단계

- 조속한 복구/수습,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지시
 - 유가족 협상계획 등 장기 사고수습대책수립 포함
- 응급복구 현장 방문 및 격려, 사상자 입원병원 방문 위로
- VIP, 총리 응급복구 현장 및 사상자 입원병원 방문시 수행
- 사고결과 언론 종합 브리핑

* 언론브리핑은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후에 한다.

제5절 본부장(장관님)의 산하기관장 전화지시(예문)

가. 도시철도기관(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화지시

- 금번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질문
 - 지하철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 등 피해 규모
 -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대체교통대책 마련 등 비상운영계획
 - 긴급복구·수습 현황 및 복구(개통)예정 시각
 - 애로사항 및 긴급지원 대책
-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당부사항(지시 말씀)
 - 신속한 인명 구조 및 복구·수습 시행
 - 대체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장·단기 사고수습대책 수립

- 피해자 유가족 협상계획

- 본 복구계획

- 현장대응 활동 경과보고

나. 지자체장 전화 지시

-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질문

- 지하철 대형사고로 인한 철도기반시설 피해규모

- 긴급복구 지원현황

- 애로사항 및 긴급지원 대책

-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당부사항(지시말씀)

- 인명구조·복구 등 신속지원

- 복구 관련 시설·장비·인력 등 최대한 지원

- 신속한 철도기반시설 복구계획 수립 및 수행

제6절 유관기관 당부사항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유관기관(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및 소속 산하기관 인명구조·긴급복구 등 지원 요구

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현장지휘소 설치 확인 및 현장상황 파악

- 긴급구조 등 당부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

- 대형사고 발생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요구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등) 협조 당부

라. 국방부

- 군·관 지하철 대형사고 대처 협력 당부
- 도시철도기관(한국철도공사)와 협력부대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구

마. 보건복지부

- 대형사고 발생지역 의료기관 지원요청

바. 경찰청

- 인명구조 및 주민 긴급대피지원
- 교통통제 등 현장질서 유지 및 피해현장 방호 지원

VI. 재난대응 절차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지하철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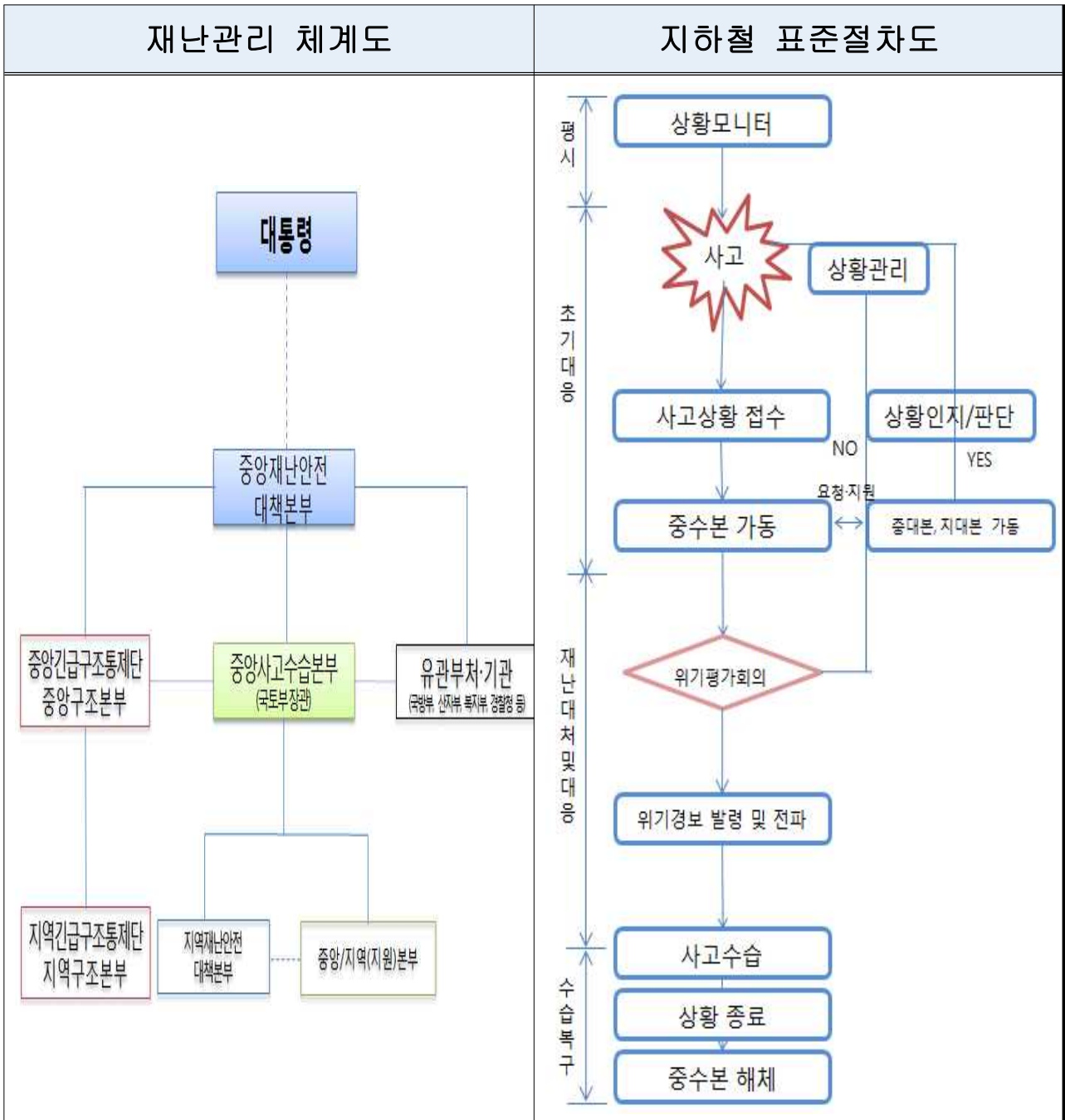
관리번호 : 12

관련 매뉴얼

○ 표준매뉴얼 : 국토교통부

○ 실무매뉴얼 : 국토부, 안전처,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서울9호선, 인천·부산,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 신분당선, 공항철도

제1절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제2절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응 프로세스

| 구 분 |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 초기 대응 | 중수본 운영 | 수습 복구 |
|----------------|--|--|---|--|
| 철도 운영 안전과 | <p>상황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대상 : 철도운영안전과장 →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 장·2차관 •보고방법 : 전화(SMS) <p>상황전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대상 : 중수본 실무반 및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정원, 국민안전처 등 •전파방법 : 전화(SMS)후 FAX 등 •전파서식 : 사고개요 및 우리 부 조치사항 등을 '00 사고 상황 보고서'로 전파 | <p>비상소집, 현장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본 구성원 비상소집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승객구조·구호 지원, 사상자 호송 병원 등 현장상황 신속한 파악·보고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응급의료소의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수송 등 지원 ○ 안전조치 및 승객 대피·구호 등 초동조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방호 및 열차운행 통제 등 ○ 상황보고·전파(초기) : BH,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 <p>위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수준 평가, 평가결과 보고,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심각경보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지대본 등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 사상자 호송 병원별 직원 배치 ○ 대체교통수단 및 비상수송대책 협의·지원 ○ 상황보고·전파(중간) : BH,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 중대본 설치 건의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 중대본 가동시 연락관 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철도안전감독관, 사조위) ○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대책 지원 ○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장기수습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시설 안전성 검사 및 항구복구계획 지원 ○ 상황종료 및 중수본 조직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열차 또는 사고구간 운행 첫 열차 정상운행 여부 확인 - 안전상황실 운영 ○ 언론보도·브리핑 자료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자료 작성(언론브리핑 안전처와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결과, 피해자 지원·보상 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 |
| 장·차관 | <p>상황 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개요 및 초동조치 사항 청취 <p>조치사항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철저 이행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자 사장에 전화 지시 * 주요 사고의 경우 우선 BH 보고 ○ 중수본 설치 지시 | <p>지원, 협조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복구 및 비상수송대책 수립 지시 ○ 관련 지자체장(시·도, 시·군·구)에 전화, 사고수습 지원·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등 검토 현장방문 추진 | <p>대책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 대책회의 주재 ○ 사고수습상황 지속 모니터링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 유관기관 지원·협조 당부 ○ 언론브리핑(2차관, 입회 철도국장, 2시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중대본 가동시에는 중대본과 공동대응 | <p>피해수습, 보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복구/수습,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협상계획 등 장기 사고수습대책 수립 포함 ○ 현장 방문 및 격려, 사상자 호송병원 방문 위로 <p>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총리 응급복구 현장 및 사상자 입원 병원 방문 시 수행 ○ 대국민 담화문 발표(중대본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결과, 피해자 지원·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 |
| 상황실장 (철도안전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상황 보고(방침 수령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개요, 중수본 가동 및 현장대응지휘반 현장출동 등 초기조치 사항 - 파악한 사상자 등 인명피해 규모 및 2차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열차운행상황 및 비상수송대책 등 ○ 철도경찰에 구조·구호 지원 및 현장통제 지시 | <p>중수본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위기평가회의 등 추진절차 착수 ○ 현장 사고수습·대응 상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호·구조 등 초동조치 및 피해규모 -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별 지원·협조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내용 및 조치사항 등 장·차관 보고 <p>경보발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발령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 국무조정실, 국정원, 국민안전처 등 ○ 사고수습상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발령,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해제 및 복구완료 결과 통보 - BH, 국무조정실, 국정원, 국민안전처 등 - 중수본 조직 해체 및 안전상황실 운영 ○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 복구상황, 운행중지 구간 대체교통수단 및 우회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열차 정상운행 가능시간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 |
| 대변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배포 지원 ○ 대국민 홍보,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 지원 ○ 현장지휘소-홍보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배포 지원 ○ 재난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여론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관계부처 협의 정보 제공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브리핑 실시 지원 ○ 사고수습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제3절

국토교통부 부서별 협업기능

| 기능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
|----------------|---|--|---|
| 주관부서 (연계부처) | 철도운영안전과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 철도건설과 (환경부) |
| 주요 업무 | <p><상황관리활동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접수·상황 확인 사고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보고(장·차관, BH, 국무조정실 등) 중수분 운영 현장대응지휘반과의 연락 및 지원 위기평가회의 개최 및 위기경보 발령·해제 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 홍보 보도자료 작성 | <p><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파악·관리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 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이재민 학교시설 이용 시 생필품, 취사도구 등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 재난 발생·우려 지역주민 대피유도, 위험지역 내 주민 강제 대피, 퇴거 | <p><재난현장 쓰레기,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쓰레기 규모 및 처리 등 상황 파악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정·운영 재난현장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 및 처리 |

| 기능 | ④ 긴급 통신지원 | ⑤ 시설응급복구 | ⑥ 에너지 기능 복구 |
|----------------|---|---|--|
| 주관부서 (연계부처) | 철도건설과 (미래부) | 철도건설과 (행자부, 국방부 등) | 철도건설과 (산자부) |
| 주요 업무 | <p><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파손 및 통신 두절 현황 파악 및 상황 관리 통신두절지역 신속한 긴급통신 체계 가동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 통신장비 보급 등 통신자원 공동 활용 관계기관 지원현황 파악 및 관리 | <p><피해시설 응급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사고 발생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피해지역 군·경·민간 등 보유 인력·장비의 지원 체계 가동 | <p><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사고 피해지역 광역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인명구조 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 기능 | ⑦ 재난수습홍보 | ⑧ 물자관리 및 자원 관리 | ⑨ 교통대책 |
|----------|---|--|--|
| 주관부서 | 공보지원반 | 철도운영과 | 광역도시철도과 |
| (연계부처) | (문체부, 방통위) | (국방부, 조달청 등) | (행자부, 경찰청 등) |
| 주요 업무 | <p><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수본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언론 브리핑 및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 <p><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피해상황에 따른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 지원 피해지역 부족 장비·인력에 대한 타지역 자원 지원 응급복구 동원장비·인력 등 투입 | <p><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통제 상황 파악 관리 통제상황 대국민 홍보 통제 해소시기 예측관리 운영중단구간 대체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지원 대중교통 연장·증차운행 및 택시부재 해제 검토, 지원 요청 |

| 기능 | ⑩ 의료·방역 | ⑪ 자원봉사 관리 | ⑫ 사회질서 유지 | ⑬ 긴급구조 및 수습지원 |
|----------|--|--|---|---|
| 주관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경찰대 | 철도시설안전과, 철도경찰대 |
| (연계부처) | (복지부, 행자부) | (행자부) | (행자부, 경찰청) |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
| 주요 업무 | <p><재난대응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응급환자 수송 헬기 지원 및 치료 지원 의료물자 및 장비 동원 | <p><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자원봉사 참여 안내 및 자원봉사자 접수 자원봉사 집결지, 대기소 운영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p><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지역 주민 긴급대피 지원 사상자 신원 등 현황 파악 피해발생 및 우려 지역의 출입 통제 실시 교통·통제지역 파악·보고 피해지역 민심 동향 및 각종 여론 동향 파악 | <p><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피해 발생시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화상환자 발생시 응급화상치료 및 화상치료 전문병원 긴급 후송 지원 사상자 신원파악 및 병원 분산 배치 사망자 시신보호를 위한 임시영안소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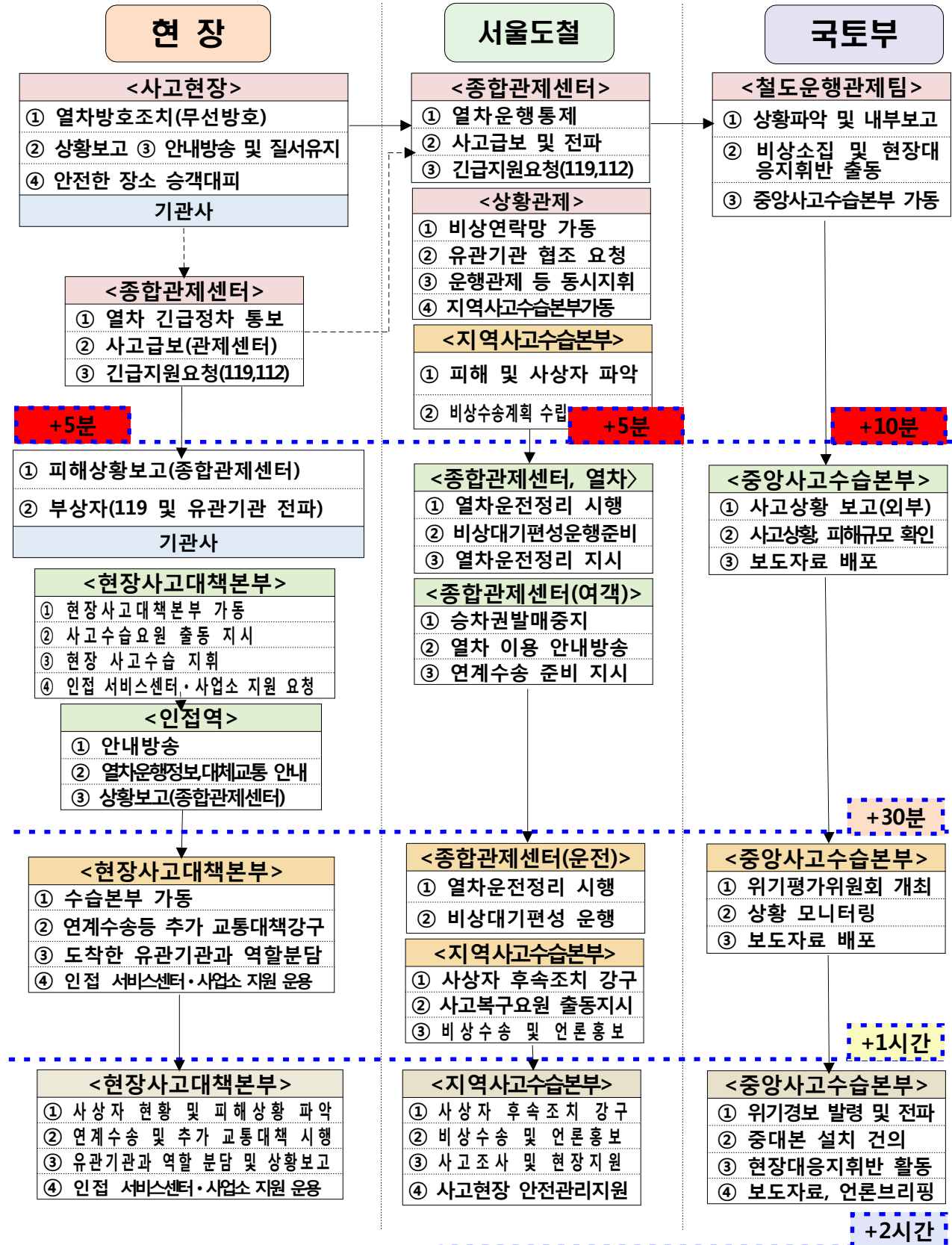
제4절 지하철 대형사고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

| 부처 | 예방, 대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초동조치 | 중수본 / 중대본(지수본/지대본) |
|-----------|---|---|--|--------------------|
|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대형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운영 안전시설 및 설비 개선·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널목 개선(평면식→입체식 건널목), 선로보호 방호 울타리 개선, 불순세력 침입 감시장치 설치 등 고속철도 관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장대교량·터널 등 취약시설 특별 지정관리 고속철도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 고속철도 사고발생시 우선조치사항 등 사고관리기준 설정, 시달 관련기관 위기상황 대응실태 확인·점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홍보업무 점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열차통제 등 안전조치, 승객 대피 및 안내방송 등 피해최소화 조치 확인 위기상황 보고·전파 현장대응지휘반 출동, 현장 지휘 사고대응 조치·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협력사항 파악 및 요청 철도경찰 현장통제 및 사상자 구호·구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대응 조치·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협력사항 파악 및 요청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수준 검토 및 경보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경보 발령시에는 사전협의(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건의 비상수송교통대책 시행 지원 피해자 유가족 대책 지원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지원) 언론보도자료·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안전처와 공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브리핑은 안전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 | |
| 국민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가동을 통한 정보수집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모니터링 및 전파 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주관기관 대응활동 파악·보고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소관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점검 및 유지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확산 대비 체계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준비 인력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경보발령 사전협의(국토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지원(재난합동조사단 파견 및 피해상황 점검) 사고상황 관련 언론 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국토부와 공동대응) | |
| 대통령비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국민 안전대책 등 총괄·조정 |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승인(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기관리 관련정책 조정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등 위기와 관련된 동향 및 여론수집·분석, 전망 및 예측 긴급지원체계 대비상황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체계 대비상황 점검 경보수준별 조치사항 점검 관계부처 대책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개최 검토 국무총리 특별지시, 현장방문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상황관리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상황 점검 대응관련 주요대책의 협의·조정 및 지원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특별지시, 현장방문·특별담화문 발표 검토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
| 기획재정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복구 및 수습예산 지원, 피해자에 세제 및 금융지원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복구 및 수습예산 지원, 피해자에 세제 및 금융지원 검토 | |
| 문체부, 방통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두절에 따른 소통대책 강구 및 지역재난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 협조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지원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상황 및 대응·수습 상황 정부활동 브리핑 지원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지원, 언론 인터뷰 및 오보대응 가이드 제공 등 언론 활동지원, 재난방송 지원 등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의료지원대책 및 재해지역 방역·위생대책 점검,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 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 가동 피해지역 환자치료 및 방역활동 지원 |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점검, 군인력·장비지원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인력·장비 지원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인력·장비 지원,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군 헬기지원(필요시) |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유지, 동향 정보 수집 및 전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신원파악,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신원파악,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 |
| 중앙소방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상황실 등 연락체계 유지, 비상종합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 필요인력·물자 동원체계, 응급구조 및 구조활동 점검 자원봉사단체 연계운영 관리계획 수립 소방안전관리업무 지원·조정, 소방안전종합대책 수립·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구조구급 총력대응 화재진압,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복구, 피해조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
| 산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산업·에너지 관련시설 등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대비한 광역지원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사고 지역 전력공급 차단 및 비상조명 설치, 전기시설 복구 철도사고 화재지역 가스공급차단, 가스시설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사고 지역 전력공급 차단 및 비상조명 설치, 전기시설 복구 철도사고 화재지역 가스공급차단, 가스시설 복구 | |
| 환경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지원·협조사항 점검,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현장 비상급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시행 | |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체계 구축, 연습훈련 및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가동 - 인근주민 대피 및 피해확산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비상교통대책 수립 | |
| 철도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위기상황 발생 대비 비상 수송계획 구축 고속철도 관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고속철도 유관·실무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 대형사고 유형별 징후목록 유지·평가 해외 고속철도 사고 예방 및 대응기법 분석·활용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홍보업무 점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승객 대피 조치 및 대피 안내방송 시행 구조·구난 및 화재진압 지원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대체교통수단 투입, 열차운행 조정 및 관리 각 역 내외에 사고 및 열차 운행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안내 방송 실시 피해상황 신고 접수 및 인력·장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상황 보고·전파 및 인명구조·구조활동 지원 언론 및 대국민 소통·홍보(국토부 협의) 복구인력·장비 투입 및 지원체계 운영 시설물 안전성 검사 및 고속열차 정상운행 조치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지원) 피해자 유가족 대책 마련 | |

제6장 참 고 자 료

제1절 지하철 대형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도시철도기관 예시)

1 초동조치 흐름도 (flow chart)



② 초동조치 매뉴얼

□ 5분이내

| 구 분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기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방호조치(무선방호 : 전, 후열차 및 반대편 열차) ○ 열차관제 즉시 상황보고 ○ 안내방송 실시(승객동요 방지, 질서유지) ○ 안전한 장소로 승객 대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내 열차화재 발생시는 최근 역으로 열차 이동 및 승객 대피 유도 |
| 역 (정)역장 (부) 부역장, 역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접수 · 전파 · 보고 · 신고 · 출동 ○ 초동조치 (진화, 접근통제, 구조, 대피안내 등) ○ 시민 게이트 진입통제 ○ 시민안내방송 |
| 기술관리소 (정)관리소장 (부)신호취급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지점으로 향하는 열차 긴급정차 통보,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소에 사고발생 급보 ○ 긴급지원요청(119, 112, 관리역) 확인 |
| 기술/차량사업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팀 출동지시 ○ 비상연락망 가동 ○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 종합관제센터 (정)열차관제차장 (부)운전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급보 및 전파(전, 후 열차 및 반대편 열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노선 일제상황전파 (필요시 전 노선 동시전파) * 기관사(1인 승무) 유고시 열차방호 대신 수행 ○ 긴급지원요청(119, 112), 사고복구반 출동지시 ○ 열차운행통제(필요시 전차선 단전 요청) |
| 종합관제센터 (정)여객관제차장 (부)여객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요청(119, 112) 확인 * 테러 시 111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사(1인 승무) 유고시 안내방송 대신 수행 ○ 사고급보 및 전파(임원, 전 상급 및 지원 유관기관) ○ 직원 사고 및 비상상황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직원에 SNS(카카오톡, 밴드)로도 전파 |
| 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

□ 30분 이내

| 구 분 |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현장 | 기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파악 후 열차관제에 피해상황 보고 (인명 및 시설피해 등) ○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119 및 유관기관 협조) |
| | 역 (정) 역장 (부) 부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센터에 피해상황 및 사고현장 상황 보고(중간보고) ○ 역 안내방송 주기적 시행 및 안내문 게시, 긴급문안 표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정보 및 대체교통수단 안내 등 ○ 역사내 시민대피 조치, 승객대피 ○ 응급환자 구호활동 |
| | 초기대응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질서유지 및 피해상황 파악 ○ 사상자 응급구호 및 119 구조활동 협조 ○ 승객 대피유도 |
| | 기술/차량 사업소 (현장지휘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고대책본부 가동 ○ 연계수송을 위한 버스 수배 ○ 분야별 사고수습요원 현장출동 지시 ○ 지역본부 지원 요청 |
| 본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및 사상자 현황 파악 ○ 비상수송계획 수립 |
| | 종합관제센터 (정)열차관제 차장 (부)열차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원열차 운행 등 열차운전정리 시행 ○ 비상대기 편성 운행준비 ○ 구원열차 운행 및 임시 열차운전정리 지시 |
| | 종합관제센터 (정)여객관제 차장 (부)여객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에 상황통보 및 열차이용 안내방송 시행 ○ 승차권 발매중지 및 열차운행정보 제공 ○ 버스 수배 등 연계수송 준비 지시 ○ 관계기관 진행상황 보고 |

□ 1시간 이내

| 구 분 |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현장 사고 대책 본부 | 기관사 열차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관제에 피해 및 복구 상황보고 ○ 복구 지원(119 및 유관기관 협조) |
| | 초기대응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및 병원 이송 현황 파악 ○ 연계버스 이용 시 승객안내 |
| | 역 (정)운전 팀장 (부)역무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 안내방송 주기적 시행 및 안내문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정보 및 대체교통수단 안내 등 ○ 열차표 반환 및 환불 내용 안내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조 연계수송 등 추가 교통대책 강구 ○ 도착한 유관기관과 역할 분담 |
| 지역 사고 수습 본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현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 인접 지역본부 사고복구지원요원 출동 지시 ○ 비상수송계획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운휴, 구간운전, 연계수송 등 ○ 사고현황 및 비상수송계획 등 언론 홍보 |
| | 종합관제센터 (정)운전관제 차장 (부)운전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원열차 등 열차운전정리 시행 ○ 비상대기편성 운행 및 구간운행 |

□ 2시간 이내


| 구 분 |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현장 사고 대책 본부 | 기관사 열차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관제에 피해상황 보고 ○ 복구 지원(119 및 유관기관 협조) ○ 관제 지시에 따라 이후 상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송(구원연결) 준비 등 |
| | 역 (정)역장 (부)부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 안내방송 주기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정보 및 대체교통수단 안내 등 ○ 사고현장 잔재정리 등 영업재개 준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인적사항 등 현장 파악 ○ 열차운행상황 파악 및 열차운행조정, 운전정리 협의 ○ 대외협조 연계수송 등 교통대책 시행 ○ 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 사고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작업 시행 ○ 인접 지역본부 복구요원 및 장비와 역할 분담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가동 |
| 지역 사고 수습 본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인적사항 현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 비상수송계획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운휴, 구간운전, 연계수송 등 ○ 비상수송계획 등 언론 홍보 지속 시행 ○ 사고원인조사 및 사고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원 |
| | 종합관제센터 (정)운전관제 차장 (부)운전관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원열차 등 열차운전정리 지속 시행 ○ 비상대기 편성 운행 및 구간운행 |

3 개인별 임무 카드(예시)

| 비상상황 발생시 기본조치(관제) | |
|--------------------------|---|
| 종합관제센터 센터장 000 | |
| 상황수보 ~ 5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간 : 근무시간 내】 ▪ 상황수보 및 종합관제소 총괄지휘 【야간, 공휴일(근무시간 외)】 ▪ 상황수보 및 피해상황 파악 등 |
| 5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간 : 근무시간 내】 ▪ 인명구조, 승객대피 상황 파악 ▪ 사고복구 상황 수시 파악 【야간, 공휴일 : 근무시간 외】 ▪ 관제부장과 수시 정보교환 ▪ 본사출동 후 총괄지휘 |
| 상황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복구 완료 상황 파악 - 현장 사고복구반 책임자 등 |
| 비상 연락 | 사 장 : 운영 본부장 : 기술 본부장 : 안전관리실장 : 홍보 실 장 : |
| 종합관제소 관제부장 000 | |
| 상황수보 ~ 5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내】 ▪ 상황수보 및 운영관제팀 총괄지휘 【근무시간 외】 ▪ 상황수보 및 피해상황 파악 등 |
| 5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내】 ▪ 인명구조, 승객대피 상황 파악 ▪ 열차운행 및 현장 복구상황 수시 파악 【근무시간 외】 ▪ 관제부장과 수시 정보교환 ▪ 본사출동 후 운영팀 총괄지휘 |
| 상황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 가능여부 파악 - 사고복구 현장 등 |
| 비상 연락 | 사 장 : 운영 본부장 : 기술 본부장 : 안전관리실장 : 홍보 실 장 : |
| 종합관제소 관제차장 000 | |
| 상황수보 ~ 5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수보 및 피해상황 파악(소내 전파) ▪ 각 반 관제 총괄지휘 ▪ 119, 112 신고(신고여부 확인) ▪ 역 안내방송 지시(해당역, 상황관제) - 승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 ▪ 초기 상황 SMS 문자전송(상황관제) |
| 5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승객대피 상황 파악 ▪ 열차이용 안내 일제 안내방송(상황관제) - 복구 완료 및 열차 정상운행 시까지 ▪ 사고복구 상황 수시 파악 ▪ 초기 상황보고(급보기관) |
| 상황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복구 완료 상황 파악 ▪ 최종 상황보고(급보기관) |
| 비상 연락 | 운영 본부장 : 기술 본부장 : 안전관리실장 : 홍보 실 장 : 관제센터장 : 관제 1부장 : |
| 0호선 운전관제차장 000 | |
| 상황수보 ~ 5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수보 및 피해상황 파악(소내 전파) ▪ 0호선 운전관제 총괄지휘 ▪ 119, 112 신고(신고여부 확인) ▪ 전 열차 상황전파 및 열차통제 지시 ▪ 승객구조 등 초기 안전조치 지시 - 관제사 → 승무원 역 직원 |
| 5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수시 파악 - 인명구조 승객대피 상황 및 복구반 출동 상황 - 사고복구 진행상황 ▪ 운행 중단구간 및 가능구간 설정 - 운행가능구간 비상 회차 등 |
| 상황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복구 완료 확인(현장책임자) ▪ 열차운행 재개 지시 |
| 비상 연락 | 관제센터장 : 관제 1부장 : 답십리승무소장 : 개화산승무소장 : 철도교통관제센터 : 02-2027-7151 서울메트로관제소 : 02-6110-5990 |

4 국토부 초동조치 매뉴얼(고속철도, 지하철 공통 적용)

□ 10분 이내

| 직책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p>현장 :</p> <p>(정) 철도운 행안전과장</p> <p>(부) 철도안 전 감독관, 철도경찰대 장</p> <p>국 토 부</p> |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장·차관 보고</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현장 출동</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현장 안전지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자로부터 상황 접수(SMS, 전화, 국토 교통 안전 알리미 등) ○ 철도안전정책관 장·차관 유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운영안전과장이 보고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영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현장 급파 ○ 현장안전 지시(철도운영안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경찰대 : 현장통제(Police Line 설치) 및 사상자 구호 협조, 현장정보 수집 * 필요시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인력 지원 요구 - 언론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 얼 참조 ○ 임시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장(운영기관) → 철도경찰대, 안전감독관 → 국토부(철도운영안전과장) |
| <p>중앙사고 수습본부 (상황실장: 철도안전 정책관)</p>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중앙사고수습 본부 설치</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고상황 파악</div> <p>↓</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필요시 병원별 직원 파견</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또는 SMS 후 FAX, 이메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국방부, 지자체, 중앙소방본부 등 업무 협조 요청 * 열차 탈선·충돌·화재 등으로 사망사 고 발생시 심각단계로 대응 ○ 위기 상황 및 근무 통보 : 철도운영안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본부 각반별 비상근무자 소집 ○ 사고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경위, 인명피해·구조, 사고확대방지 등 ○ 사상자 다수 발생 시 호송 병원별 직원 급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안전과 직원 파견 |

□ 30분 이내

| 직책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p>현장 :</p> <p>(정) 철도운 행안전과장 (부) 철도안 전 감독 관, 철도경찰대 장</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p>현장 안전조치 및 상황 보고</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책임자 : 중간 상황보고, 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행안전과장 도착전 임시지휘자 - 중간 상황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상자 구조 지휘(필요시) ○ 철도경찰(경찰) : 현장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통제(Police Line 설치) 및 현장 주 요정보 채집 - 사상자 구호 협조 - 비상소집 및 현장 경력 투입 강화 - 사상자 후송 병원 현황 파악 - 복구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 증거자료 확보 등 검·경과 수사협조 체제 유지 - 실시간 현장상황 현장대응지휘반장 및 사고수습본부에 보고 |
| <p>중양사고 수습본부 (상황실장: 철도안전 정책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p>장·차관 보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p>유관기관 전파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상황 보고(방침 수령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피해 규모, 사상자 구호 및 병원 후 송상황, 사고확대방지 조치, 열차 비상수 송대책 등 - 위기평가회의 등 추진 절차 착수 * 철도안전정책관 : 장·차관 보고 ○ 유관기관 사고상황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 국무조정실, 안전처, 국정원, 중앙 소방본부, 경찰청 등 ○ 언론 보도자료 배포(1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시간, 장소 등 사고발생 여부 등만 1 차 보도 |

□ 1시간 이내

| 직책 |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국 토 부 | 현장 : (정) 철도 운 행 안 전 과 장 (부) 철도 안 전 감 독 관, 철도경 찰대장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활동 개시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지휘반 현장 도착 및 활동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즉시 수습상황 장·차관 구두 보고 - 현장사고대책본부 지휘체계 지도·지휘 시행(필요시) - 사고수습 현황 보고 청취 - 현장대응지휘반 사무실 확보(전화, FAX, 비품 등) * 평일 : 대전권은 1시간내, 대전외의 지역 2시간 내 * 근무종료 후 및 공휴일 : 수도권·중부권 2시간 내, 강원(영동)·호남·영남권은 4시간 내 현장도착 ◇ 사고규모 등 고려 차관님 현장 방문 요청 ◇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경찰의 현장상황 청취 및 안전 조치 관련사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피해 현황 및 사상자 후송 병원 현황 - 복구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 증거자료 확보 등 검·경과 수사협조체제 유지 |
| | 중앙사고 수습본부 (상황실장: 철도안전 정책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 위기평가 위원회 개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위원 : 본부 조직 구성 반장 - 내용 : 현 심각단계 유지여부 또는 향후 위기 상황 경부 수준 결정 * 철도안전정책관 유고시 철도안전정책과장이 주관 ○ 사고수습 총괄업무 지속 수행 |

□ 2시간 이내

| 직책 | |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
|-------------|--|--|
| 국 토 부 | <p>현장 : (정) 철도 운행 안전 과장 (부) 철도 안전 감독 관, 철도경 찰대장</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현장대응지휘반 본격 활동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철도경찰 안전조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 지휘반 본격 활동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구조·구호 및 사상자 호송병원 현황 - 사고 피해 및 진압활동 등 확인·지도/지휘 - 사고복구 인력·장비 투입 및 작업 독려 - 수습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매 1시간) - 유관기관 지원·협조 필요사항 보고 * 차관님 방문시 언론인터뷰 준비 ◇ 철도경찰 현장 안전조치 지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 복구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 현장 보존 등 검·경과 협조체제 유지 |
| | <p>중앙사고 수습본부 (상황실장: 철도안전 정책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위기평가위 원회의 개최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경보발령사항 유관기관 전파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언론 보도 및 브리핑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및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 위기경보 평가결과 장·2차관 보고 * 심각경보 발령시 국민안전처 사전협의 ○ 위기경보 발령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 국무조정실, 국정원, 안전처 등 ○ 사고수습상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보도문 작성 및 브리핑(매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상황,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홍보담당관 협조를 받아 사고수습본부 작성 * 피해규모, 복구계획 등 ○ 필요시 장관님 브리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브리핑 시 국민안전처 사전협의 |

제2절 서식

가. 「최초 보고」 전화(SMS) 형식 (예시)

1. 철도운영자 SMS 보고(수신)

- 사고개요(일시·장소, 탈선·충돌 등 사고유형), 인명피해 유무, 안전조치사항 등

< 문자메시지 (예시) >

◇ 00:00경 00년 00월 00일(요일)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상세내용 추후 보고

- * 사상자는 보고 당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예: 사망 15명, 부상 55명 추정)
- * 지하구간(터널) 내 열차화재 발생시는 최근 역으로 열차를 이동하고 승객 대피 유도

2. 장·2차관 보고

-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 부 조치사항 추가

< 보고내용 (예시)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영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3. 유관기관 전파

- 보고받은 내용(SMS)에 우리부 조치사항 추가(예시)

< 보고내용 (예시) >

◇ 0000.0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간 0번째 객차 화재 발생, 최인근 00역에 열차 정차, 승객대피 중, 사상자 다수 발생

-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심각단계로 대응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 현장대응반인 철도운행안전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0명 00:00경 현장 출동
-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인명 구호·대피 중이며, 사고경위 및 피해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 * 파악된 사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보고(예; 사망 0명, 부상 0명 추정)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로서 철도사고조사반 0명이 현장에 파견된 사항도 상황에 따라 보고
- * 유관기관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나. 「최초 보고」 서면 서식

- 아래 보고서식을 참고하여 최초 보고로 작성가능한 부분만을 작성하여 FAX, 또는 이메일로 송부(전파)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수신처 참조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안전과(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수신처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재난안전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 국방부, 국정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다. 「중간·최종 보고」 서면 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6>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라. 「위기 상황판단/평가회의 보고서」 서식

① 위기 상황판단/평가회의 보고서

| | | | |
|--------------|---------|-------|------------|
| ② 위기유형 | | | |
| ③ 경보내용 | | | |
| ④ 보고번호 | | ⑤ 기관명 | |
| ⑥ 관련근거(출처) | | | |
| ⑦ 통보기관 | | | |
| ⑧ 1. 관련상황/정보 | | | |
| ⑨ 2. 분석/판단 | | | |
| ※① 3. 조치사항 | | | |
| ※② 작성자 | 철도운행안전과 | 직책 | (성 명) (전화) |

- 작성요령

- ① 보고서의 종류 : 위기상황판단과 위기평가회의로 구분 작성
 - 위기상황판단보고서 : 위기경보가 없이 상황전파 시 사용
 - 위기평가회의보고서 : 위기평가회의 후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
- ② 위기유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유형, 또는 간략하게 제목 서술
- ③ 위기경보 내용을 표시하거나 없을 시에는 빈칸으로 둠
- ④ 보고번호 : 부처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 ⑤ 기관명 : 부처/기관명 기재
- ⑥ 관련근거 : 정보의 출처로서, 언론, 문서, 직무 등
- ⑦ 통보기관 : 관련보고서 전파 부처/기관
- ⑧ 관련상황/정보 : 부처 판단 결과
- ⑨ 분석/판단 : 부처 판단 결과
- ※① 조치사항 : 부처/기관의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 ※② 작성자 : 부처/기관의 부서와 직책 연락처 기재

마. 「00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서식

○○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 | |
|---|--------|
| 수 신 : 배부처 참조 | |
| 발 신 : 국토교통부장관 | |
| 제 목 : ○○사고 경보 발령 | 배부처 |
| ○ 발령일시 : ○ 발령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발령사유 : - - ○ 조치사항 가. 우리부 조치사항 - - 나. 유관기관 조치사항 - - | 국가안보실 |
| | 대통령비서실 |
| | 국무조정실 |
| | 국민안전처 |
| | 국정원 |
| | 국방부 |
| | 경찰청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바. 「위기평가회의 회의록」 서식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재난수습 조치 등 -

| | | | | | |
|---|----------------|----------------|----------------|----------------------|----------------------|
| <p>○ 일 시 : 0000년 0월 00일 00:30~00:45</p> <p>○ 장 소 : 국토부 철도운영자</p> <p>○ 참석자 :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철도건설과장, 광역도시철도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p> <p>○ 주요검토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에 따른 위기수준 평가 및 우선 추진 조치사항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수본 가동 - 지하철 탈선·화재 피해 확산 방지 및 수습대책 마련 - 운행중단구간 비상수송대책 지원 - 중대본 가동 건의 및 유관기관 등 지원·협조 요청 -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 | | | |
| 철도 안전 정책관 | 철도 정책 과장 | 철도 운영 과장 | 철도 건설 과장 | 광역 도시 철도 과장 | 철도 안전 정책 과장 |
| | | | | |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서식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 기관명

- 기관별 자체 대책

- 산하기관·시설 조치사항

- 관계기관 협조 필요사항

- 조치 필요사항

※ 유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기술된 위기경보 단계별 임무·역할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아. 「위기경보(심각) 발령 해제」 서식 [작성예시]

지하철 탈선사고 심각경보 발령 해제



| | | |
|--|--------------------|---|
| 수 신 : 배부처 참조 | | |
| 발 신 : 국토교통부장관 | | |
| 제 목 : 지하철 탈선사고 위기경보 해제 | 배부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일시 : ○ 해제전 경보발령 : 「심각경보」 ○ 해제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00. 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탈선,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00명, 부상 000명)가 발생하고 철도시설 일부가 손상된 사고는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가 완료됨 ○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보해제 후 우리 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철도운영자 운영으로 전환하고 지속 모니터링 ○ 같은 사례의 철도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운영자 철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상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의 보상협의 지원 ○ 언론보도자료 배포(사고수습 상황, 재발방지대책, 대국민 협조 감사사항 등) 나. 유관기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의 보상협의 지원 ○ 철도운영자 자체 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 국가안보실 | ○ |
| | 대통령비서실 | ○ |
| | 국정원 | ○ |
| | 국민안전처 (중대본부) | ○ |
| |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 ○ |
| | 국방부 | ○ |
| | 중앙소방본부 | ○ |
| | 경찰청 | ○ |
| | 보건복지부 | ○ |
| | 철도운영자 | ○ |
| | 00시 | ○ |
| | 00구 | ○ |

자.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경보해제)」 서식 (작성예시)

위기평가회의(경보해제) 보고서

| | | | |
|---|--|-----|-------|
| 위기유형 | 지하철 대형사고(탈선 및 화재) | | |
| 경보해제내용 | 심각 | | |
| 보고번호 | 2015-00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관련근거(출처) | 코레일 사고수습본부 상황 접수 | | |
| <p>1. 관련상황/정보</p> <p>☞ '00. 0. 00(0),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 탈선,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상 80명(사망 10명, 부상 70명)</p> <p style="padding-left: 20px;">- 00:00경 사상자 구조·구호조치 완료, 00:00경 임시복구 완료하고 열차 정상운행</p> <p>2. 분석/판단</p> <p>☞ ○ 국가차원의 위기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지하철 대형사고로 범정부적 대응으로 사고수습 완료하고 열차 정상운행</p> <p>3. 조치사항</p> <p>☞ ○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관련 발령된 위기경보(심각)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보상협의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철도운영자 운영 - 위기경보 해제, 안전상황실 운영 등의 조치사항을 유관기관에 전파 <p>○ 철도운영자 철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p> <p>○ 사상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의 보상협의 지원</p> | | | |
| 작성자 | 철도안전정책과 (직책) 과장 (성명) 한동민 (전화) 044-201-4600 | | |

차. 「보도자료」 서식 1 (작성 예: 탈선)

| | | | |
|---|--|---|--|
|  <p>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p> | 보도자료 | |  <p>경계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p> |
| | 배포일시 | 20 . . () 총 00매(본문 , 붙임) | |
| 담당 부서 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 |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상황반 000 ☎ (044)201-4679(사고수습본부) | |
| 보도일시 | 20 년 월 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 () 11:00 이후 보도 가능 | | |

00지하철 0호선 00역 열차탈선으로 사상자 발생


‘00년 0월 00일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00역 사이에 열차 탈선으로 사상자 다수 발생함

지하철 탈선으로 발생한 부상자 중 응급환자는 구조용 헬기로 인근병원에 긴급 후송 중에 있음(00명 후송)



* 사상자 : 긴급구조통제단 발표 내용 인용(사망 00명, 부상 00명)

00도시철도공사의 긴급사고복구반과 00시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의 긴급구조대가 현장에 긴급히 투입되어 인명구조 및 구호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00역 주재 철도경찰에 사상자 구조 및 승객대피 지원토록 하였으며 현장대응반(반장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사고수습 지원토록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
|---|--|
|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1-46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차. 「보도자료」 서식 2 (작성 예: 화재)

| | | | |
|--|--|---|--|
|  국토교통부 <small>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mall> | 보도자료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
| | 배포일시 | 20 . . () 총 00매(본문 , 붙임) | |
| 담당 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 (철도운영안전과) | 담당자 :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상황반 000 ☎ (044)201-4679(사고수습본부) | |
| 보도일시 | 20 년 월 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 () 11:00 이후 보도 가능 | | |


00지하철 00역사의 대형화재 사고에 따른 현장지휘소 설치·가동

□ '00년 0월 00일 00:00경 00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전기시설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 후송병원 : 붙임 참조(또는 00병원 00명, 00병원 00명 등으로 기술)

□ 사고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군, 경찰서, 시·군·구 공무원, 지하철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휘소가 설치되어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 및 국민은 추가적인 동요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
|---|---|
|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1-4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카. 「주민대피 경보 방송문」 서식

주민대피 경보 방송문(예)

○○○에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 ○○분 현재 ○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에 있
는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
역으로 대피/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 대피시 주민행동요령

-

이상 ○○○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타. 「사고처리 일지」 서식

사고처리 일지

○ 재난유형 : 지하철 탈선

| 일시 | 상 황 | 조 치 사 항 | 근 거 (문서번호등)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처리(방침, 회의소집, 지시, 전파, 보고, 처리결과 접수 등)한 내용을 기재

국 토 교 통 부

제3절 지하철 대형사고 사례

1. 국내 사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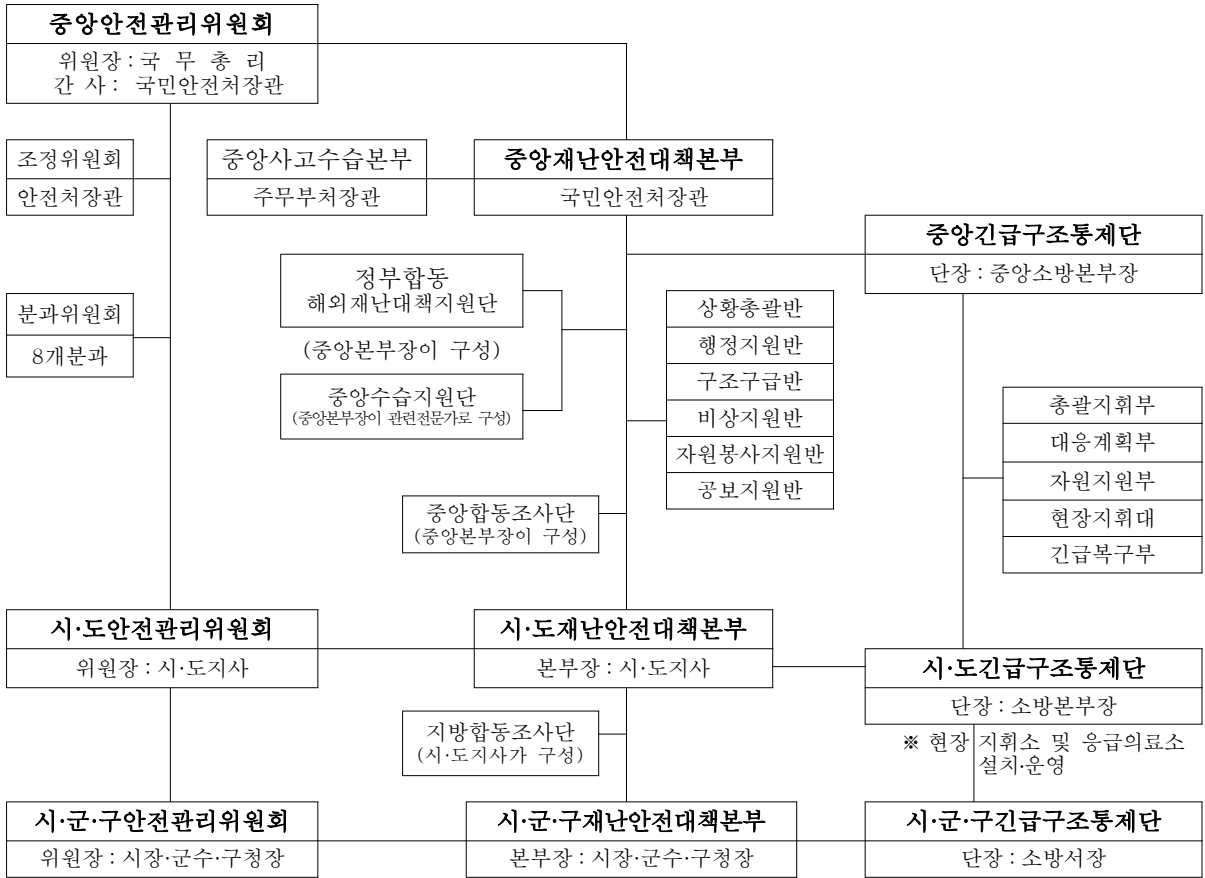
| 발생일시 | 개황 | 피해 |
|--------------------------|---|---|
| 대구 지하철 화재 (2003.2.18) |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승객이 전동차 바닥·의자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동차 화재 발생 | 인명피해 : 343명 -사망 : 192명 -부상 : 151명 |
| 지하철 5호선 화재 (2007) |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연결 지하터널 화재 | 38분간 열차 운행중지 |
| 범내골 화재 (2011) | 범내골역 구내 화재 | 주퓨즈 및 회로차단기 소손 |

2. 국외 사고사례

| 발생일시 | 개황 | 피해 |
|-----------------------------|---|----------------------------------|
| 파리 지하철 화재 (1903) |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에서 누전으로 화재 | 인명피해 -사망 : 84명 |
| 북 필라델피아 지하철 (1979) | 북 필라델피아 지하철에서 전압변환기 쇼트로 인한 발화 | 인명피해 - 부상 178명 |
| 일본 나고야 지하철역 (1983) | 일본 나고야 지하철역 지하 2층 변전실의 정류기 내의 콘덴서가 화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 | 인명피해 - 사망 : 2명 - 부상 : 5명 |
| Circus驛 화재 (1984.11.23) | 영국 Oxford Circus역 플랫폼에서 작업복, 시너, 페인트 등을 보관 중인 장소에서 화재 발생, 천정과 벽면에 화재 확산 | 피해실태 -승객 12명 질식 -터널 3마일 전소 |
| 킹스크로스驛 화재 (1987.11.18) | 영국 킹스크로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뒷면에 부착된 기름, 솜면지, 머리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확산 | 인명피해 -사망 : 31명 -부상 : 50여명 |
| 미국 뉴욕 (1990) | 미국 뉴욕 전기합선으로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 2명 - 부상 : 150명 |
| Baku驛 화재 (1995.10.28) | 舊소련 아제르바이잔의 Baku역에서 고압선에서 발생한 전기불꽃에서 인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 인명피해 -사망 : 300명 -부상 : 270명 |
| 독일 베를린 (2000) | 독일 베를린 화재 및 유독가스 | 인명피해 - 부상 : 30명 |
| 빈 케이블 열차 화재 (2000.11.11) | 오스트리아 빈(Wein) 케이블 열차에서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사망 : 172명 |

제4절 국가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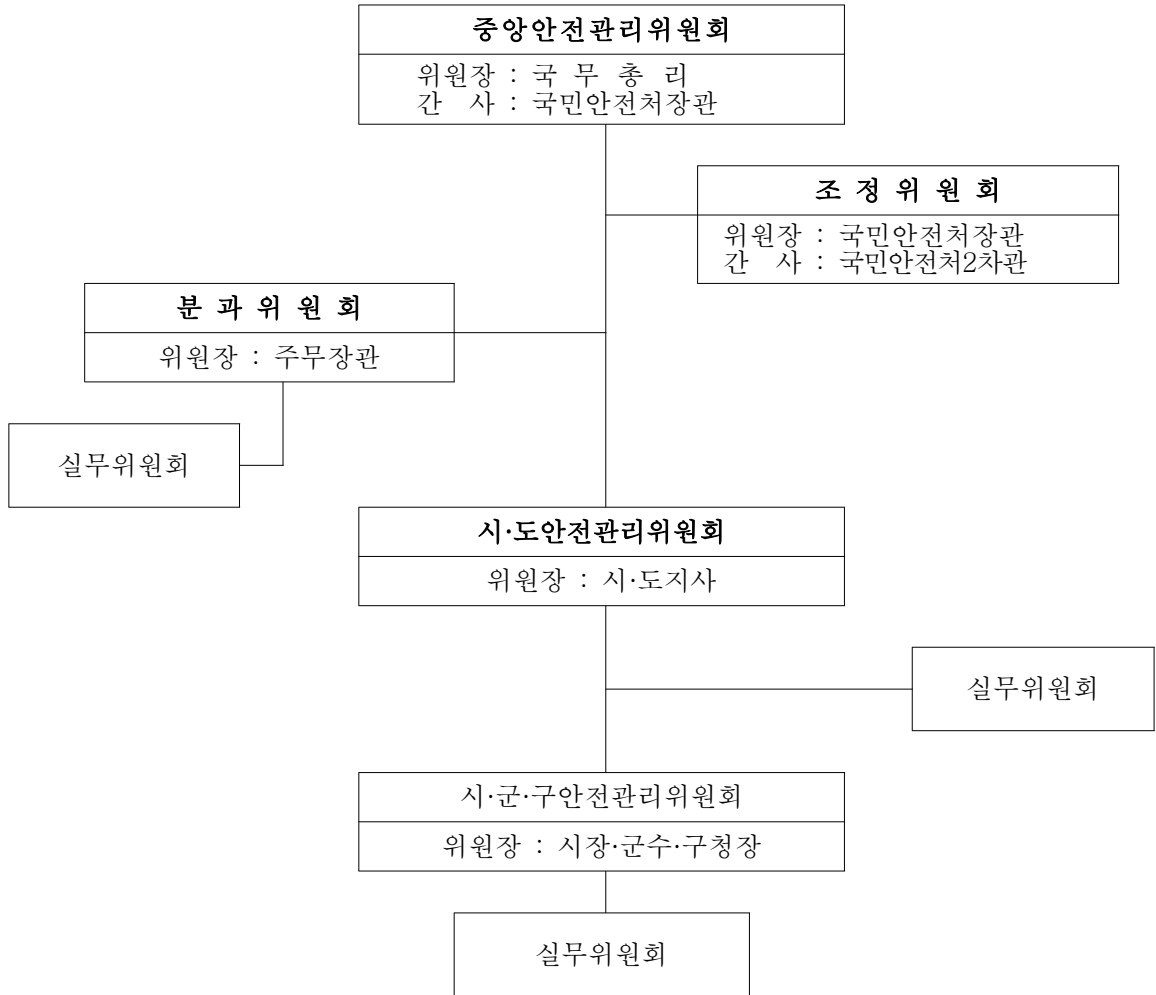
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 기관별 | 기능별 | 지휘 통제 | 비상 경고 | 대중 정보 | 상황 분석 | 구조 진압 | 응급 의료 | 오염 통제 | 현장 통제 | 긴급 복구 | 긴급 구호 | 재난 통신 |
|----------|-----|-------|-------|-------|-------|-------|-------|-------|-------|-------|-------|-------|
| 중앙소방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 | | △ |
| 경찰청 | | △ | △ | △ | △ | △ | | △ | ○ | | | △ |
| 해양경비안전본부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 | | | | △ | | | | | | | | |
| 산림청 | | | | | | △ | | | | | | △ |
| 대한적십자사 | | | | | | | △ | △ | | △ | ○ | |

※ 비 고 1. ○ : 책임기관 / △ : 지원기관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위 구분에 불구하고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다. 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 원 : 기획재정부장관·교과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위기관리상황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소방본부장, 기상청장, 그 밖에 중앙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장
- 중앙안전관리 조정위원회
 - 위 원 :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차장, 본부장·부서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기 능 :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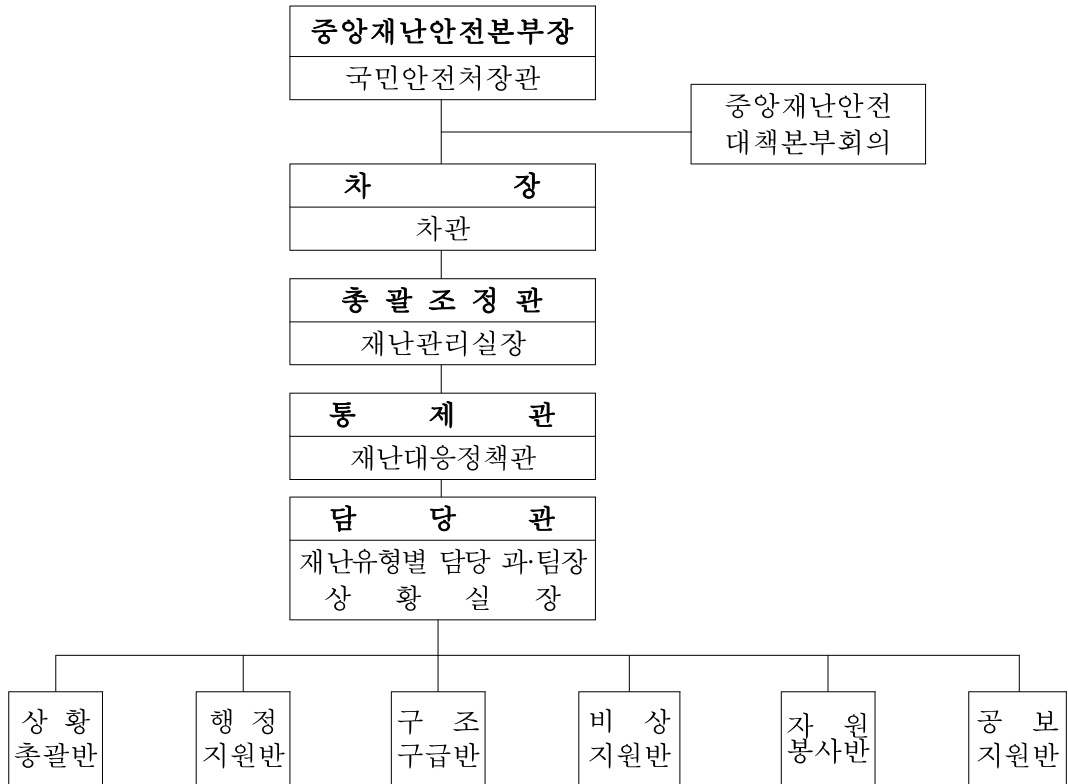
- 중앙안전관리 분과위원회

- 구 성 : 위원장이 해당 사고대책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
(분과위원회에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기 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그 밖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위 원 : 시·도 지방경찰청장, 지역사단장, 시·도교육감, 재난업무담당국장,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
- 기 능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를 협의·조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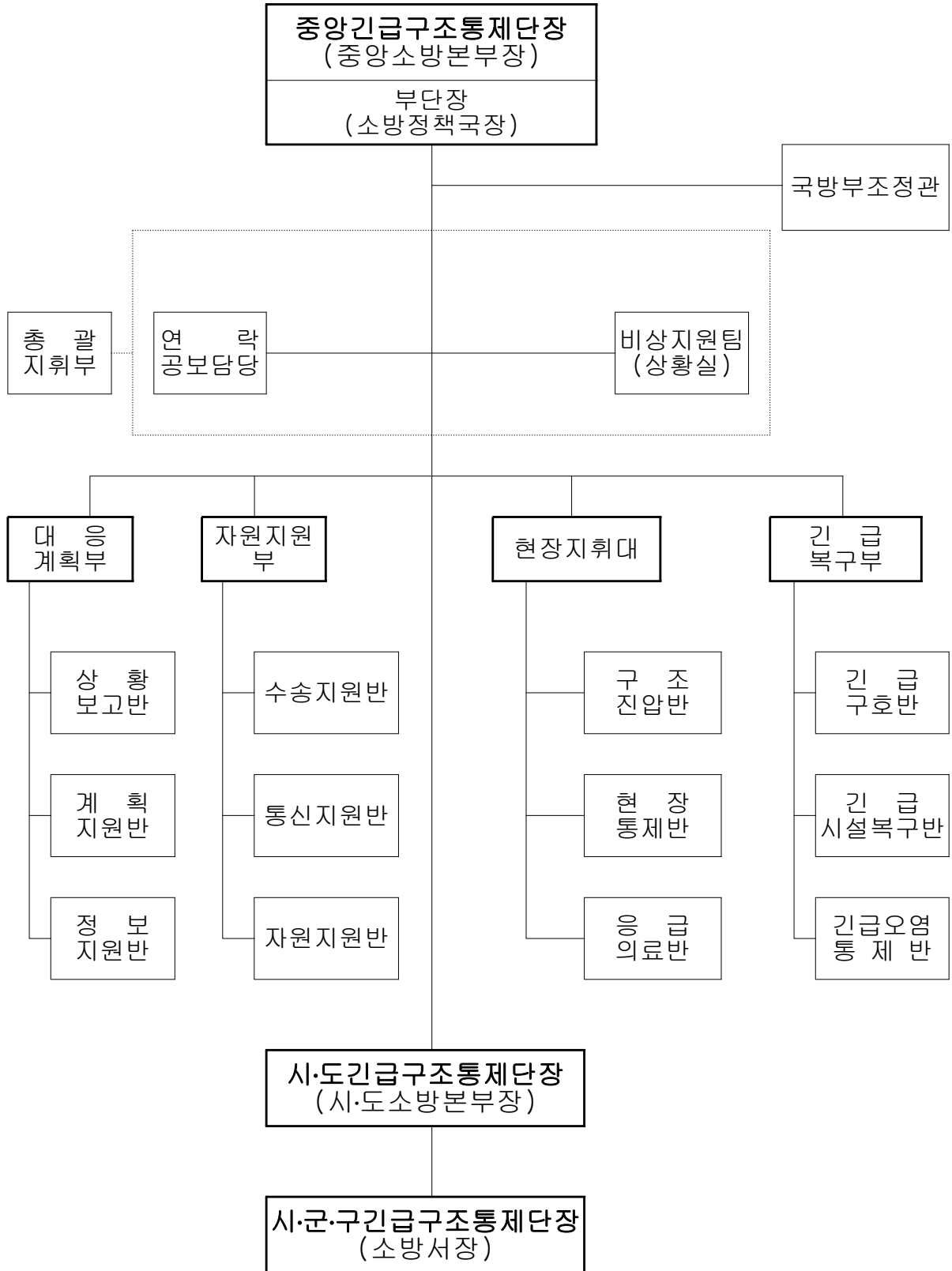


※ 실무반은 중앙소방본부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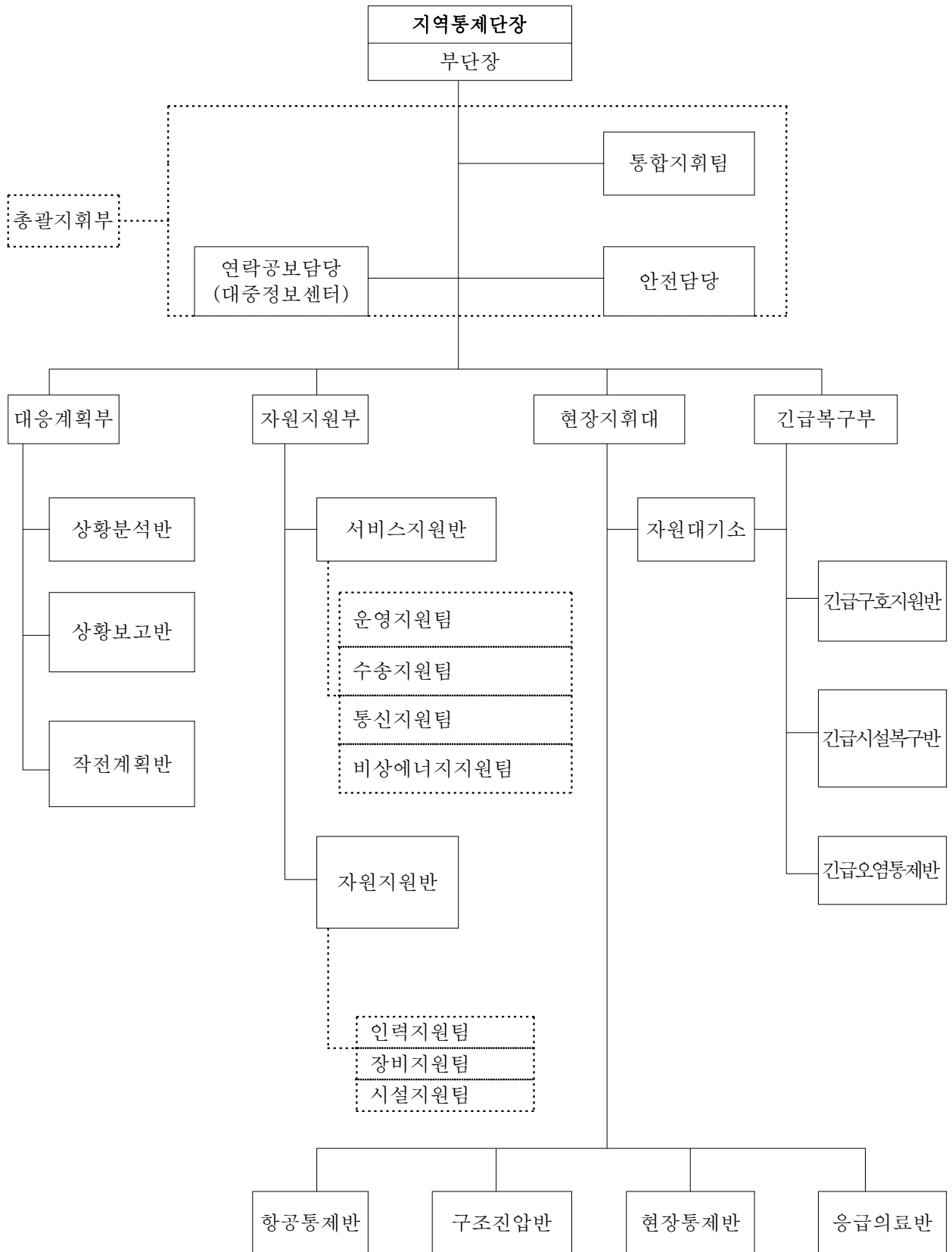
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부 서 별 | | 주 요 임 무 | 대 응 계 획 |
|--------------|------------------|--|------------------------|
| 중앙통제단장 | |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 지휘통제계획 (#1) |
| 총괄 지휘부 | 국 방 부 조 정 관 | 1. 중앙통제단장과 공동으로 국방부의 긴급 구조 지원활동 조정·통제 2.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시 대규모 탐색구조 활동 지원 | 국방부 세부대응계획 |
| | 연 락 공 보 담 당 | 1. 대중정보계획(#3) 가동 2.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2) 가동 4.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계획 (#3) |
| | 비상지원팀 (상 황 실) | 1. 중앙통제단 지원기능수행 2.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3.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 완료 여부 보고 | 기능별 대응계획 (#1-11) |
| 대 응 계 획 부 |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 부장 등에게 보고 | 지휘통제계획 (#1) |
| | 계획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 계획 수립지원 | 지휘통제계획 (#1) |
| | 정보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 지휘통제계획 (#1) |
| 자 원 지 원 부 | 수송지원반 |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지원 2.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 지휘통제계획 (#1) |
| | 통신지원반 | 1.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중앙소방본부의 중 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2.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 재난통신계획 (#11) |
| | 자원지원반 | 중앙소방본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통제 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 지휘통제계획 (#1) |

| 부 서 별 | | 주 요 임 무 | 대응계획 |
|--------------|--------------|--|----------------------------|
| 현 장 지 휘 대 | 구조진압반 | 1.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2.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구 조 진 압 계 획(#5) |
| | 현장통제반 | 1.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2.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현 장 통 제 계 획(#8) |
| | 응급의료반 | 1.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2.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3.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응 급 의 료 계 획(#6) |
| 긴 급 복 구 부 | 긴급구호반 | 1.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2. 긴급구조 | 긴급구호계 획(#10) |
| | 긴급시설복 구 반 | 1.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2.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조정·통제 | 긴 급 복 구 계 획(#9) |
| | 긴급오염통 제 반 | 1.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2.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조정·통제 | 긴 급 오 염 통 제 계 획 (#7) |

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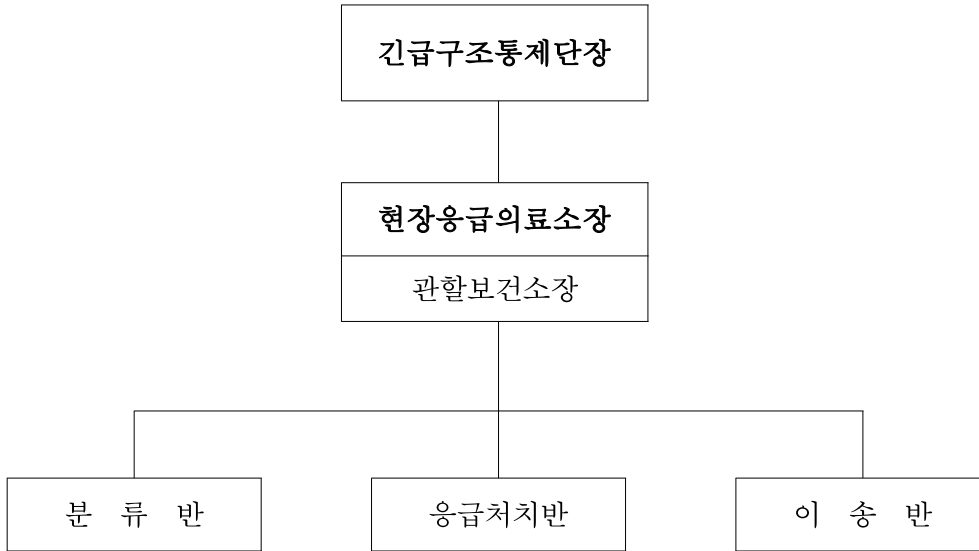
| 부 서 별 | | 주 요 임 무 | 대응계획 |
|--------|--------|---|-----------------------------|
| 지역통제단장 | |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 지휘통제계획 (#1) |
| 총괄지휘부 | 통합지휘팀 | 1.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3.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4.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 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 |
| | 연락공보담당 | 1.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사항 3.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4.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계획 (#3) |
| | 안전담당 |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지휘통제계획 (#1) |
| 대응계획부 | 상황분석반 |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 재난상황예측 3.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 지휘통제계획 (#1) |
| |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휘통제계획 (#1) |
| | 작전계획반 |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 지휘통제계획 (#1) |
| 자원지원부 | 서비스지원반 | 1.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3.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4.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 지휘통제계획 (#1) 재난통신계획 (#11) |
| | 자원지원반 | 1.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운영 2.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지휘통제계획 (#1) |

| 부 서 별 | | 주 요 임 무 | 대응계획 |
|------------|------------------|--|---------------|
| 현 장 지휘대 | 구조진압반 | 1. 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2. 그 밖에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3. 자원대기소 운영 | 구조진압계획 (#5) |
| | 현장통제반 | 1. 시·도 대피계획 지원 2.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현장통제계획 (#8) |
| | 응급의료반 | 1.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4. 사상자 현황과약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응급의료계획 (#6) |
| | 항공통제반 | 1.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 항공구조 활동지침 |
| 긴 급 복구부 | 긴 급 구 호 지 원 반 | 1.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2.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 긴급구호계획 (#10) |
| | 긴 급 시 설 복 구 반 | 1.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2.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긴급복구계획 (#9) |
| | 긴 급 오 염 통 제 반 | 1.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2.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긴급오염통제계획 (#7) |

아. 긴급구조통제 주요기능

| 기능별 | 내 용 |
|---------|---|
| 지휘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와 각 부서별 배속기관 및 책임자 지정 ·재난규모별·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방법 ·긴급구조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각 반별 임무수행 절차 및 지침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
| 비상경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경고와 관련된 재난대비업무, 재난신고접수, 비상경고 발령기준 ·긴급구조관련기관 공무원 비상소집, 인접 소방상황실 통지 ·특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상황 통지 ·일반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외국인·청각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자에 대한 비상경고 ·비상경고시스템의 점검 등 ·재난유형별 비상경고 메시지 예시 |
| 대중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정보와 관련된 재난대비업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대중정보센터 설치·운영,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재난현장 방문자(귀빈) 통제 및 관리, 자원봉사 참여안내 및 자원봉사자 접수 ·유언비어통제,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등 |
| 피해상황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 우려시 사전위험성 분석 활동 및 재난 초기조사 ·피해상황 정보의 조사·수집·전파 ·상황 및 분석 보고, 정보의 표시, 기록유지 등 |
| 응급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소 편성 및 설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이송, 의료자원 지원 ·사망자 신원확인과 시신보호를 위한 임시영안소 설치 등 |
| 긴급오염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요원 소집방안 및 팀별 업무의 조정·통제 등에 관한 사항 ·식수 및 음식물 오염방지대책, 청정 식수 및 음식물 공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 ·재난지역 수질조사, 동물통제 등 긴급전염병 통제에 관한 사항 ·재난지역 유해화학물질·폐기물·오염물질·오폐수처리대책, 오염구역 정화 및 방역 등 긴급 환경오염통제에 관한 사항 |
| 현장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대응자원·시설의 안전, 시민의 안전, 이재민 및 부상자의 안전 ·임시영안소의 안전, 동물통제, 분실물 교환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난지역 진입통제, 교통통제, 통행금지, 방치차량 등 장애물제거 조치 등 현장통제에 관한 사항 |
| 긴급구급및구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활동 지원조치,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의 운영지원 ·긴급대피소 및 급식소 등의 운영 ·구호물자 긴급수송, 이재민 이송지원 등 ·고립자, 이재민 등에 대한 긴급 의식주 제공 등 |
| 재난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상황실, 현장지휘소, 대중정보센터 등의 통신시스템 ·대체긴급구조상황실 통신, 재난통신 보조수단 ·대피소와의 통신, 통신 유지관리 대책, 정보 및 메시지의 흐름, 통신요원 등에 대한 지원 등 재난통신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조치 |

자. 현장응급의료소



| 부 서 별 | 주 요 임 무 |
|--------------|--|
| 긴급구조 통제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 현장응급 의료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
| 분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
| 응급처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
| 이송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

제5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 표

- 정부가 위기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단계별 점검사항

| 위기 단계 | 공보업무 점검사항 |
|------------------|--|
| 위기 대비 평소 준비사항 |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 |
| |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 위기발생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 |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구성 |
| | 기자 연락 |
| | 브리핑 준비 및 실시 (관계부처 협의) |
| | 보도자료 배포 |
| | 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
|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
|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 | 온라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 위기종료 | 결과 브리핑 |
| | 사고 수습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
|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 방안 마련 |

□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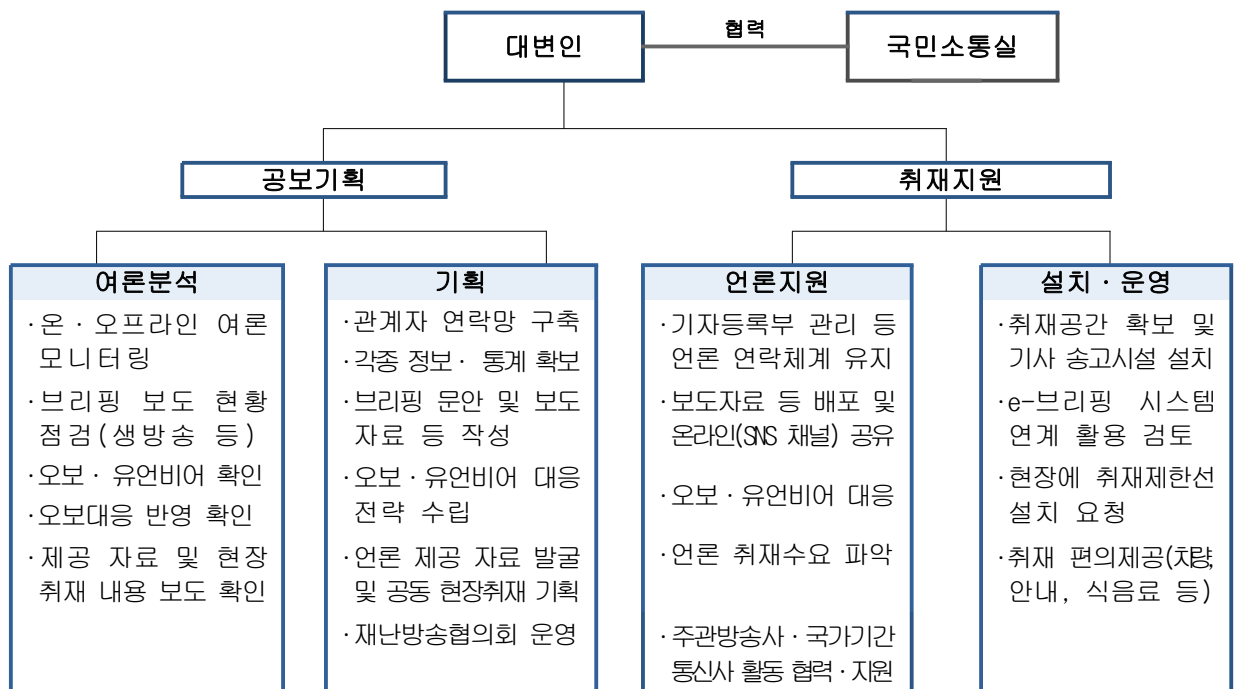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대변인 지위·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공보지원반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홍보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초기 메시지 관리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

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가

-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

※ [첫 발표 예시] “4월16일 오전8시58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했습니다. 현재 해경 및 관련 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진전된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수시로 브리핑 하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

②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 진행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

③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斯拉인)을 설치하고 엄격하게 통제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

④ 최대한 준비한 뒤 언론을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

⑤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

⑥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 충족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함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⑦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⑧ 오보에는 즉각 대응하라

-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진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 게재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

⑨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사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 제공

⑩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 실시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시 외신 기자를 포함

□ **브리핑 및 취재지원 요령**

①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
- 여성의 경우에는 화려한 액세서리, 짙은 화장 등 거부감 있는 차림 자제

② 브리핑 직전까지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라

-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

③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파악

④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정보 소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

⑤ 사람 중심 시각에서 브리핑하라

- 인적피해는 물적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

⑥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으로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

⑦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가라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상시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열고,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조율

⑧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게 하라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
-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 답변

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번 더 되풀이

⑩ 질문에 엇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 언급

11 발표시마다 정부의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라

-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12 인터뷰에서는 간략하게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가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명심

13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

※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구조에 참여한 해군 잠수요원

14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기사화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제적으로 발표, 사정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

15 언론의 마감시간을 고려하라

- 언론의 기사 마감시간(조간: 오후5시, 석간: 오전10시) 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16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

17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발굴하라

- 위기가 발생하면 기자는 사건 뒷이야기나 미담에도 관심을 갖게 마련

18 정직이 최우선이다

-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사고수습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수습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제6절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국민안전처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1 표준문안예시

| | |
|----------|---|
| 전력부족 | [산업통상자원부] 한파(폭염)에 의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부족 우려,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환정전시 | [산업통상자원부] ○○월 ○○일 정전경보, 전력부족으로 전국 대규모정전 우려, ○○.○○일 ○○:○○분부터 순환정전실시 중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
| 원전안전분야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 ○○시 ○○분 ○○도 ○○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호기에 서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였습니다. |
| 교통통제 | [국토교통부]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 바랍니다. |
| 항공운송장애 | [국토교통부] ○○월 ○○일 ○○항공종사자노조 집단 업무거부 돌입예정, 국제선 이용객 항공대란우려 됩니다 |
| 해저케이블 절단 | [방송통신위원회] ○○일○○시 지진해일로 인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 발생 ,○○국과의 국제전화 이용을 자제바랍니다 |
| 통신구 화재 | [방송통신위원회] ○○월 ○○일 ○○시 ○○지역 통신구화재로 통신케이블 일부 훼손, ○○지역 주민 복구 시 까지 양해바랍니다. |
| 댐붕괴 | [국토교통부] ○○일○○시 ○○분 ○○다목적 댐의 붕괴가 발생 하류지역 침수가 예상되니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바랍니다. |

② 철도사고 문안 예시

2-1. 화재 발생 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열차 00호차 **1** 에서 **2** 인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0호차 고객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3** 질서있게 이동해 주십시오. 다른 객차의 고객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 | 2 | 3 |
|----------|----------|-------------------|
| 지붕 | 누 : 전으로 | ⇒ ___호차로 |
| 화장실 | 담뱃불로 | ⇒ 수건이나 옷깃으로 |
| 객실 내 | 원인을 모르는 | 입과 코를 막으시고 ___로 |
| 통로 | 방화로 | ⇒ 수건이나 옷깃으로 코와 입을 |
| 터널 내 | 열차 충돌로 | 막고 낮은 자세로 ___로 |

2-2. 화재발생시 운행이 가능할 때(작은 화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열차 앞쪽에서 00번째 객차 00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이 불연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변지지 않습니다. 해당 객차에 계시는 고객께서는 초기 소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게 다른 객차로 이동하여 주시고 다른 객차의 고객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00역에 도착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2-3. 화재 발생으로 승객을 열차에서 내리게 할 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사유 때문에 앞쪽에서 00번째 객차 00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열차를 정차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00 쪽 문의 비상손잡이를 돌려(앞으로 당겨) 출입문을 열고 먼저 어린이와 노약자를 안전하게 내리도록 한 다음, 질서 있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내릴 때에는 선로 위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유 : 누전으로 / 담뱃불로/ 원인을 모르는/ 방화로/ 열차 충돌로

2-4. 테러 및 화재로 인한 긴급 대피 (차분하고 단호하게 방송)

(예 1)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열차 00호 00 지점에서 **상황**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시** 질서있게 대피해 주십시오. 이동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2)

000에 **상황** 되었습니다. **지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노약자를 보호하여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지시 |
|---|---|
| ⇒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 ⇒ 독가스(탄저균)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 ⇒ (대형)화재가 발생 | ⇒ 폭발물이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 휴대폰 사용을 중지하고 ⇒ 고객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손수건이나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고 |

2-5. 테러 및 화재 제거(진화)로 영업 재개 안내

(예 1)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열차 00지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신속한 조치로 완전 제거(진화)되었습니다.

(예 2)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역에서 **상황** 신속한 조치로 완전 제거(제독)돼 ___:___부터 열차가 정상운행합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 **상황** 발견된 폭발물은 관계기관의 / 발견된 독가스는(탄저균은) 관계기관의

2-6. 비상사태 시 조치

고객 여러분께 출입문 비상 취급에 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화재 등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나 의자 밑에 있는 덮개를 열고 비상손잡이를 돌리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상시 이외에는 위험하오니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7 재난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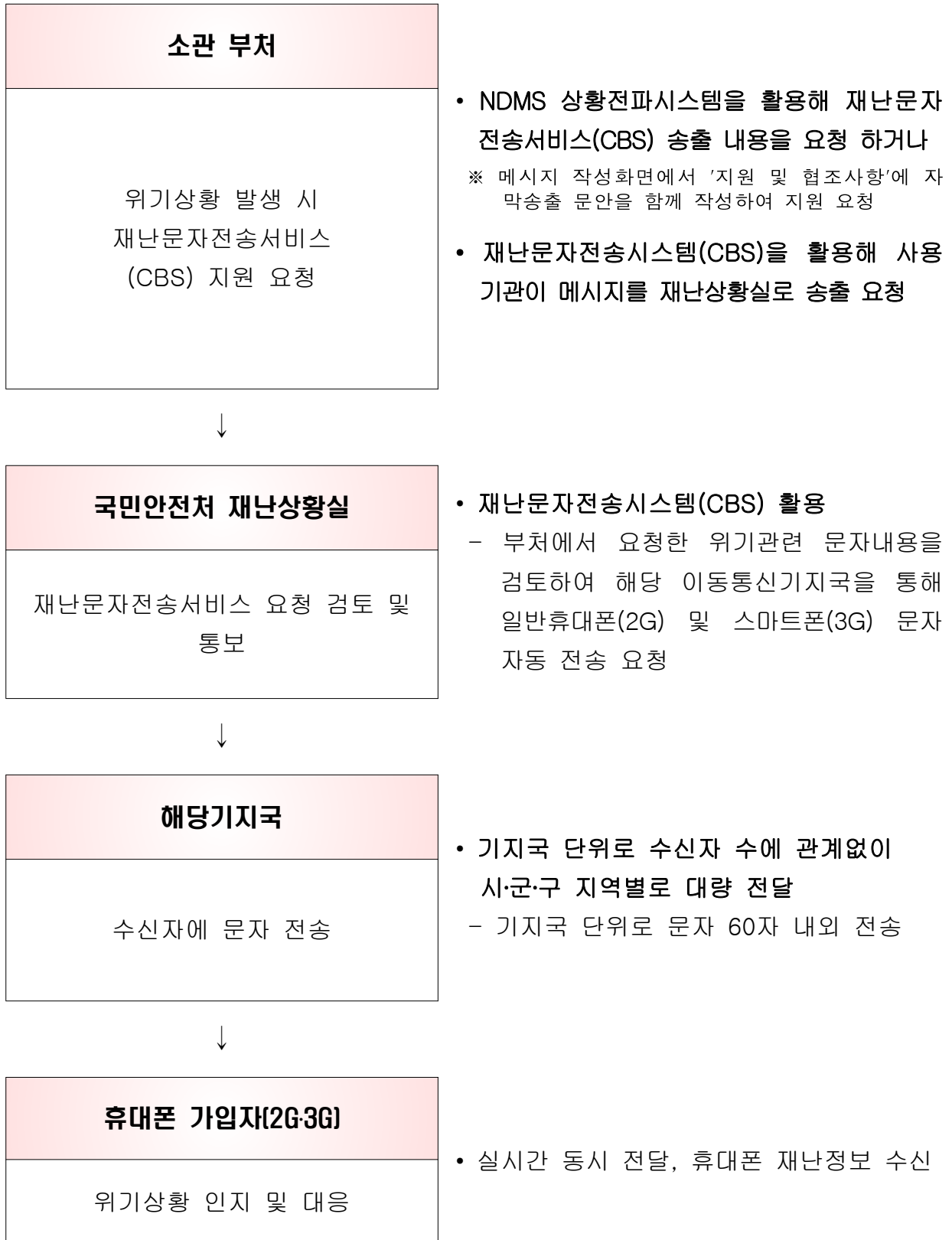
○○일○○시부터 ○○역(구간)에 열차화재(탈선) 발생으로 고속열차(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항공, 고속버스(시내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7절 위기상황 대국민 협조·홍보 요청 방법

□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제8절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가장 유용한 방법

□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제9절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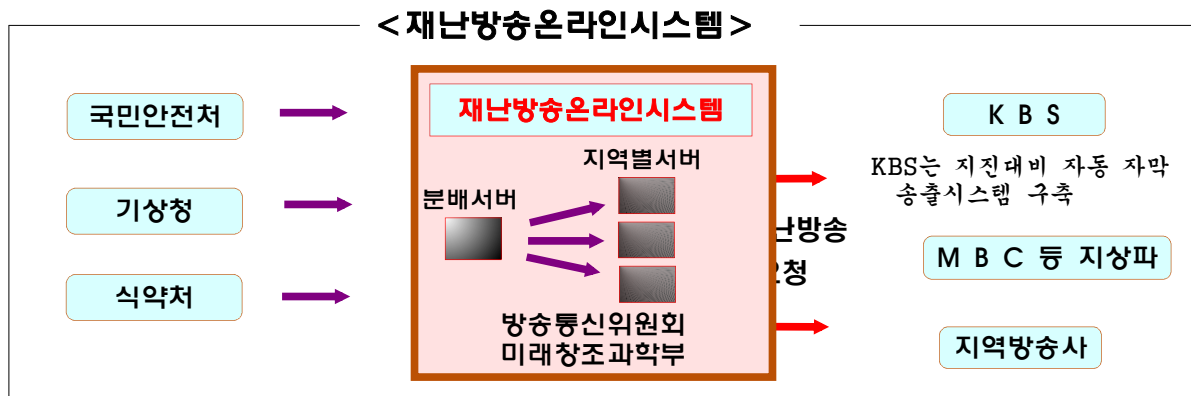
-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 기타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시 재난 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통위·미래부를 거쳐 방송사로 1분이내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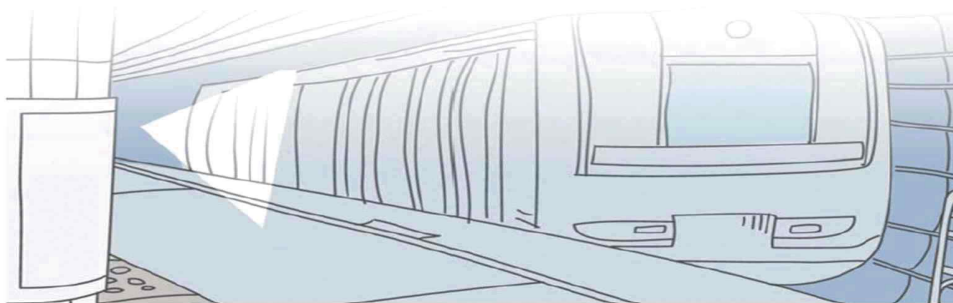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제10절 국민행동요령 (지하철 사고 관련)

㉠ 지하철 피해시 행동요령

객실 내 안전장치 설치 위치는 지역·지하철 노선에 따라 다르므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1. 비상인터폰으로 사고 내용을 기관사에게 알리고



2. 화재발생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후



3. 출입문 쪽 비상손잡이를 수동으로 열고 탈출

□ 지하철 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1. 비상전화로 역무실 또는 사령실에 알리고



2. 비상조명등을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3. 비상유도등을 따라 지상으로 대피

□ 지상탈출이 불가능시 지하터널을 이용합니다.

- 역과 역 사이 또는 승강장 화재로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 승강장에 비치된 비상사다리를 이용해 터널로 내려간 후
 - 열차 진행방향의 선로를 따라 다음 역으로 이동 대피합니다.



② 지하철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깎습니다.
- 스크린도어(PSD)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갑니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니다.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① 출입문 쪽 의자아래 또는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거나, 빨간색 비상핸들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③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서 여세요.

③ 지하상가 화재 발생 때는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 지하상가 구조상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절대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열기가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으니 재빨리 피난합니다.

4 지하철 화재 발생시

□ 역사 내 화재 대처요령

| | |
|--------|---|
| ① 화재경보 | • 역사내 화재용 비상벨(발신기) 버튼을 눌러 모든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립니다. |
| ② 긴급연락 | •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 및 벽등에 부착된 긴급연락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역무원에게 알리고 소방서(119)로 신고를 합니다. |
| ③ 초기진압 | • 초기화재시 역사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
| ④ 대피요령 | • 역무원 및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 대피시 유의사항

- 역무원이나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경우 옷이나 수건, 소방용품보관함에 비치된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 벽면 및 바닥에 부착된 통로유도등을 따라 대피하여 주십시오.
- 가급적이면 화재발생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열차내 화재 대처요령

- ① 객실끝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로 승무원과 통화합니다.
- ② 차장또는 기관사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합니다.
- ③ 국번없이 119에 화재를 신고합니다.
- ④ 객실 양끝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 약재를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려 신속히 진화합니다.
- 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좌석 양 옆 하부(구형) 또는 상부(신형)에 위치한 비상코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어 개방한 후 탈출합니다.
- ⑥ 선로에 내릴 땐 다른 열차가 오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화전 사용요령

-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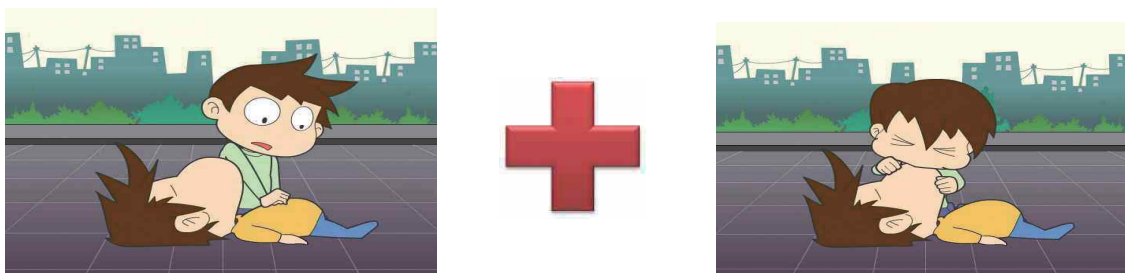
□ 대피시 유의사항

- 대피 시에는 손수건이나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역무원의 유도 안내 및 비상유도등을 따라 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등을 우선 안내하고 차장, 기관사 및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⑤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CPR, Cardiac Pulmonary Resuscitation)이란

-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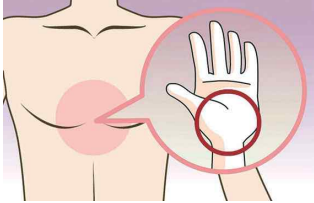








□ 심폐소생술 구성도

- 심폐소생술 = 흉부압박 + 인공호흡
- 흉부압박 : 인공호흡 = 30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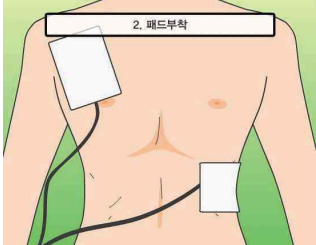
- 환자가 움직일 때까지 또는 119기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합니다.





□ 성인 심폐소생술

| | |
|---|---|
|  | <p>1. 심정지 확인 및 119신고(자동제세동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여쭙보세요.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 요청(AED),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 역사내 화재용 비상벨(발신기) 버튼을 눌러 모든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립니다. |
|  | <p>2. 압박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
|  | <p>3. 압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
|  | <p>4. 가슴압박 30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p>*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p> |
|  | <p>5. 기도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주세요. |

| | |
|--|---|
|  | <p>6. 인공호흡 2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주세요. •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폐로 공기가 들어 간 것입니다.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가슴압박 소생술) |
|  | <p>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세요.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
|  <p>흉부 압박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 되도록 함</p> | <p>8. 압박시간 중단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압박 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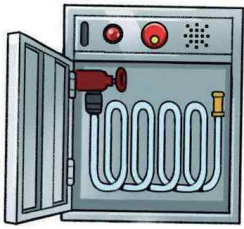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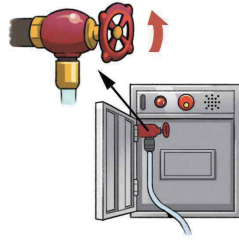

| | |
|---|--|
|  <p>1. 전원 켜기</p> | <p>1. 자동제세동기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합니다. |
|  <p>2. 전원 켜기</p> | <p>2. 전원 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
|  <p>2. 패드 부착</p> | <p>3. 두개의 패드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세요. |

| | |
|---|---|
|  | <p>4. 심장리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 손을 떼세요.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 제세동이 필요없는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
|  | <p>5. 제세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며, 깜박일 때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하세요. <p>*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p> |
|  | <p>6.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세동을 실시한 뒤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
|  | <p>7.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되었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 시행토록 하세요. |

⑥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노즐(물을 뿌리는 부분, 관창이라고도 부름)과 호스(수관)를 꺼낸 후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길게 펴주고 불이 난 곳까지 다가갑니다.
- 물을 쏠 준비가 되었으면 개폐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 호스(수관)에 물이 차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노즐의 끝부분을 돌려서 분

무(안개) 또는 직선으로 물을 향해 쏩니다.

| | | | |
|---|---|--|---|
|  |  |  |  |
| <p>문을 연다 Open the door</p> | <p>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Take out the hose</p> | <p>밸브를 돌린다 Open the valve</p> | <p>불을 향해 쏜다 Extinguish a fire</p> |

- 화재진압이 끝나면 개폐밸브를 잠급니다.
- 호스(수관)를 빼서 잘 세척하고 물을 뺀 후 서늘한 곳에서 말립니다.
- 소화전 함에 원래대로 잘 말아서 정돈합니다.

제11절.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 · 선포건의

중앙본부장은 2개 시·도 이하의 재난상황인 경우 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으며, 3개 시·도 이상의 재난상황인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태선포 건의

□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과 시·군·구청장은 재난시 수방, 진화, 구조, 구난,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시설복구, 방역, 긴급구조 및 수송,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의 예보 · 경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예보, 경보 등을 위해 통신 시설 우선사용, 방송시설 사용, 신문 및 인터넷 게재 등 요청할 수 있음

□ 동원명령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 물자, 장비 등 동원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 강제대피 · 통행제한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대피명령) 해당지역의 주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 ② (위험구역 설정) 필요시 위험구역의 설정, 출입제한 등의 조치
- ③ (강제대피) 대피명령의 불이행이나 위급성이 판단되면 위험구역안의 주민을 강제대피 및 퇴거조치, 관할 경찰서장의 지원 요청
- ④ (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수송, 구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통행금지 등 요청

□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재난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응급조치**

재난시 소관업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제12절 도시철도 운영 현황

(’14년 말 기준)

| 구 분 | 총 계 | 서울시 합 계 | 서울메트로 | | | | | |
|--------------------------------|---------------|---------------|---------------|-----------------|---------------|---------------|-----------------|---------|
| | | | 소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
| 구 간 | 21개 노선 | 9개 노선 | 4개 노선 | 서울역 ~ 청량리 | 성수 ~ 성수 | 지축 ~ 오금 | 당고개 ~ 남태령 | |
| 거 리 (km) | 615.0 | 327.1 | 137.9 | 7.8 | 60.2 | 38.2 | 31.7 | |
| 정거장(개) | 591 | 302 | 120 | 10 | 50 | 34 | 26 | |
| 소요시간(분) | - | - | - | 16 | 87 | 67.5 | 53 | |
| 차량수(량) | 5,535 | 3,715 | 1,954 | 160 | 834 | 490 | 470 | |
| 열차편성수 (편성당 량수) | 793 (2-10) | 443 (4-10) | 200 (4-10) | 16 (10) | 88 (4-10) | 49 (10) | 47 (10) | |
| 1일 운행횟수 | 8,428 | 4,508 | 2,420 | 517 | 997 | 410 | 496 | |
| 운행 시각 (분) | 출근 (R/H) | - | - | 2.5~3.0 | 3.0 | 2.5 | 3.0 | 2.5 |
| | 평시 (NH) | - | - | 5.0~6.5 | 5.0 | 5.5 | 6.5 | 5.5 |
| 표정속도 (km/h) | - | - | 34.0 | 29.3 | 33.7 | 34.0 | 35.9 | |
| 역간 거리 (km) | 평균 | 1.02 | 1.1 | 1.1 | 0.8 | 1.2 | 1.1 | 1.2 |
| | 최소 | 0.66 | 0.67 | 0.6 | 0.6 | 0.6 | 0.6 | 0.7 |
| ’14년 일일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9,066 | 7,289 | 4,230 | 468 | 2,113 | 805 | 844 |
| | 승차 | 6,919 | 5,223 | 3,093 | 308 | 1,579 | 575 | 631 |
| | 유입 | 2,147 | 2,066 | 1,137 | 160 | 534 | 230 | 213 |
| ’14년 연간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3,309,112 | 2,660,907 | 1,544,025 | 170,807 | 771,242 | 293,775 | 308,201 |
| | 승차 | 2,525,493 | 1,906,879 | 1,129,073 | 112,538 | 576,484 | 209,696 | 230,355 |
| | 유입 | 783,619 | 754,028 | 414,952 | 58,270 | 194,757 | 84,079 | 77,846 |
| 건설비(억원) | 369,640 | 172,797 | 34,268 | 984 | 11,171 | 13,798 | 8,315 | |
| 건설기간 | - | - | - | 1971~1974 | 1978~1984 | 1980~1985 | 1980~1985 | |
| 착 공 일 | - | - | - | ’71.4.12 | ’78.3.9 | ’80.2.29 | ’80.2.29 | |
| 개통일(최초) | - | - | - | ’74.8.15 | ’80.10.31 | ’85.7.12 | ’85.4.20 | |

(’14년 말 기준)

| 구 분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 | | | |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 |
|--------------------------------|--------------|----------------------|----------------|-----------------|---------------|-------------------------|--|
| | 소계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9호선 | |
| 구 간 | 4개 노선 | 방화 ~ 상일동 마천 | 응암 ~ 봉화산 | 장암 ~ 부평구청 | 모란 ~ 암사 | 개화 ~ 신논현 | |
| 거 리 (km) | 162.2 | 52.3 | 35.1 | 57.1 | 17.7 | 일: 27.0 급: 23.4 | |
| 정거장(개) | 157 | 51 | 38 | 51 | 17 | 25 | |
| 소요시간(분) | - | 84~88 | 70 | 104.5 | 31.5 | 일: 54 급: 30 | |
| 차량수(량) | 1,617 | 608 | 328 | 561 | 120 | 144 | |
| 열차편성수 (편성당 량수) | 207 (6~8) | 76 (8) | 41 (8) | 70 (8) | 20 (6) | 36 (4) | |
| 1일 운행횟수 | 1,548 | 465 | 356 | 421 | 306 | 540 일: 362 급: 188 | |
| 운행 시격 (분) | 출근 (R/H) | 2.5~4.5 | 2.5 | 3.5~4.0 | 2.5~3.0 | 4.5 | 일: 6.7~7.0(출근) 일: 5.0~5.5(퇴근) 급: 6.7~7.0(출근) 급: 10~11(퇴근) |
| | 평시 (NH) | 6.0~8.0 | 6.0 | 8.0 | 6.0 / 12.0 | 8.0 | 일: 6.5 급: 13.0 |
| 표정속도 (km/h) | - | 32.6 | 30.4 | 33.6 | 33.7 | 일: 30.0 급: 46.8 | |
| 역간 거리 (km) | 평균 | 1.1 | 1.05 | 0.92 | 1.14 | 1.11 | 일: 1.1 급: 2.9 |
| | 최소 | 0.7 | 0.7 | 0.6 | 0.8 | 0.8 | 일: 0.7 급: 1.9 |
| ’14년 일일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2,675 | 855 | 540 | 1,036 | 244 | 384 |
| | 승차 | 1,877 | 606 | 365 | 740 | 166 | 253 |
| | 유입 | 798 | 249 | 175 | 297 | 77 | 131 |
| ’14년 연간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976,568 | 312,163 | 197,176 | 378,301 | 88,928 | 140,314 |
| | 승차 | 685,390 | 221,192 | 133,266 | 270,242 | 60,690 | 92,416 |
| | 유입 | 291,178 | 90,971 | 63,910 | 108,059 | 28,238 | 47,898 |
| 건설비(억원) | 103,889 | 30,215 | 25,496 | 39,676 | 8,502 | 34,640 | |
| 건설기간 | - | 1990~1996 | 1994~2001 | 1990~2000 | 1990~1999 | 2001~2009 | |
| 착 공 일 | - | ’90.6.27 | ’94.1.8 | ’90.12.28 | ’90.12.29 | ’01.12.31 | |
| 개통일(최초) | | ’95.11.15 | ’00.8.7 | ’96.10.11 | ’96.11.23 | ’09.7.24 | |

(’14년 말 기준)

| 구 분 | 부산교통공사 | | | | | 대구도시철도공사 | | | |
|--------------------------------|--------------|-----------------|-----------------|-----------------|-----------------|-----------|-----------------|-----------------|--------|
| | 합 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합 계 | 1호선 | 2호선 | |
| 구 간 | 4개 노선 | 신 평 ~ 노 포 | 장 산 ~ 양 산 | 수 영 ~ 대 저 | 안 평 ~ 미 남 | 2개 노선 | 대 곡 ~ 안 심 | 문 양 ~ 영남대 | |
| 거 리 (km) | 107.8 | 32.5 | 45.2 | 18.1 | 12.0 | 57.3 | 25.9 | 31.4 | |
| 정거장(개) | 108 | 34 | 43 | 17 | 14 | 59 | 30 | 29 | |
| 소요시간(분) | - | 62 | 84 | 34 | 25 | - | 50.5 | 55 | |
| 차량수(량) | 878 | 360 | 336 | 80 | 102 | 384 | 204 | 180 | |
| 열차편성수 (편성당 량수) | 138 (4-8) | 45 (8) | 56 (6) | 20 (4) | 17 (6) | 64 (6) | 34 (6) | 30 (6) | |
| 1일 운행횟수 | 1,318 | 356 | 349 | 311 | 302 | 592 | 296 | 296 | |
| 운행 시격 (분) | 출근 (R/H) | - | 4.0~4.5 | 4.5 | 5.0~5.5 | 5.0 | - | 5.0 | 5.0 |
| | 평시 (NH) | - | 6.0 | 6.5 | 7.0 | 8.0 | - | 8.0 | 8.0 |
| 표정속도 (km/h) | - | 31.5 | 32.3 | 31.9 | 28.8 | - | 30.8 | 34.3 | |
| 역간 거리 (km) | 평균 | 1.0 | 1.0 | 1.1 | 1.1 | 0.9 | 1 | 0.9 | 1.1 |
| | 최소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8 |
| ’14년 일일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890 | 447 | 322 | 92 | 29 | 367 | 187 | 180 |
| | 승차 | 890 | 447 | 322 | 92 | 29 | 367 | 187 | 180 |
| | 유입 | - | - | - | - | - | - | - | - |
| ’14년 연간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324,889 | 163,342 | 117,389 | 33,465 | 10,693 | 133,836 | 68,293 | 65,543 |
| | 승차 | 324,889 | 163,342 | 117,389 | 33,465 | 10,693 | 133,836 | 68,293 | 65,543 |
| | 유입 | - | - | - | - | - | - | - | - |
| 건설비(억원) | 68,314 | 9,751 | 28,552 | 17,395 | 12,616 | 41,334 | 15,187 | 26,147 | |
| 건설기간 | - | 1981~1994 | 1991~2008 | 1997~2005 | 2003~2011 | - | 1991~2002 | 1996~2012 | |
| 착 공 일 | - | ’81.6.23 | ’91.11.28 | ’97.11.25 | ’03.12.3 | - | ’91.12. 7 | ’96.12.19 | |
| 개통일(최초) | - | ’85.7.19 | ’99.6.30 | ’05.11.28 | ’11.3.30 | - | ’97.11.26 | ’05.10.18 | |

(’14년 말 기준)

| 구 분 | 인천 교통공사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부산-김해 경전철(주) | 의정부 경전철(주) | 용인 경량전철(주) | |
|--------------------------------|--------------------|-----------------|-----------------|-----------------|-----------------|---------------------|-------|
| 구 간 | 계 양 ~ 국제업무지구 | 녹 동 ~ 평 동 | 관 암 ~ 반 석 | 사 상 ~ 가야대 | 발 곡 ~ 탑 석 | 기 흥 ~ 전대·에버랜드 | |
| 거 리 (km) | 29.4 | 20.5 | 20.5 | 23.2 | 11.1 | 18.1 | |
| 정거장(개) | 29 | 20 | 22 | 21 | 15 | 15 | |
| 소요시간(분) | 54 | 38 | 40 | 40 | 20 | 30 | |
| 차량수(량) | 272 | 92 | 84 | 50 | 30 | 30 | |
| 열차편성수 (편성당 량수) | 34 (8) | 23 (4) | 21 (4) | 25 (2) | 15 (2) | 30 (1) | |
| 1일 운행횟수 | 312 | 240 | 280 | 394 | 414 | 평일 370 휴일 330 | |
| 운행 시격 (분) | 출근 (R/H) | 4.5~6.0 | 5.0~7.0 | 5.0~6.0 | 4.39 | 3.5 | 4 |
| | 평시 (NH) | 8.5~10.0 | 10.0 | 10.0 | 5.5~11 | 6~10 | 6~10 |
| 표정속도 (km/h) | 32.6 | 34.3 | 30.7 | 33.1 | 32.2 | 36.28 | |
| 역간 거리 (km) | 평균 | 1.1 | 1.07 | 0.9 | 1.1 | 0.75 | 1.29 |
| | 최소 | 0.8 | 0.7 | 0.7 | 0.6 | 0.45 | 0.75 |
| ’14년 일일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279 | 49 | 112 | 43 | 21.2 | 13.9 |
| | 승차 | 200 | 49 | 112 | 43 | 20.9 | 12.3 |
| | 유입 | 79 | - | - | - | 0.3 | 1.6 |
| ’14년 연간 수송 인원 (천명) | 수송 | 101,973 | 18,053 | 40,866 | 15,778 | 7,742 | 5,068 |
| | 승차 | 73,055 | 18,053 | 40,866 | 15,778 | 7,643 | 4,494 |
| | 유입 | 28,918 | - | - | - | 99 | 574 |
| 건설비(억원) | 24,320 | 16,658 | 18,931 | 13,241 | 6,767 | 7,278 | |
| 건설기간 | 1993~1999 | 1996~2007 | 1996~2007 | 2002~2011 | 2007~2012 | 2005~2013 | |
| 착 공 일 | ’93.07.05 | ’96.08.28 | ’96.10.30 | ’06.04.21 | ’07.08.28 | ’05.11.17 | |
| 개통일(최초) | ’99.10.06 | ’04.04.28 | ’06.03.16 | ’11.09.17 | ’12.07.01 | ’13.04.26 | |

* 수송인원 : 승차인원 + 유입인원

* 유입인원 : 타 철도노선에서 승차하여 해당 철도노선으로 환승한 후 해당 노선에서 하차한 인원

* 건설기간 : 최초 개통 구간의 건설기간 (’13년 말 기준)

제13절 유관기관 연락처

□ 국토교통부

| 주관기관(부서)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
| 철도안전정책관 | 국 장 | | | |
| 철도운행안전과 | 과 장 | | | |
| | 공업사무관 | | | |
| | 주무관 | | | |

□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기 관 명 | 관련 부서 | 연 락 처 | |
|---------------------------|-----------|------------------------|----------------------|
| | | 전 화 | Fax |
| 국가안보실 | 위기관리센터 | 02-770-2335 | 02-770-4787 |
| 대통령비서실 | 재난안전비서관실 | 02-770-4260 | 02-770-4798 |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 정책관실)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044-200-2229 | 044-200-2247 |
| | 국토정책과장 | 044-200-2235 | “ |
| | 해양교통정책과장 | 044-200-2239 | “ |
| | 철도담당 | 044-200-2242 | “ |
| 기획재정부 | 예산총괄과 | 044-215-7110 | |
| 국민안전처 | 사회재난대응과 | 02-2100-0730,26 | 02-2100-5458 |
| | 119 구조과 | 02-2100-0893 | 02-2100-5490 |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2-2100-3119,3220,5500 | 02-2100-4094,5, 5590 |
| 교육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044-203-6188 | |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02-748-5780 | 02-748-5778 |
| | 재난상황실 | 02-748-3181~4 | 02-748-5795 |
| 방송통신위원회 | 창조기획담당관 | 02-2110-1313~4 | |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3-2280 | 044-203-3458 |
| | 홍보정책과 | 044-203-2210 | 044-203-3444 |
| 보건복지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2-2391~3 | 044-202-3922 |
| | 응급의료과 | 044-202-2552 | 044-202-3930 |

| 기 관 명 | 관련 부서 | 연 락 처 | |
|----------|----------------|---------------|---------------|
| | | 전 화 | Fax |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044-201-7379 | 02-201-7235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5 | |
| 경찰청 | 위기관리센터 | 02-3150-2856 | 02-3150-2661 |
| 서울특별시 | 교통정책과 | 02-2133-2249 | |
| 부산광역시 | 교통정책과 | 051-888-4075 | |
| 인천광역시 | 광역교통정책관 | 032-440-3853 | |
| 대전광역시 | 대중교통혁신단 | 042-270-6041 | |
| 대구광역시 | 교통정책과 | 053-803-6643 | |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 062-613-4460 | |
| 한국전력공사 | 재난관리팀 | 061-345-8820 | 061-345-8839 |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재난안전부 | 02-440-2102 | 02-440-2109 |
| (주)KT | 망관계센터 인터넷망팀 | 02-500-6030 | 02-500-6033 |
| 한국가스공사 | 안전품질실 | 031-710-0145 | 031-710-0169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종합상황실 | 043-750-1300 | 043-750-1926 |
| 한국도로공사 | 방재총괄팀 | 02-2230-4062 | |
| 한국철도공사 | 광역철도본부 | 02-3149-3640 | |
| 서울메트로 | 재난안전팀 | 02-6110-5145 | 02-6110-5129 |
| 서울도시철도 | 안전방재처 | 02-6311-2121 | 02-6311-4289 |
| 서울9호선 | 안전품질실 | 02-2656-0550 | 02-2656-0567 |
| 신분당선 | 안전감사실 | 031-8018-7510 | 031-8018-7513 |
| 공항철도 | 안전실 | 032-745-7095 | 032-745-7902 |
| 대전도시철도 | 안전감사실 | 042-539-3487 | 042-539-3489 |
| 광주도시철도 | 안전관리팀 | 062-604-8150 | 062-604-8309 |
| 대구도시철도 | 안전방재부 | 053-640-2360 | 053-640-2369 |
| 인천교통공사 | 비상방재팀 | 032-451-2561 | 032-451-2550 |
| 부산교통공사 | 안전관리실 | 051-640-7518 | 051-640-7535 |

제14절 철도운영자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
| | 전화번호 | FAX |
| 한국철도공사 관제실 | 042)615-3791 | 02)361-8273 |
| *관제운영실(휴/야) | 042)615-4800 | 02)361-8399 |
| 서울메트로 재난안전팀 | 02)6110-5745 | 02)6110-5129 |
| *종합관제소(휴/야) | 02)6110-5990 | 02)6110-5911 |
|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처 | 02)6311-2121 | 02)6311-4289 |
| *종합관제센터(휴/야) | 02)6311-2700 | 02)6311-2360 |
| 서울시메트로9호선 안전품질실 | 02)2656-0550 | 02)2656-0567 |
| *종합관제센터 | 02)2656-0500 | 02)2656-0599 |
|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실 | 051)640-7515 | 051)640-7535 |
| *종합관제소(휴/야) | 051)640-7034 | 051)640-7037 |
|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부 | 053)640-2360 | 053)640-2419 |
| *종합관제소(휴/야) | 053)640-2466,5466 | 053)640-2469,5470 |
| 인천교통공사 비상방재팀 | 032)451-2561 | 032)451-2550 |
| *관제운영실(휴/야) | 032)451-2380 | 032)451-2370 |
|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팀 | 062)604-8150 | 062)604-8309 |
| *관제운영실(휴/야) | 062)604-8190 | 062)604-8199 |
|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전감사실 | 042)539-3487 | 042)539-3489 |
| *관제운영실(휴/야) | 042)539-3289 | 042)539-3269 |
| 신분당선(네오트랜스,주) 안전감사실 | 031)8018-7510 | 031)8018-7513 |
| *종합관제센터(휴/야) | 031)8018-7600 | 031)8018-7609 |
| 공항철도 안전실 | 032)745-7095 | 032)745-7902 |
| *종합관제실 | 032)745-7300 | 032)745-7919 |

제15절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 기 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안전과 | 044) 201-4612 |
| 국민안전처 | 119구조과 | 02) 2100-0893 |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02) 748-5780 |
| 경찰청 | 위기관리센터 | 02) 3150-2856,1641 |
| 한국철도공사 | 광역철도본부 | 02) 3149-3640 |
| 서울메트로 | 재난안전팀 | 02) 6110-5145 |
| 서울도시철도공사 | 안전방재처 | 02) 6311-2121 |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안전품질실 | 02) 2656-0550 |
| 부산교통공사 | 안전관리실 | 051) 640-7519 |
| 인천교통공사 | 비상방재팀 | 032) 451-2561 |
| 대구도시철도공사 | 안전방재부 | 053) 640-2360 |
| 대전도시철도공사 | 안전감사실 | 042) 539-3487 |
| 광주도시철도공사 | 안전관리팀 | 062) 604-8150 |
| 공항철도 | 안전실 | 032) 745-7095 |
| 네오트랜스(신분당선) | 안전감사실 | 031) 8018-7510 |

제16절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

| 기 관 명 | 담당부서 또는 역 |
|------------|---|
| 시·도(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통정책과), 부산시(교통정책과), 대구시(교통관리과), 대전시(도시철도기획단), 광주시(교통정책과), 인천시(교통기획과), 경기도(철도물류정책과) |
| 한국철도공사(5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본부(13) : 서울본부, 대화역, 주엽역, 정발산역, 마두역, 백석역, 화정역, 원흥역, 삼송역, 대곡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서강역 ○ 수도권서부본부(10) : 수도권서부본부,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정부과천청사역, 대공원역, 선바위역, 과천역, 경마공원역, 수원역 ○ 수도권동부본부(34) : 수도권동부본부, 서울숲역, 압구정로데오역,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선릉역, 한티역, 도곡역, 구룡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 수서역, 북정역,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 야탑역, 이매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오리역,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
| 서울메트로(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선(10) :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동묘앞, 동대문, 종로5, 종로3, 종각, 시청, 서울역 ○ 2호선(50) : 시청, 을지로입구, 을지로3, 을지로4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당, 상왕십리, 왕십리, 한양대, 뚝섬, 용답, 신답, 용두, 신설동, 성수, 구의, 강변, 잠실나루, 잠실, 건대입구, 신천, 종합운동장, 삼성,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방배, 사당, 낙성대, 서울대입구, 봉천, 신림, 신대방, 구로디지털단지, 대림,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네거리, 신도림, 문래, 영등포구청, 당산, 합정, 홍대입구, 신촌, 이대, 아현, 충정로 ○ 3호선(32) : 지축,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번, 홍제, 무악재, 독립문, 경복궁, 안국, 종로3가, 을지로3가, 동대입구, 약수, 금호, 옥수, 압구정, 신사, 잠원, 고속터미널, |

| 기 관 명 | 담당부서 또는 역 |
|---------------------------|--|
| | <p>교대, 남부터미널, 양재, 매봉, 도곡, 대치, 학여울, 대청, 일원, 수서, 경찰병원, 오금</p> <p>○ 4호선(26) : 당고개, 상계, 노원, 창동, 쌍문, 수유, 미아, 미아삼거리, 길음, 성신여대입구, 한성대입구, 혜화, 동대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명동, 회현, 서울역, 숙대입구, 삼각지, 신용산, 이촌, 동작, 총신대입구, 사상, 남태령</p> |
| <p>서울도시 철도공사(157)</p> | <p>○ 5호선(51) : 방화, 개화산, 김포공항, 송정, 마곡, 발산, 우장산, 화곡, 까치산, 신정, 목동, 오목교, 양평, 영등포구청, 영등포시장, 신길, 여의도, 여의나루, 마포, 공덕, 애오개,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구, 신금호, 행당, 왕십리, 마장, 답십리, 장한평, 군자, 아차산, 광나루, 천호, 강동, 길동, 굽은다리, 명일, 고덕, 상일동, 둔촌동, 올림픽공원, 방이, 개롱, 거여, 마천, 오금</p> |
| | <p>○ 6호선(38) : 응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 새절, 증산,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경기장, 마포구청, 망원, 합정, 상수, 광흥창, 대흥, 공덕, 효창공원앞, 삼각지, 녹사평, 이태원, 한강진, 버티고개, 약수, 청구, 신당, 동묘앞, 창신, 보문, 안암, 고려대, 월곡, 상월곡, 돌곶이, 석계, 태릉입구, 화랑대, 봉화산</p> |
| | <p>○ 7호선(51) : 장암, 도봉산, 수락산, 마들, 노원, 중계, 하계, 공릉, 태릉입구, 먹골, 중화, 상봉, 면목, 사가정, 용마산, 중곡, 군자, 어린이대공원, 건대입구, 뚝섬유원지, 청담, 강남구청, 학동, 논현, 반포, 고속터미널, 내방, 총신대입구, 남성, 승실대입구, 상도, 장승배기, 신대방삼거리, 보라매, 신흥, 대림,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철산, 광명사거리, 천왕, 온수, 까치울, 부천종합운동장, 춘의, 신중동, 부천시청, 상동, 삼산체육관, 굴포천, 부평구청</p> |

| 기 관 명 | 담당부서 또는 역 |
|--------------|---|
| | ○ 8호선(17) : 암사, 천호,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 장지, 복정, 산성, 남한산성입구, 단대오거리, 신흥, 수진, 모란 |
| 서울9호선(25) | ○ 개화, 김포공항, 공항시장, 신방화, 마곡나루, 양천향교, 가양, 증미, 등촌, 염창, 신목동, 선유도, 당산, 국회의사당, 여의도, 셋강, 노량진, 노들, 흑석, 동작, 구반포, 신반포, 고속터미널, 사평, 신논현 |
| 공항철도(7) | ○ 서울, 공덕, 홍대입구, DMC, 김포공항, 화물청사, 인천국제공항 |
| 신분당선(6) | ○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 숲, 청계산입구, 판교, 정자 |
| 인천교통공사(29) | ○ 굴현, 박촌, 임학, 계산, 경인교대, 작전, 갈산, 부평구청, 부평시장, 부평, 동수, 부평삼거리,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선학, 신연수, 원인재, 동춘, 동막, 계양, 캠퍼스타운, 테크노파크, 지식정보단지, 인천대입구, 센트럴파크, 국제업무지구 |
| 대전도시철도공사(22) | ○ 판암, 신흥, 대동, 대전, 중앙로, 중구청, 서대전, 오룡, 용문, 탄방, 시청, 정부청사, 갈마, 월평, 갑천, 유성온천, 구암, 현충원, 월드컵경기장, 노은, 지족, 반석 |
| 광주도시철도공사(19) | ○ 소태, 학동·중심사입구, 남광주, 문화전당, 금남로4가, 금남로5가, 양동시장, 돌고개, 농성, 화정, 쌍촌, 운천, 상무, 김대중컨벤션센터, 공항, 송정공원, 송정리, 도산, 평동 |
| 대구도시철도공사(59) | ○ 1호선(30) : 대곡, 진천, 월배, 상인, 월촌, 송현, 상당못, 대명, 안지랑, 현충로, 영대병원, 교대, 명덕, 반월당, 중앙로, 대구, 칠성시장, 신천, 동대구, 큰고개, 아양교, 동촌, 해안, 방촌, 용계, 율하, 신기, 반야월, 각산, 안심 ○ 2호선(29) : 문양, 다사, 대실, 강창, 계명대, 성서공단, 이곡, 용산, 죽전, 감삼, 두류, 내당, 반고개, 서문시장, 반월당, 경대병원, 대구은행, 범어, 수성구청, 만촌, 담티, 연호, 대공원, 고산, 신매, 사월, 정평, 임당, 안심 |

| 기 관 명 | 담당부서 또는 역 |
|-----------------|---|
| 부산교통 공사(1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선(34) : 신평, 하단, 당리, 사하, 괴정, 대티, 서대신, 동대신, 토성, 자갈치, 남포, 중앙, 부산역, 초량, 부산진, 좌천, 범일, 범내골, 서면, 부전, 양정, 시청, 연산, 교대앞, 동래, 명륜, 온천장, 부산대, 장전, 구서, 두실, 남산, 범어사, 노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호선(41) : 호포, 금곡, 동원, 울리, 화명, 수정, 덕천, 구명, 구남, 모라, 모덕, 덕포, 사상, 감전, 주례, 냉정, 개금, 동의대, 가야, 부암, 전포, 문전, 문현, 지계골, 못골, 대연, 경성대부경대, 남천, 금련산, 광안, 수영, 민락, 센텀시티, 시립미술관, 동백, 해운대, 중동, 장산, 부산대양캠퍼스, 양산, 남양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호선(14) : 망미, 배산, 물만골, 거제, 종합운동장, 사직, 미남, 만덕, 남산정, 숙등, 구포, 강서구청, 체육공원, 대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선(12) : 동래, 수안, 낙민, 충렬사, 명장, 서동, 금사, 반여농산물시장, 영산대, 동부산대학, 고촌, 안평 |

소관 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 | | |
|---|-------------|-------------------|
| 연락처 | 철도운행 관제팀 | (044) 201-4612, 4 |
| | FAX | (044) 201-5672 |
|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e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세종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44) 201-3113 FAX : 044)201-550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